2002년 1월호(제67호)
ISSN 1226-2269 1

월·간

재정포럼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1

현안분석

- 재정과 경기조절
- 케이블 인터넷의 사회후생과 조세정책
- 경제위기를초래한아르헨티나의재정건전화정책실패

해외동향

일본 세제개혁의 최신 동향

정책흐름

2001년 직접세분야 시행령 개정(안) 외

재정통계

지방세 편(Ⅰ)

KOREA INSTITUTE OF PUBLIC FINANCE
한국조세연구원

재정포럼
2002년 1월호(통권 제67호)
한국조세연구원
• 2002년 1월 15일 발행 • 제67호 • 1996년 5월 31일 등록 • 라7859 • 발행처/한국조세연구원 • 138-774 서울특별시 송파구 가락동 79-6 • 전화(02)2186-2130~2 • 월간

월·간
1
재정포럼
Monthly Public Finance Forum
이천이년 일월호

C·O·N·T·E·N·T·S

권두칼럼	2	건강한 정치와 활력 있는 경제 /**宋大熙**
현안분석	6	재정과 경기조절 /**朴寄 白**
	23	케이블 인터넷의 사회후생과 조세정책 /**全澤勝**
	38	경제위기를초래한아르헨티나의재정건전화정책실패 /**朴炯秀**
명언산책	51	진화와 규범
해외동향	52	일본 세제개혁의 최신 동향 /**鞠 重鎬**
신간안내	68	이코노미스트 세계대전망 – THE WORLD IN2002
정책흐름	70	2001년 직접세분야 시행령 개정(안)
	82	2001년 간접세분야 시행령 개정(안)
	99	2002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재정통계	114	지방세 세목별 부과 및 징수
	121	지방세 시도별 분포
이런 의견 저런 생각	125	법인세 인하‘ **失** 보다‘ **得** 많다 외

• 2002년1월 15일발행 • 제 67호 • 1996년5월 31일등록 • 라7859 • 발행처/한국조세연구원
• 138-774 서울특별시송파구가락동79-6 • 전화(XXXXXXXXXX ~2 • 월간

건강한 정치와 활력 있는 경제

宋 大 熙/한국조세연구원원장



1. 2002년은 정치가 주도하는 해

2002년은 정치가 주도하는 한 해가 될 것이다. 벌써부터 국민적 관심이 정치에 집중되고 있으며 언론들은 정치경제를 특집으로 다루고 있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아서는 안 된다, 돈 드는 선거를 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신문 특집들이 우리의 시선을 끌고 있다. 최근의 아르헨티나 국가부도사태의 원인도 잘못된 정치에 있었고 과거 남미의 여러 차례 경제위기의 원죄도 잘못된 정치에 있었다. 경제위기의 주원인은 선거철을 전후한 정치적 인기주의와 방만한 재정정책 때문이었다. 우리가 겪은 1997년 IMF경제위기도 정치불안과 관련이 있다. 그 당시 대권경쟁의 정치바람은 취약한 경제를 더욱 어렵게 만들었다. 2002년에도 경제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금년 6월의 지방자치단체장 선거와 12월의 대통령 선거로 인하여 불게 될 정치의 바람은 한국경제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것인가?

2. 정치는 경제에 이렇게 영향을 주고 있다

정치가 경제의 발목을 잡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 경제를 정치로부터 분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경제는 정치로부터 분리될 수 없는 태생적 한계를 가지고 있다. 정치의 내용은 대부분 경제이다. 그리고 시장경제의 운행질서는 정치가 담당한다. 올바른 정치논리는 경제에 활력을 준다. 정치와 경제를 무리하게 분리하려고 노력할 것이 아니라 정치와 경제의 올바른 상호관계를 구축하는 길이 더바람직할것이다.

정치는 다음과 같은 몇가지 경로를 통하여 경제에 영향을 준다. 우선, 정치는 새로운 경제법제의 제정, 개정 등을 통하여 시장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국내외 경제환경이 바뀌면 거기에 알맞은 경제법제를 도입해야한다. 최근 우리나라는 적기에 새로운 경제법제를 도입하지 못하고 구시대적 경제질서를 지키다가 IMF경제위기를 맞았다. IMF 경제위기를 겪으면서 많은 새로운 경제법제가 도입되고 있다. 또한, 정치는 기존 경제법제의 운용을 통하여 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아무리 법제의 기본원칙이 잘되어 있어도 정치적 운영은 얼마든지 잘못될 수 있다. 정치적 이해관계에 따라 기존 법제의 적용강도나 적용분야를 달리하게되면 시장경제는 혼란에 빠진다. 그 반대의 경우, 즉 법제가 미흡하더라도 정치적 운영을 지혜롭게하게되면 경제는 활력을 얻게 된다. 그리고 정치는 재정운영 즉 조세와 예산의 배분과 집행을 통하여 시장경제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공공자금을 적기에 적소에 사용하는 것과 엉뚱한 곳에 탕진하는 것과의 시장경제적 효과차이는 엄

청나다. 경기부양을 할 것인가, 실업자를 어떻게 도울 것인가등 재정운영을 통하여 시장경제는 좋은방향으로 또는 나쁜 방향으로 영향을 받게 마련이다. 이상과 같이 새로운 경제제도의 도입, 기존 법제의 운용및 재정정책의 집행을 통하여정치는경제와긴밀한관계를가질수밖에없는것이다.

3. 정치와 경제의 상호관계에 관한 선험적 연구의 시사점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유럽과 미국에서 오래 전부터 진행되어 왔다. 최근 IMF에서도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진행해 왔다. 정치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는 대체로 세 가지연구분야로 크게 나누어진다.

첫째, 정치체제와 경제성장의 상호관계연구다. 서구에서는 민주주의가 경제성장을 촉진시켜 왔으나 후진국에서는 민주주의의 도입에도 불구하고 경제성장이 일어나지 않는 경우도 많았다. 오히려 동아시아 신흥공업국의 경우와 같이 비민주주의적 권위주의 정치체제가 경제성장을 촉진하기도 하였다. Barro(1989)[1] 등은 민주주의와 경제성장 간에 밀접한 정(正)의 관계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내놓았다. 그러나 Weede(1983)[2] 등은 권위주의체제하에서 경제성장이 더 촉진된다고 주장했다. 경제개발 초기에는 권위주의가 유리하지만 어느 정도 경제발전이 이루어진 후에는 민주주의가 더욱 촉진제 역할을 한다는 주장도 있다. 민주주의를 하면서도 경제성장을 이루지 못하는 것은 민주주의가 시장경제의 질서를 오히려 무질서하게 만들었기 때문이다. 반대로 권위주의하에서 경제성장이 가능했던 것은 권위주의가 혼란을 막고 시장에 안정을 가져왔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어떤 체제이건 간에 시장질서의 혼란을 다스리지 못하면 경제성장에 부담이 된다는 사실을 알 수 있다.

둘째, 선거가 시장경제를 왜곡시키고 경기변동의 원인이 된다는 소위 정치적 경기변동(Political Business Cycle)에 관한 증명이다. 정치적 경기변동론은 Nordhaus(1975)[3]가 1947~72년 기간 동안 9개국 자료를 통해 정치인들이 선거 직전 성장촉진과 실업 감소를 유도하기 위해 총수요를 증대시키고 이것이 선거 후에 인플레와 긴축정책이라는 부작용으로 나타난다는 가설을 증명한 데서 비롯되었다. Mei(1999)[4]는 최근 9번의 금융위기 사례 중에서 8번이 선거와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였다. 선거가 정권 쟁취를 위한 수단이라는 점은 선후진국 간에 같으나 선거질서는 판이하게 차이가 있다. 흔히 후진국의 선거는 각종 무리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선거가 경제에 미치는 충격도 크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셋째, 정치불안이 경제위기를 불러오는 주요 원인이 된다는 관계분석이다. 특히 이 분야의 연구는 1990년대 들어 중남미의 경제위기 및 1997년 중반 이후 시작된 아시아 경제위기를 계기로 더욱 증가되

1) Barro, R.,“ A Cross Country Study Of Growth, Saving and Government,”NBER Working Paper No.2855, February 1989.
2) Weede, E.,“ The Impact of Democracy on Economic Growth: Some Evidence from Cross-National Analysis,”*Kyklos* 36, 1983, pp. 21~40.
3) Nordhaus, W.,“ The Political Business Cycle,” *Review of Economic Studies* 42, 1975, pp. 169~190,
4) Mei, J.P.,“ Political Risk, Financial Crisis, and Market Volatility,”Aug. 1999.

었다. OECD국가들의 대규모 재정적자의 원인을 정치적 요인에서 찾으려 한 Roubini and Sachs(1989)[5]는 정권의 평균임기가 짧거나 정당간 정치연합이 확대되는 상황, 즉 정치불안정 상황에서 재정적자가 확대된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정권붕괴 위험을 정치불안 변수로 설정하여 이를 1인당 GDP와 함께 고려한 Alesina, Ozler, Roubini and Swgel(1992)[6]는 정부 붕괴의 위험이 높아 정치 불안정이 증가될수록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성장이 저하됨을 보이고 있다. 특히 최근 세계화의 진전으로 자본이동이 자유화된 상황에서 정치불안은 곧 바로 자본유출 또는 국가신용등급의 저하로 인한 리스크 프리미엄의 증가를 가져와 국민경제에 부담을 주게 된다. 특히 후진국의 경우 정치불안은 선거를 전후로 극심하게 발생한다는 점이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것이다. 이상 정치와 경제의 상호관계에 관한 선행 연구의 시사점은 시장경제 육성을 위한 올바른 정치체제를 선정하고, 무리한 재정운영을 수반하지 아니하는 공정한 선거를 치루며 극한적 대립에 의한 정치불안이 조성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다.

4. 2002년이 새 정치의 원년이 되기를 기대하며

정치는 경제와 분리될 수 없다. 정치는 경제에 좋은 영향을 미치기도 하지만 나쁜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 그러나 OECD국가나 북미와 같은 선진국의 경우에도 정치는 경제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있음을 전문가들은 지적하고 있다. 따라서 지금 우리가 2002년 정치의 해를 맞이하면서 많은 경제주체들이 우려하는 것을 단순히 기우라고만 볼 수도 없다. 그리고 우리는 어쩌면 피차 룰에 의한 페어플레이 선거를 경험하기보다는 또 다시 혼탁한 선거를 경험하게 될지도 모른다. 선거를 전후한 정치불안이 시장의 혼란을 부추기고 리스크 프리미엄을 상승시키게 된다면 국민경제를 어렵게 만들게 될 것이다.

정치와 경제를 분리할 수 없다면 올바른 정치논리가 등장하여 경제에 활력을 주도록 해야 한다. 돈과 사람을 지나치게 동원하는 것은 가급적 지양되어야 한다. 만약 불가피하다면 투명하게 하여야 한다. 그리고 뒷감당할 수 없는 선거공약은 삼가야 한다. 불법선거운동은 이제 더 이상 통하지 않는 선거가 되어야 한다. 유권자의 시민의식 수준도 높아져야 한다. 선진국 정치 수준은 선진 시민의식에 의해 유지되는 것이다. 이기고 나서 지는 후보가 아니라 지고 나서도 참 승리하는 후보가 되어야 할 것이다. 타락한 정치를 막는 최후의 보루로서 공정한 재판제도가 자리잡아가야 한다.

한국은 더 이상 후진국이 아니다. OECD 수준의 나라로 발돋움하는 데 성공한 국가이다. 비록 많은 후진국적 잔재를 아직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음은 사실이나 이곳 저곳에서 선진국의 새살이 돋아나고 있는 아픔 속에서도 희망과 꿈이 숨쉬는 나라이다. 2002년에는 한국에 새 정치의 새살이 돋아나는 원년이 되기를 기대해본다.

5) Roubini, N. and J.D. Sachs,“ Political And Economics Determinants of Budget Deficits in the Industrial Democracies,” *European Economic Review* 33, 1989, pp. 903~938.
6) Alesina, A., S. Ozler, N. Roubini and P. Swgel,“ Political Instability and Economic Growth,” NBER Working Paper Series No.4173. Sep. 1992.

현안분석

1. 재정과 경기조절
朴寄白 /한국조세연구원 연구위원

2. 케이블 인터넷의 사회후생과 조세정책
全澤勝 /한국조세연구원 초청연구위원

3. 경제위기를 초래한 아르헨티나의 재정건전화 정책 실패
朴炯秀 /한국조세연구원 전문연구위원

재정과 경기조절



朴 寄 白 연구위원(XXXXXXXXXXX)

Ⅰ. 문제의 제기

재정을 통해 경기를 안정시키는 방식은 자동안정화와 재량적 재정정책으로 구분된다. 자동안정기능은 주로 소득세와 같은 세입이 담당하고, 재량적 경기조절은 주로 세출이 담당한다. 그러나 세율 인상, 누진도 조정, 감세정책 등 세입을 통한 재량적 재정정책도 자주 사용된다. 실업보험처럼 자동안정기능을담당하는 세출도 있다.

최근 경기가 악화되자 소비세 및 법인세 세율 인하 또는 폐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출확대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000년에는 경제성장에 대한 재정의 기여율이 연간 3.6%에 불과하였으나 재정의 조기집행, 추경편성 등으로 2001년 3/4분기에는 51.3%로 높아진 것으로 추정되고있다.

그렇다면‘ 과거 우리나라의 재정은 경기를 안정시키는 방향으로 운영되었을까? ’하는 전체적인 재정기조의 유효성에 대한 평가 외에‘ 어떤 세목이 경기안정에 기여했을까? ,‘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출이 경기조절에 가장 유용한 지출항목이었을까? ’ 등 다양한 추가적인 의문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질문에 대해 과거의 경험은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간단한 분석방법을 사용하여 전체적인 세입 및 세출과, 개별 세입 및 세출이 경기조절에 얼마나 기여했었는지를 살펴보고자 한다. 분석결과는특정 세목의 구조 변화, 경기변동에 대응하기 위한 세출항목의선택등에도시사점을줄 것으로 판단된다.

*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최근 경기가 악화되자 소비세 및 법인세 세율 인하 또는 폐지,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출 확대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한 재정의 적극적인 역할이 강조되고 있다. 한국은행의 자료에 따르면 2000년에는 경제성장에 대한 재정의 기여율이 연간 3.6%에 불과하였으나 재정의 조기집행, 추경편성 등으로 2001년 3/4분기에는 51.3%로높아진것으로추정되고있다.

Ⅱ. 방법론

1. 기존 연구

먼저 재량적 재정정책을 평가하는 방법을 살펴보자. 재정이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보통 통합재정수지로 측정하지만 여기에는 경기변동에 따른 재정수지, 즉 자동안정장치에 의한 재정수지가 포함되므로 정부의 재정정책을 평가하는 데 문제가 있다. 따라서 통합재정수지에서 자동안정장치에 의한 재정수지를 제외한 재정충격지수(Fiscal Impulse Indicator)로재정정책의 기조를 평가하는 방법이 일반적으로 사용된다. 재정팽창지수는 조윤제 · 박종규(1994), 박종구(1995), 박성준 · 이정욱(1996) 등에의해 우리나라 재정정책을 평가하는 데 사용되기도 하였다[1].

다수의 정부예산 항목은 경기변동을 조절하는 기능, 즉 자동안정화기능을 수행한다. 예를 들어 호황기에는 개인소득세 세수가 증가하여 개인의 가처분소득을 축소시키고, 그에 따라 총수요의 증가를 억제한다. 경기하강기에 실업급여가 증가하여 수요를 지지하는 반면 경기호황기에는 그 반대 현상이 발생하므로 사회보장제도도 자동안정화의 역할을 한다. 박성준 · 이정욱(1996)은 Musgrave와 Miller의 산식에 따라 자동안정효과를 계산하였다. OECD에서는 재정수지를 경기순환적 요인(자동안정요인)과 구조적 요인으로 구분하는데 실제 재정수지에서 추정된 세입과 세출의 구조적 요소를 차감하여 경기순환적 재정수지를 구하고 있다[2].

---

1) 조윤제 · 박종규,「개방경제하의재정정책」,『개방화 · 국제화에따른재정 · 금융정책의방향』, 연구논문집94-01, 한국조세연구원, 1994., 박종구,『재정적자의경기조정 기능』, 정책보고서95-04, 한국조세연구원, 1995., 박성준 · 이정욱,「재정의경기조절기능강화방안」,『조사통계월보』, 한국은행, 1996. 3.

2) Paul van den Noord, *The Size and Role of Automatic Fiscal Stabilizers in the 1990s and Beyond*,Eco/wkp(2000)3, OECD, 2000.

2. 문제점

재량적 재정정책 및 자동안정기능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경기상황을 알려주는 지표로는 GDP 갭이 사용된다. GDP 갭을구하는수식은(GDP - 잠재GDP)/GDP이다. 잠재GDP 추정방법으로는 생산함수방식, 구조 VAR 방식, 은닉인자모형 등이 있다. 이렇게 추정한 GDP 갭이양수이면경기가과열상태인것으로판단하고, 반대인경우에는침체로판단한다.

잠재 GDP를 이용한 GDP 갭이 경기상태를 정확히 나타내 주는지를 살펴보기 위해 한국은행과 KDI의 GDP 갭 추정치를 비교해보자. 1980년과1981년의 경우 한국은행 추정치는 경기침체로 나타나고 있는 반면 KDI 추정치는 약간 침체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1988년, 1989년, 1992년, 1996년, 1997년의경우 한국은행은 경기과열로 판단되는 반면 KDI 추정치는 약간의 부침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현상은 다른 연도에서도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잠재 GDP의 추정치로 경기상황을 판단하는것은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표 1> 생산함수 방식에 의한 GDP 갭 비교

	1980	1981	1982	1983	1984	1985	1986	1987	1988	1989
한국은행	-2.3	-3.5	-3.8	-1.4	-2.0	-4.2	-2.5	0.2	2.9	2.1
KDI	-0.5	-0.5	-3.3	-3.0	-2.2	-2.7	-1.3	-0.6	0.6	-0.6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한국은행	3.9	4.8	2.6	0.7	1.1	2.5	2.2	2.0	-8.1	-3.1
KDI	1.3	2.7	0.2	0.0	1.9	2.4	0.5	-0.2	-2.1	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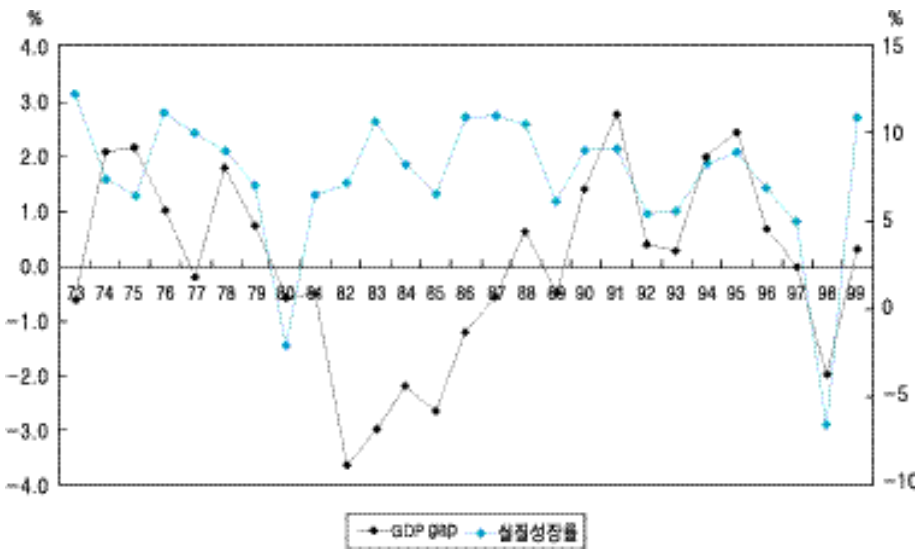
자료: GDP 갭은 $(Y-Y^P)/Y$로계산됨. Y는 GDP이고, Y^P는잠재 GDP임.

GDP 갭과 실질성장률 자료를 비교해 보아도 서로 상당한 편차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실질성장률을 기준으로 경기가 과열되고 있다고 보여지는 시점은 1973년, 1976년, 1983년, 1986 1988년, 1990 1991년, 1994 1995년, 1999년이다. 반면 심각한 침체시점은 1980년과 1998년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GDP 갭에 따르면 과열시점은 1974 1975년, 1978년, 1990 1991년, 1994 1995년이고, 침체시점은1982 1985년과 1998년이다. 오일쇼크로 인한 1974년과 1980년의 저성장, 중동 특수로 인한 1976년과 1977년의 호황, 1986 1988년의 3저 호황, 1997년 말의 외환위기로 인한 1998년의 저성장을 생

재량적 재정정책 및 자동안정기능을 추정하는 데 있어서 경기상황을 알려주는 지표로는 GDP 갭이 사용된다. GDP 갭이 양수이면 경기가 과열 상태인 것으로 판단하고, 반대인 경우에는 침체로 판단한다. 그러나 한국은행과 KDI의 GDP 갭 추정치를 비교해 본 결과 잠재 GDP의 추정치로 경기상황을 판단하는 것은 신뢰할 수 있는 방법으로 보기 어렵다.

각하면 실질성장률을 기준으로 경기상황을 판단하는 것이 더 합리적인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KDI의 GDP 갭 자료는 1990년 이후에만 잘 들어맞는 것으로 나타났고 한국은행의 GDP 갭 자료도 실질성장률 추세와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1] 실질 성장률과 GDP 갭



다음으로 IMF의 계산방법에 따라 재정충격지수를 계산한 조윤제 · 박종규(1994), 박종구(1995), 박성준 · 이정욱(1996)의 경우를 비교해보자. 비교 결과를 보면 재정충격지수의 크기가 같은 경우는 없고, 재정기조가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다. 동일한 자료가 존재하는 1975년부터 1990년까지 재정기조가 일치하는 경우가 9번인 반면 다르게 나타나는 경우가 7번으로나타나고 있다.

동일한 잠재 GDP 자료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재정충격지수는 OECD 방식을 사용하는 경

우와 IMF 방식을 사용하는 경우가 다르게 나타난다. 박성준 · 이정욱(1996)의 경우를 보면 재정기조가 다르게(부호가 다르게) 나타나는 연도는 1994년이 유일한 것으로 나타나 잠재 GDP가다른 경우보다는 차이가작지만 수치에있어서는상당한 차이가있다. 결과적으로재정충격지수를이용하여재정기조를평가하는기존의방식에심각한의문을던져주고있다.

<표 2> 재정기조의 측정(기존 연구)

(단위: %)

	박성준	박종구	조윤제		박성준	박종구	조윤제
1975	0.22	0.85	팽창	1983	- 0.85	- 2.00	긴축
1976	- 0.02	- 0.88	팽창	1984	- 0.05	- 0.02	팽창
1977	0.20	0.00	팽창	1985	- 0.52	- 0.96	긴축
1978	0.34	- 0.33	팽창	1986	- 0.36	- 0.26	긴축
1979	- 0.10	- 2.67	긴축	1987	- 0.03	0.01	긴축
1980	0.24	- 1.67	팽창	1988	- 0.63	- 0.79	긴축
1981	0.96	0.31	팽창	1989	- 0.65	0.72	팽창
1982	0.15	- 0.84	긴축	1990	1.00	1.03	팽창

주: 조윤제 · 박종규(1994)는수치가없어기조를기준으로함.
박종구(1995)는공공부문기준임.
박성준 · 이정욱(1996)은IMF 기준재정충격지수를사용함.
자료: 조윤제 · 박종규(1994), 박종구(1995)

<표 3> 재정충격지수

(단위: %)

	IMF 기준	OECD 기준		IMF 기준	OECD 기준
1975	0.22	2.31	1985	- 0.52	- 0.29
1976	- 0.02	- 0.78	1986	- 0.36	- 0.83
1977	0.20	0.51	1987	- 0.03	- 0.34
1978	0.34	0.73	1988	- 0.63	- 1.21
1979	- 0.10	- 0.70	1989	0.65	1.22
1980	0.24	2.52	1990	1.00	1.05
1981	0.96	2.63	1991	1.48	1.35
1982	0.15	0.21	1992	- 1.53	- 1.06
1983	- 0.85	- 2.53	1993	- 1.41	- 1.07
1984	- 0.05	- 0.04	1994	0.03	- 0.20

자료: 박성준 · 이정욱(1996)

재정의 경기안정기능이나 재량적 재정정책을 판단하는 기준인 잠재 GDP의 측정에문제가 있다. 따라서 잠재 GDP가 정확히 측정된다는 보장이 없다면 재정충격지수 등 잠재 GDP에 기초한 지수를바탕으로기존의재정정책을평가하는것은무리인것으로판단된다.

이미 살펴본 것처럼 재정의 경기안정기능이나 재량적 재정정책을 판단하는 기준인 잠재 GDP의 측정에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석유파동으로 인한 잠재성장률 저하가 어느 정도인가를 판단하는 것은 주관적인 요소가 많이 작용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잠재 GDP가 정확히 측정된다는 보장이 없다면 재정충격지수 등 잠재 GDP에 기초한 지수를 바탕으로 기존의 재정정책을평가하는것은무리인것으로판단된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연구자의 주관이 많이 개입되는 잠재 GDP를 사용하는 방식을 지양한다. 또한 세법이 빈번하게 개정된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세수의 변화를 세율의 변화(재량적)에 의한 부분과 세입기반의 변화(경기순환적)에 의한 부분으로 구분하기도 어렵다. 이는 다시 세수의 소득탄력성을 구하는 것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재정의 경기조절이 재량적인 것인지 자동안정에 의한 것인지를 구분하지 않고 단순히 재정의 증가율과 경제성장률을 비교하는 방식을 취한다. 즉, 특정 세입(세출)의 증가율이 성장률보다 높다면(낮다면) 해당 세입(세출)은 경기조절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판단한다. 이러한 방법은 기본적으로 전년도가 기준이 되는 문제점이 있지만 세입 및 세출이 GDP 성장률과 비례하도록 증가하는 것을 경기중립적인 것으로 보고 있으므로 IMF의 재정팽창지수 계산방식과 유사하다[3].

III. 세입 및 세출 전반

먼저 전체 세출과 세입의 경기조절 수준을 살펴보자. 1974년의 경우를 보면 세입의 증가율이 경제성장률보다 높지만 세출의 증가율이 매우 높아 재정이 경기를 촉진하는 역할을 담당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1975년은 상대적으로 경기가 하락한 시점이다. 해당 시점에 세출의 증가율이 성장률보다 높아 경기조절기능을 담당하였지만 세입의 증가율이 너무 높아 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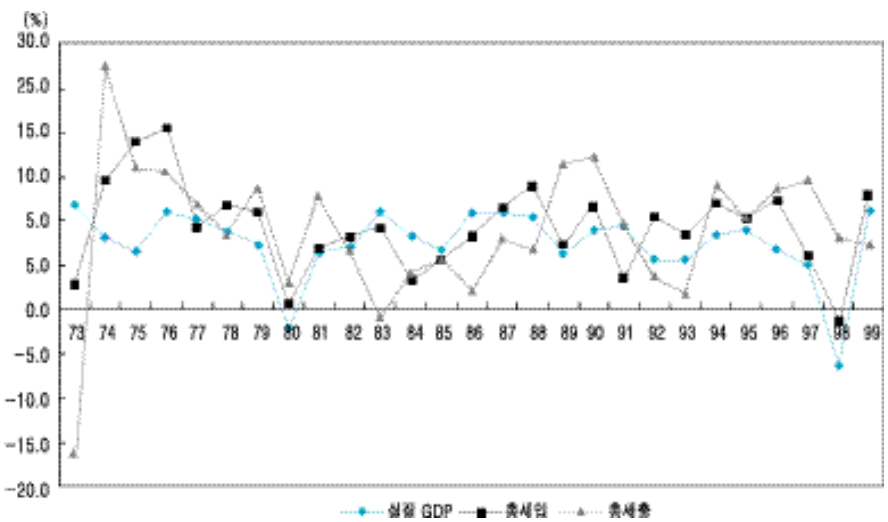
3) 유효수요이론에따르면이경우승수효과가발생하지만잠재성장수준과실제성장간차이가크지않은경우에는커다란편차를발생시키지는않을것으로보인다.

체적으로 보면 재정이 경기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1976년의 경우 증가율이 세입, 세출, 성장률 순이어서 세입은 자동안정화기능을 수행한 반면 재정지출은 경기조절기능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해당 연도에 재정이 팽창 또는 긴축적으로 운영되었다고단정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4].

1980년의 경우도 1975년과 마찬가지로 세출 증가율과 세입 증가율 모두 실질성장률보다 높게 나타나고 있다. 또한 심각한 경기침체에도 불구하고 세출의 증가율은 낮아 상대적으로 세출의 경기조절기능이제대로작동되지못했다[5].

1983년에는 재정이 경기조절에 효율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세출 규모가 축소되고, 실질성장률과 유사한 세입 증가율을 보임으로써 재정이 경기과열을 어느 정도 완충시키는 작용을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1989년에도 경기둔화에 대응하여 지출을 증가시킴으로써 경제안정에 기여했을 것으로 판단된다[6].

[그림 2] 세출 · 세입 및 GDP 증가율의 추이(실질기준)



4) 해당연도에대해조윤제 · 박종규(1994)는팽창으로, 박종구(1995)와박성준 · 이정욱(1996)은긴축재정으로보고있다.
5) 1980년의 재정기조에 대해조윤제 · 박종규(1994)와 박성준 · 이정욱(1996)은 팽창으로, 박종구(1995)는긴축으로 평가하고있는반면단순히증가율을비교한본연구에서는지출과세입이유사하게증가하였다는점에서특별한긴축이나팽창으로말하기힘들다.
6) 1989년을조윤제 · 박종규(1994), 박종구(1995)는팽창으로박성준 · 이정욱(1996)은긴축으로평가하고있지만 1989년은지출측면에있어서팽창적성격이강했던것으로보인다.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과 관련이 있는 세입은 누진 구조를 가지고 있는 소득세, 법인세, 사회보장기여금이라고 할 수있다. 소비세도 면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로누진구조를 가진다고 생각하면일정부분자동안정장치의역할을할수있을것으로보인다.

외환위기 와중이었던 1998년에는 세입이 성장률보다 적게 하락함으로써 재정이 자동안정화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재정적자를 축소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또한 상대적으로 지출의 증가율이 높아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1999년의 경우에는 세입의 증가율이 실질성장률보다 높고, 세출의 증가율은 성장률보다 낮아 경기과열을 축소시키는 역할을 담당한 것으로 보인다.

IV. 개별 세입

재정의 경기조절 기능과 관련이 있는 세입은 누진 구조를 가지고 있는 소득세, 법인세, 사회보장기여금이라고할 수 있다. 소비세도 면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로누진구조를 가진다고 생각하면 일정 부분 자동안정장치의역할을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1. 소득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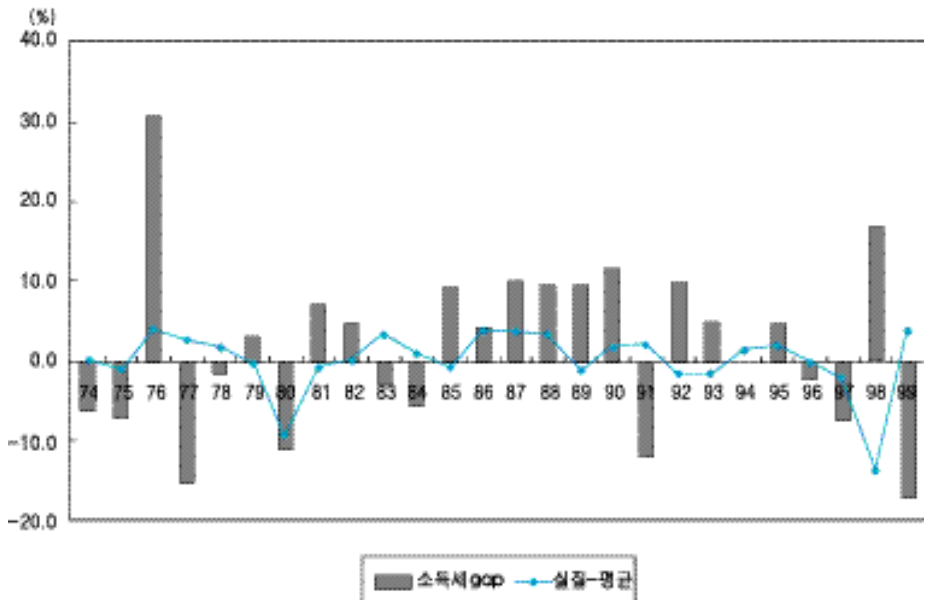
[그림 3]은 실질 경제성장률에서 1974년부터 1999년까지의 평균 실질성장률을 뺀 수치(여기서는 편의상 성장률 갭이라고 하자)와 실질 소득세 증가율에서 실질 경제성장률을 차감한 수치(여기서는 소득세 갭이라고 칭하자)를 비교한 것이다[7]. 소득세가 경기조절기능을 한다면 양자가 같은 부호를 가져야 하며 성장 갭이 높은(낮은) 시점일수록 소득세 갭이 큰(작은) 수치로 나타날 때 소득세의 경기조절기능이 효과적이라고 할 수 있다. 이는 다른 세입의 경우에도 마찬가지이다.

자료를 보면소득세갭은 1976년과 1998년에 매우높은수치를보이고있으며, 1985년과

7) 경제성장률은 1970년대가높고 1980년대와 1990년대를거치면서점점낮아졌을것으로판단된다. 따라서구간별또는연도별로차감할성장률을다르게하여야하지만구간의선택에자의성이개입할소지가많고, 회귀분석하여차감할성장률을구하는것도이론적인근거가낮아여기서는가장단순한방식인평균성장률을사용하였다. 다른방식을사용하여도분석의결과가크게차이가나지는않을것으로판단된다.

1986 1990년도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반면 1977년, 1980년, 1991년, 1999년은 수치가 상대적으로큰 음수로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1차 오일쇼크의 영향을 받았던 1974년에는 소득세의 경기조절기능이 거의 없었으나 2차 오일쇼크와 정치적 혼란기였던 1980년에는경기 침체를 축소시키는 데어느정도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호황기였던 1980년대 말에는 소득세가 경기조절기능을 담당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경기조절과는 전혀 다른방향으로 소득세수가 움직여 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 3] 소득세 갭과 성장률 갭의 추이



2. 법인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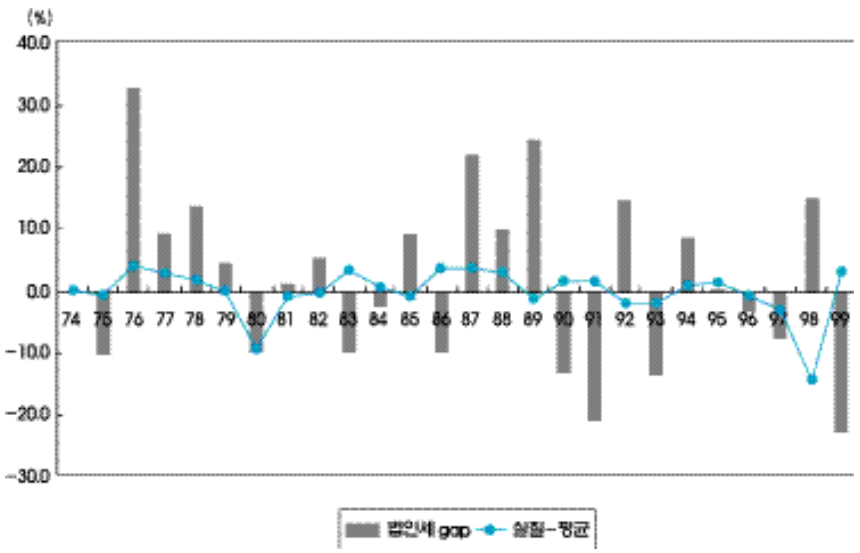
다음으로 법인세를 살펴보자. 1차 오일쇼크 시점인 1974년에는 법인세가 전년 대비 61.4% 증가하여 경기안정에 역행했던 것으로 보인다. 중동 특수로 인한 1976년과 1977년의 호황기에도 법인세 세수 증가율이 높아 경기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2차 오일쇼크가있었던 1980년에도 법인세 갭(법인세수 성장률 - 경제성장률)이음수로나타나 경기안정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1986 1988년의 3저 호황기에는 1987 1989년의 법인세

호황기였던 1980년대 말에는 소득세가 경기조절기능을 담당하였으나 외환위기 이후에는 경기조절과는 전혀다른 방향으로 소득세수가 움직여 왔다. 그리고 법인세는 1980년까지는 경기조절역할을 하였으나 1980년대초부터 1990년대 전반에 걸쳐 성장률과 반대로 움직임으로써 경기변동을심화시키는역할을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갭이 양수로 나타나 경기조절 기능에 있어서 1년의 시차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과 1999년의 경우에는 소득세와 마찬가지로 경기조절기능을 담당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전반적으로 보면 1980년까지는 법인세가 경기조절 역할을 하였으나 1980년대초부터 1990년대 전반에 걸쳐 성장률과 반대로 움직임으로써 경기변동을 심화시키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4] 법인세 갭과 성장률 갭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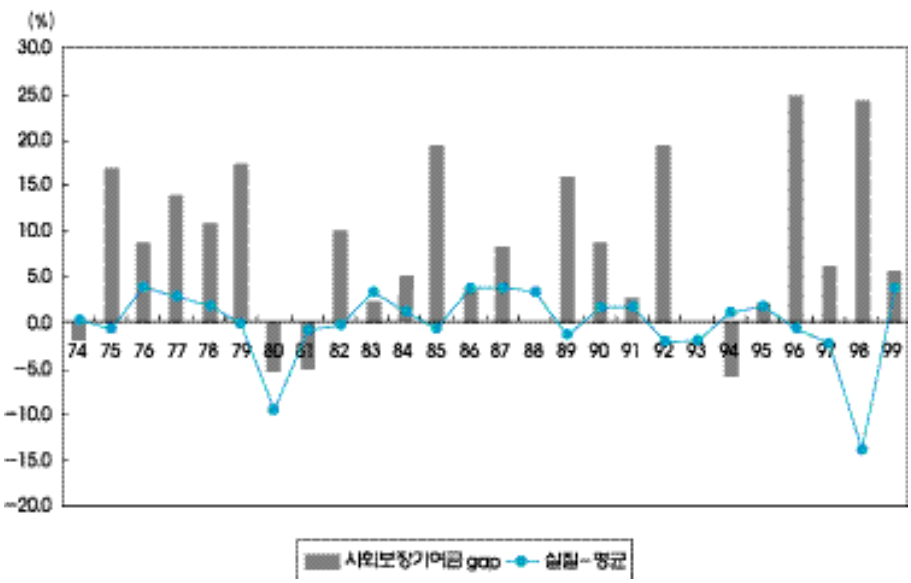
주: 수치가너무커서제외시킨 1974년의법인세갭수치는 61.4%임

3. 사회보장기여금

사회보장기여금을 보면 1988년 수입이 144.9%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민연금 도입에 기인

한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기간을 국민연금 도입 이전과 이후로 구분하는 것이 필요하다. 국민연금 도입 이전을 보면 뚜렷하지는 않지만 사회보장기여금이 경기조절 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국민연금이 도입된 시점 이후를 보면 소득세 및 법인세처럼 경기 진폭을 커지게 만드는 역할을 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민연금이 가입자의 확대와 보험료율을 계속 인상해 왔다는 점을 감안하면 이러한 현상이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 특히, 1998년처럼 경기가 급속히 냉각되는 시점에도 수입의 증가율이 높아 경기를 하강시키는 역할을할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5] 사회보장기여금 갭과 성장률 갭의 추이



주: 숫자가커서제외시킨 1988년의수치는144.9%, 1993년수치54.9%임

4. 소비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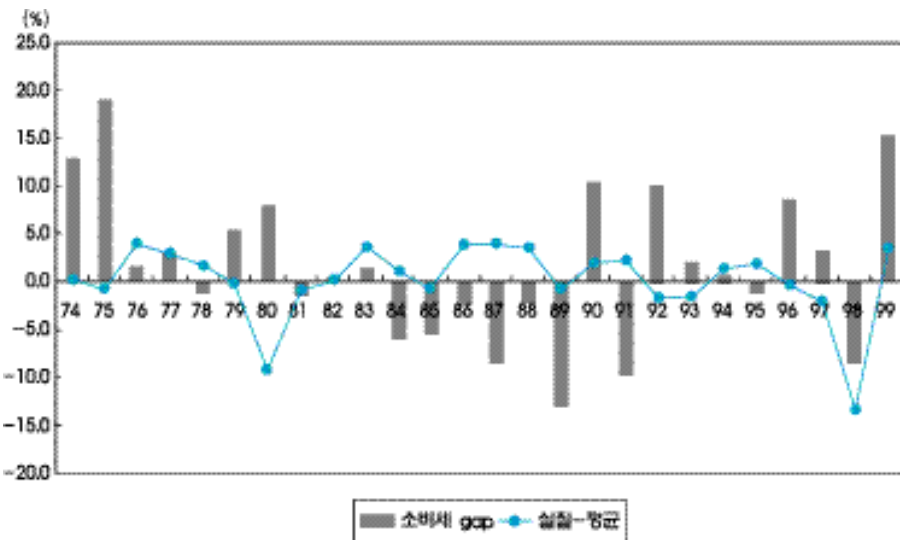
소비세도 면세,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구조에 따라재정안정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

소비세수는 1976년과 1977년의 호황기에 소폭 증가하여 경기중립에 가까웠던 것으로 보이며, 2차 오일쇼크가 있었던 1980년에는 소비세 갭이 양수로 나타나 경기 진폭이 커지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과 1999년에는 호황기에 세수가 대폭 증가하고 불황기에 세수가 대폭 감소함으로써 경기조절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에는 법인세 및 소득세가, 최근에는 주로소비세가경기조절기능을많이수행하고있는것으로보인다.

게 만드는 역할을 수행했다. 1986 1988년의 3저 호황기에도 크지는 않지만 경기동행적으로 움직였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과 1999년에는 호황기에 세수가 대폭 증가하고 불황기에 세수가 대폭 감소함으로써 경기조절기능을 잘 수행하고 있다. 따라서 과거에는 법인세 및 소득세가, 최근에는 주로 소비세가 경기조절기능을 많이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6] 소비세 갭과 성장률 갭의 추이



IV. 개별 세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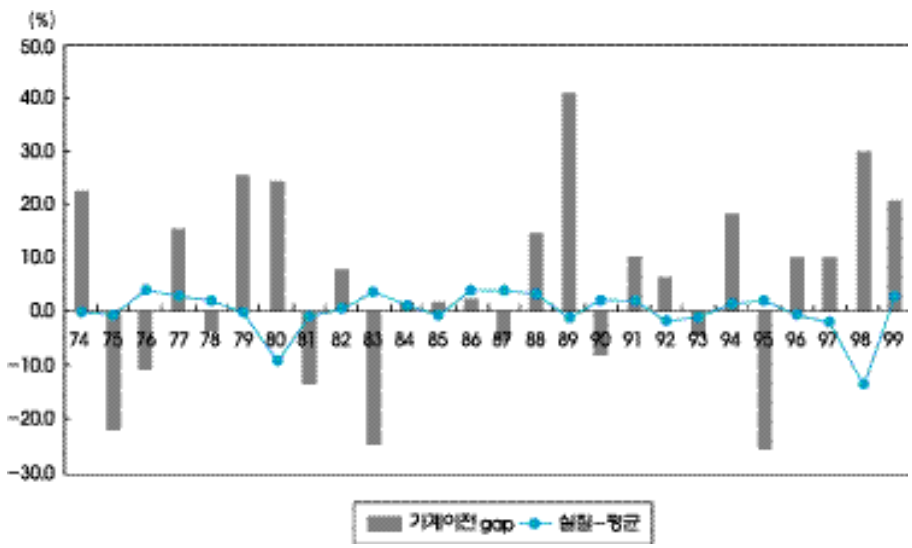
세입이 자동적인 경기조절과 관련이 깊다면 세출은 재량적인 경기조절과 관련이 깊다. 특히, 자본지출과 순융자가 지출의 경직성이 낮아 경기조절에 유용한 수단이 된다. 반면 세출 중에서도 사회보장과 관련된 지출(주로 통합재정상 가계이전)은 자동안정기능을 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교부금, 양여금 등 지방정부에 이전하는 재원도 법적으로 세수에 비례하도록 설계되어 있지만 세수가 사전적으로 결정되므로 급격한 경기변동을 완충시키는 역할을 할것으로판단된다.

1. 가계이전

세출 중 자동안정기능을 수행하는 가장 대표적인 항목이 사회보장이다. 여기서는 국민연금 등 각종 연금과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공적부조를 포함한 가계이전을 중심으로 지출의 자동안정기능을 살펴본다. 가계이전지출은경기가 하강하거나 나빴던 1979년과 1980년도에 증가율이 높고, 경기가 과열양상을 보였던 1983년에는 지출이 감소함으로써 안정화 기능을 잘수행했다. 1995년과외환위기 전후에도 가계지출이경기안정화 기능을 잘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1999년의 경우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복지지출의 증가추세에 따라 경기 동행적으로 움직이게 된 것으로 보인다. 향후 가계이전과 관련된 복지지출이 증가할 것이므로경기과열시에는 경기를 부추기는역할을담당할것으로전망된다.

[그림 7] 가계이전 갭과 성장률 갭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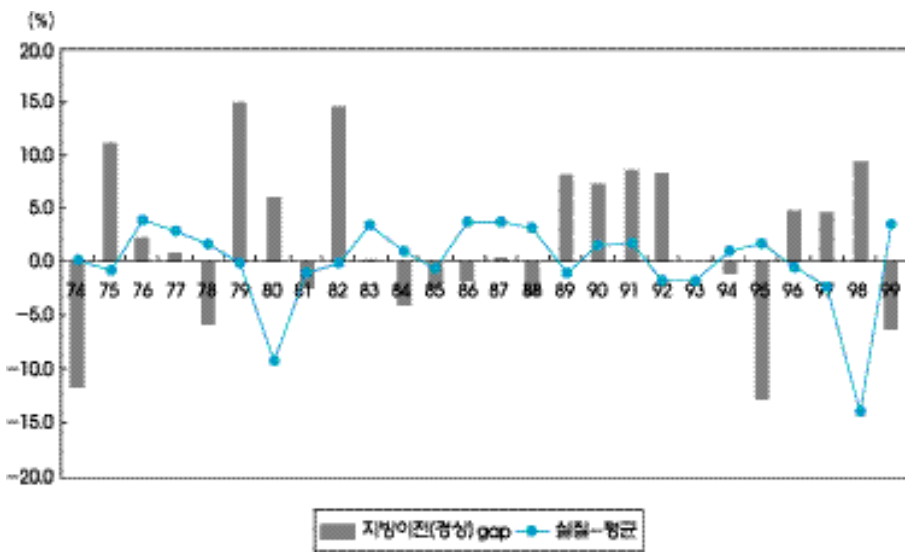


가계이전은 전반적으로 자동안정기능을 잘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향후 가계이전과 관련된 복지지출이 증가할 것이므로 경기과열시에는 경기를 부추기는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전망된다.

2. 경상지방이전

경상지방이전의 대부분을 재정 및 교육교부금이 차지한다. 자료를 보면 지방에 대한 경상이전은 경기 불황이었던 1980년에 증가율이 높았고,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1980년대에는 성장률보다 낮은 증가율을 유지하였다. 외환위기로 심각하게 경제가 침체되었던 1998년에는 상대적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고, 1999년에는 증가율이 낮아짐으로써 반대로 경기과열을 낮추는 역할을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결과적으로 경상지방이전, 주로 교부금은 재정안정기능을 수행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

[그림 8] 지방이전(경상) 갭과 성장률 갭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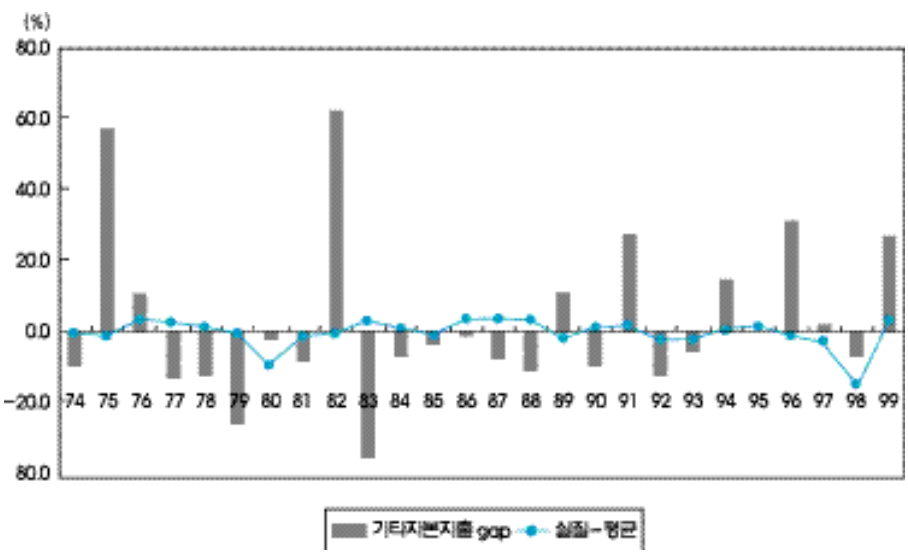


3. 자본지출(지방이전 제외)

다음으로 지방이전을 제외한 자본지출을 살펴보자. 자본지출은 지금까지 대표적인 경기조절 수단으로 인식되어 왔다. 자료를 보면 기타자본지출이 크게 증가하거나 감소한 시점은 1975년, 1979년, 1982년, 1983년, 1991년, 1996년, 1999년으로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1975년, 1979년, 1982년, 1991년, 1996년의경우 정상적인 경제성장을 하고 있었으므로 자본지출을 급격히 늘리는 것이 경기조절에 기여하지는 못했을 것으로 보인다.

경기상황을 기준으로 보아도 1980년의 경우 심각한 침체에도 불구하고 SOC 등 자본지출을 증대시켜 경기안정을 달성하지는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호황기였던 1980년대말에는 경기조절기능을 담당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과 1999년에는 경기조절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경기 진폭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재정이 움직였다. 전반적으로 자본지출이 적정한 경기조절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9] 기타자본지출 갭과 성장률 갭의 추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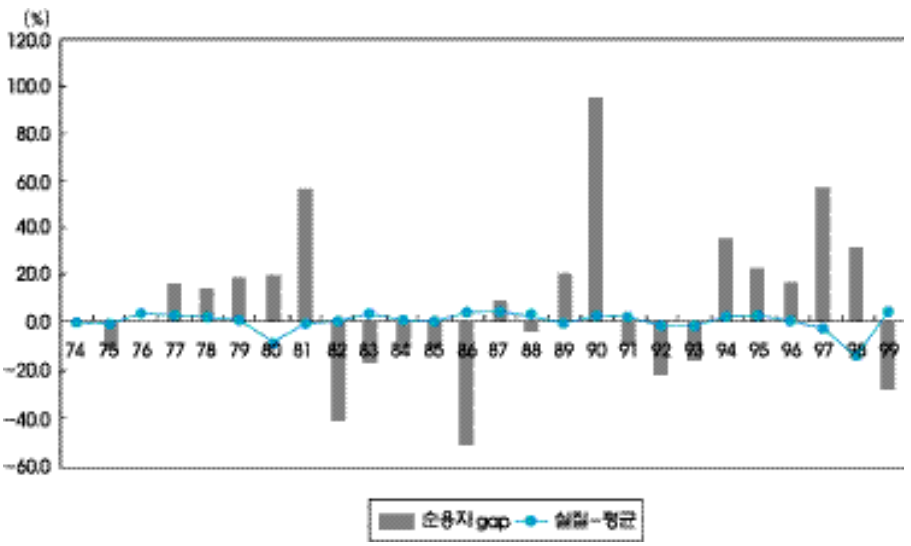


외환위기 이후인 1998년과 1999년에는 경기조절기능을 수행하기보다는 경기 진폭을 확대시키는 방향으로 재정이 움직였다. 전반적으로 자본지출이 적정한 경기조절기능을 수행하지 못한 것으로나타나고있다.

4. 순융자

앞에서 살펴본 기타 자본지출과 마찬가지로 순융자도 대표적인 경기조절 수단이다. 순융자는 1980년대 초반부터 1989년까지 경기조절기능을 대체적으로 잘 수행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1991년을 제외한 1990년대 초반에는 경기 역행적으로 운영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반면 외환위기 시점인 1998년과 1999년에는 경기조절 역할을 잘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림 10] 순융자 갭과 성장률 갭의 추이



주: 수치가너무크게나타난 1974년은제외하였는데수치는 644.1%임

Ⅴ. 시사점

지금까지 재정의 경기조절기능을 살펴본 결과를 보면 세입의 경우 경기조절기능이 약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세의 경우 1980년대부터 경기안정화 기능보다는 경기를 증폭시키는 경우가 많았던 것으로 보인다. 이는 법인세 및 사회보장기여금에서도 동일하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소득과세의 자동안정화 기능이 제고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소득과세가 외환위기 시점부터 자동안정화보다 경기 동행적 성격이 강해진 원인을 분석하고 이를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소비세는 소득과세와는 달리 1990년대 중반 이전까지는 주로 경기동행적인 역할을 수행하였지만 외환위기 시점 부근부터 경기 역행적으로 움직임으로써 경기조절기능을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소득세보다 소비세가 경기조절기능을 잘 수행하게 된 원인을 면밀히 살펴보고 소비세의 강화를 통한 재정의 자동안정장치를 모색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반면 정부세출은 전반적으로 경기 역행적으로 운영되어 경기 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1980년대 중반에서 1990년까지는 성장률보다 낮은 지출 증가율을 유지함으로써 고성장에 따른 부작용을 완화시키며 경제안정에 기여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외환위기 시점 이후에도 경기 역행적으로 운영되었다.

세출 중 법적으로 세출 규모가 정해진 지방정부에 대한 경상이전이 자동안정기능을 수행한 반면 대표적인 경기조절 수단인 자본지출을 보면 경기조절에 효과적인 경우와 그렇지 못했던 경우로 나뉘고 있다. 특히, 외환위기 이후에 자본지출이 경기조절에 효과적이지는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순융자도 자본지출처럼 경기조절에 효과적이었던 경우와 그렇지 못했던 시점으로 구분되지만 외환위기 시점인 1998년과 1999년에는 경기조절역할을 잘 수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경상지출의 자동안정기능이 효과적인 반면 재량적 지출인 자본지출이나 순융자는 그 시점에 따라 효과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따라서 지금까지의 경험을 기준으로 본다면 경상지출의 자동안정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사회간접자본 투자나 융자 등 재량성이 높은 세출을 통하여 경기조절을 하는 것은 제고해 볼 필요가 있다. 특히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지출 증대는 경제에 영향을 미치기까지 상당한 시차가 소요되므로 경기조절 수단으로 사용하는 데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케이블 인터넷의 사회후생과 조세정책



全 澤 勝 초청연구위원(XXXXXXXXX)

Ⅰ. 온라인 경제의 조세 이슈: 인터넷 접속 부가세

Romer(1994)에 따르면, 국제무역론의 관세정책에서 관세를 부과할 경우 수입의 사업성을 떨어뜨리고 결국 수입품과 이에 융합된 기술이 들어오는 것을 막아 관세 부과국의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 특히 개발도상국에서는 선진외국의 기술이 도입될 경우 해당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관세로 인한 손실이 클 수도 있다. 외국기업들이 이러한 관세를 피하기 위하여 수입국 내의 현지공장을 통해 진출하기도 하지만, 공장 건설 등의 고정투자비용이 이윤을 상쇄한다면 이런 직접투자방식도 유용하지 못하다. 이러한 논리는 수입재에 융합된 기술이 새롭고, 국내산업에파급효과가 큰것일수록설득력이 있다.

온라인 경제에 있어서도 여러 가지 새로운 기술들이 개발 · 도입되고 있다. 그 중에서 가장 주목할 만한것은광역인터넷이다. 이 중케이블 인터넷은 온라인 산업에미치는 파급효과가 크지만, 네트워크를 구축하려면 엄청난 시설투자비용이 든다. 따라서 앞에서 서술한 관세논리에서와 마찬가지로 인터넷에 부가세를 부과한다면 네트워크망에 과소투자(under-investment)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인터넷에 대한 부가세 부과가 사회후생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고자 한다. 특히 기존의 연구에서 간과되었던 부가세의 부과로 인한 잠재적인 공급의 감소로 인한 사회후생의 손실에 초점을두고자한다.

* 이원고는필자개인의의견으로서한국조세연구원의공식견해를나타내는것은아닙니다.

Ⅱ. 인터넷 접속 부가세의 영향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관련된 조세 및 재정정책에서 가장 주안점이 되어 온 것은 전자상거래와 관련된 조세정책이었다. 전자상거래에 대한 과세 여부를 놓고 정부의 세수증대 차원에서 부과해야 한다는 주장과 아직 전자상거래가 완전한 성숙단계에 이르지 않은 상황에서의 과세는 닷컴기업들의 수익성을 더욱 악화시켜서 인터넷 경제의 전반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는주장이팽팽히맞서있다[1].

그러나 전자상거래 관련 정책의 영향과 그 재정측면에서의 영향은 인터넷 접속에 관한 조세정책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적다. 미국의 경우를 보면 전자상거래에 대한 비과세로 인한 세수의 감소분은 그리 크지 않다고 한다. 이는 전통적인 세수감소분의 추정치(총 전자상거래의 매출액 × 평균세율)는 정확한 수치라고 보기 어렵다는 점에서 출발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업간 거래의 경우 면세되는 경우가 많은데 인터넷 거래에는 이러한 거래들이 많이 포함되어 있다. 둘째, 인터넷상으로만 거래가 가능하거나 인터넷이 없었으면 그 서비스나 제품이 존재하지 않았을 경우가 많기 때문에 비과세로 인한 세수손실에서 이 부분은 제외되어야 한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한 후 남는 인터넷거래의 60%는 컴퓨터와 관련된 거래이다. 그러나 Goolsbee and Zittrain(1999)에따르면 컴퓨터 관련 상거래의 경우에도 인터넷이 없었을 때 우편주문방식[2]으로 행해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모두를 비과세할 경우세수감소분이라고는할 수 없다[3].

반면, 인터넷 접속에 대한 세금 즉, 부가세 부과의 파급효과가 세수측면에서나 그 사회후생측면에서 전자상거래의 세금 부과보다 더 클 수 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앞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신기술에 기반을 둔 제품의 가치가 높고, 관련된 신기술 개발에 많은 고정투자가 요구되는 경우, 이런 서비스나 제품에 조세를 부과하면 전통적인 경제학에서 추정하는 사중손실(Deadweight Loss)[4]보다 더 큰 사회적인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Romer 1994).

---

1) Andal(1997)을참조.
2) 국내의경우는우편주문방식으로볼수있는경우가홈쇼핑을통한구매라고볼수있다.
3) 우편주문의경우, 우편주문기업이전국적으로사업을하는경우에는주에서부과하는세금(sales tax)의적용을받으며, 우편주문기업이어느특정지역에만기반을두고있는경우는그해당지역에서주문된것에대해서만세금이부과된다.
4) 사중손실은자유경쟁시장에세금을부과함으로써발생하는사회적후생의감소분을말한다.

인터넷 접속에 대한 세금 즉, 부가세 부과의 파급효과가 세수측면에서나 사회후생측면에서 전자상거래의세금부과보다더클수있다.

② Varian(1999)에 따르면, 인터넷 사용이 접속가격에 매우 민감하다. 이러한 탄력적인 수요에 세금을 부과하는경우 사중손실(Deadweight Loss)은크다.

③또한, 인터넷 접속에 대하여 비과세 처리할 경우 야기될 수 있는 재정수입의 타격이 전자상거래에대한면세로야기될수 있는 타격에 비해 훨씬클 수도있다[5].

III. 케이블 인터넷의 현황과 그 시설투자비용

1. 케이블 인터넷이란?

케이블 인터넷은 광역인터넷 서비스의 하나로 기존의 전화모뎀으로는 불가능했던 멀티미디어(음악, 영화, 비디오)들을온라인상의 사용자간에 공유 · 감상을 가능하게 하며, 자료나 문서의 공유, 비디오 컨퍼런스 등에도 이용될 수 있는 서비스이다[6]. 기존 전화선을 이용한 인터넷 접속은 멀티미디어 콘텐츠의 보급 확대로 접속에 많은 불편을 초래하고 전화선과 유사한 ISDN 역시 대역폭의 제한으로 커다란 자료를 인터넷에서 공유하기엔 역부족이다. 또한 DSL도 PC에서 마지막 서버까지를 전화선에 의지함으로써 속도가 매우 저하된다. 반면 케이블 인터넷은 케이블TV망의 남은 주파수 대역을 사용함으로써 빠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그리고 광케이블망을 가지고있으면 99%가케이블 인터넷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 그러나 케이블 인터넷 서비스가 제공될 수 없는 지역이 있는데 주된 원인으로는 경제성 문제를

5) Goolsbee(2000)에따르면, 미국의경우인터넷접속지출액은 1999년에 10조달러에이른다. 만일미국의 모든주가이에 부가세를 부과한다면세수입은 630백만 달러가되며, 이는 전자상거래에 세금을부과했을때의수입을 월등히능가하는것이다.

6) 이 밖의 광역인터넷 서비스에는 DSL(Digital Subscriber Line), ISDN(Integrated Services Digital Network), 고정무선통신(Fixed Wireless Access: FWA), 3세대이동통신(IMT-2000), 위성통신, 그리고기업을상대로한Frame relay와T1/T3통신 등이있다.

들 수 있으며 이외에도 지상권 문제, 설치상의 문제 등이 있다. 한 예로 외벽에 선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아파트나 오피스텔 등)나 케이블선이 꺾이게 되는 경우는 케이블을 이용한 인터넷서비스가 불가능하다.

2. 케이블 인터넷의 현황

가. 국내

국내 케이블 인터넷 서비스는 두루넷[7]과 하나로통신[8] 등이 제공하고 있다. <부표 1>에서는 두루넷과 하나로통신을 통해 인터넷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지역을 보여준다. <표 1>에서는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케이블 인터넷을 포함한 인터넷 접속 현황과 서비스간 차이를 비교하였다. 여기서 볼 수 있듯이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DSL에 비해서 케이블 인터넷의 이용도가 낮다. 그 원인 중의 하나는 DSL이나 ISDN의 사업자, 즉 한국통신이 케이블 인터넷의 사업자에 비해거대사업자로 시장을 선점하고, 시장홍보에주력하였기때문이다.

나. 일본

전화모뎀, 케이블 인터넷, DSL, 이동전화 등을 통한 인터넷접속자가 2001년 6월 현재 약 6,000만명에이르고있다. 이 중 약 32.7%가 전화모뎀, 케이블 인터넷, DSL을 사용하고 있으며, 67.3%가 이동전화를 통하여 인터넷을 이용하고 있다. 전화모뎀, 케이블 인터넷, DSL 중에서는 전화모뎀 이용이 97.9%를 차지하고 있으며, 케이블 인터넷과 DSL을 통한 접속은 각각 1.6%와 0.5%로 아직 광역인터넷이 크게 보급되어 있지 못하다. <표 2>에는 일본의 광역 인터넷의 현황을 간략히 요약하였다. 현재 일본의 광역인터넷 보급이 우리나라나 미국에 비해떨어지는 이유는 서비스 제공지역의 한계와 높은 서비스 요금에 있다.

그러나 케이블 인터넷을 통한 인터넷 접속은 매년 크게 증가하고 있다. 가입자 수도 1999년말 15만 4천명에서 2001년 9월 115만 1천명에 이르고 있다. 이러한 증가세는 비교적 빠른 속도와 상대적으로 낮은 요금 등의 장점에서 기인한다. 또한 케이블 인터넷을 공급하는 사업자도 크게 늘어 1999년말 케이블 라인을 통해 인터넷 접속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자 수가 84개사에서 2001년9월 238개사로크게 증가하였다.

---

7) 1998년7월1일부터서비스를제공하고있으며시장의 99%를장악하고있다.
8) 1999년4월1일부터서비스를제공하고있다.

아직 우리나라에서는 DSL에 비해서 케이블 인터넷의 이용도가 낮다. 그 원인 중의 하나는 DSL이나 ISDN의 사업자, 즉 한국통신이 케이블 인터넷의 사업자에 비해 거대사업자로 시장을 선점하고, 시장홍보에주력하였기때문이다.

<표 1> 우리나라의 인터넷 접속 현황(2001년 11월 기준)

서비스	이용도[1]	사용비용[3]	최고속도 (downstream/ upstream)	장 점	단 점	주가입자
Dial-up	가정:63% 기업:46.9%	1만원[4]	56kbps/33.6kbps	싸고설치가간편	매우느리며, 인터넷 사용중전화의사용이불가	다른초고속인터넷을 쓰기에 부담을느끼는 가정과기업들
ISDN	가정:3% 기업:11.7%	8천 2만3천원[5]	128kbps/128kbps	56K 모뎀보다두배나 빠르고기타부가서비스 (통화중대기)도제공	가격에비해속도가느리며, 네트워크에상시연결되어 있지못함	가정이나기업중 DSL이나Cable이 부담스러운사용자들
Satellite		1만8천 3만3천원[6]	400kbps/33.6kbps	다운로드의시간이빠름	설치가복잡하며, upstream에는전화선을 사용하여느림	대부분이외곽지역에 위치하고있어 유선서비스를받지 못하는이용자
Cable	가정:12% 기업:6.3%	3 4만원[7]	1~5mbps/ 33.6kbps~2.5mbps	가장싼방법으로 초고속인터넷을 즐길수있는대안	기업의경우는사용이 어렵고, 사용자가ISP를 선택할수없고, 다른사용 자들과라인을공유함으로 인해서비스속도가느려질 수있음	주로인터넷과 Cable TV를 동시에이용하는가정
DSL	가정:23% 기업:7.4%	3 4만원[8]	144kbps~8mbps/ 64kbps~8mbps	전화선을사용해서 PC를항상네트워크에 접속할수있음	설치가복잡하고가정으로 들어가는전화선의용량에 따라속도가좌우됨	소규모기업이나 Cable을사용할수없는 가정
Frame relay and T1/T3[2]	기업:16.1%	79만~ 470만원[9]	56kbps~45mbps/ 56kbps~45mbps	기업의수요에맞추어 안정적인서비스와빠른 수리가장점	중소기업이나가정에서이 용하기에는매우비싸고 설치도복잡함	일정규모 이상의기업

주:1) 가정부문총인터넷접속자수는 4,511,158가구이며, 기업은 239,069개사가가입하고있음.
2) 이방식은기업전용회선임.
3) 부가세별도임.
4) 천리안이용시정액형상품의기본료이며전화료는별도임.
5) 하나로통신이용시요금임.
6) 한국통신위성인터넷이용시 (1999년 11월기준) 요금임.
7) 두루넷이용시요금임.
8) 한국통신ADSL 이용시요금임.
9) 데이콤보라넷이용시속도별이용료임.

<표 2> 일본의 광역 인터넷 서비스(2000년 12월말 현재)

	전송속도	월사용료(엔)	서비스 개시일	서비스제공자	주요수요
Cable모뎀	1Mbps	5,200 5,600	1996.10	188개의CATV 사업자	가정, 아파트
ADSL	1.5Mbps	5,500 + α	1999.12	NTT East&West Japan Telecom Tokyo Metallic Comm. 외	가정, 아파트
SDSL	768Kbps	38,000	1999.12	Tokyo Metallic Comm. 외	SOHO[1)]
FWA	1.5Mbps	9,800	1999. 6	KDD Winster, Japan Telecom, Sony, CWC	SOHO, 기업
ISDN	64Kbps	3,600	1999.11	NTT East&West	가정, SOHO, 아파트

주: 1) SOHO(Small Office Home Office)는자택근무자들을지칭함.
자료: 이종관,『일본의광대역서비스시장동향』,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4.(원자료는總務省報道資料)

다. 미국

미국의 광역인터넷 중에서는 케이블 인터넷의 비중이 가장 높다. 2001년에는 73%의 가정이 케이블 인터넷에 접속이 가능하고 2005년에는 93%까지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가입자 현황에서도 케이블 인터넷의 비중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우리나라의 사정과는 대조적으로 미국에서 케이블이 DSL보다 인기가 있는 이유는 많은 가정들이 이미 케이블 방송을 시청하고 있어 쌍방향(2-way) 케이블망에 따른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제공이 용이하기 때문이다. 또한 인터넷 서비스 공급업자들이 DSL 서비스 설치의 어려움으로 인해 케이블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표 3> 미국의 가정 중 광역인터넷 접속가능 비율과 추정치

(단위: %)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Cable	56	73	88	91	92	93
DSL	34	45	54	62	70	74
Fixed Wireless	5	10	27	37	52	59
Satellite	86%					

자료: *Building a Positive, Competitive Broadband Agenda,* ITAA white paper, 2001.

케이블 인터넷의 경우 기존의 전화선이 아닌 광케이블과 동축케이블을 혼합한 쌍방향 HFC를 사용하며, 가입자와서비스공급자사이에별도의네트워크구축이필요하다.

<표 4> 미국의 인터넷 사용자 현황(2001년 7월 현재)

(단위: 명)

	가입자수
2-Way CABLE	4,935,542
DSL	3,117,000
Satellite	114,000
Dial up	61,286,220
Internet TV	1,223,000

자료: *Building a Positive, Competitive Broadband Agenda,* ITAA white paper, 2001.

3. 케이블 인터넷의 시설투자비용

케이블 인터넷은 속도가 빠르고 안정적이지만, 네트워크망을 구축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시설투자 비용이 소모된다. DSL의 경우는 기존의 전화선(즉, 구리선)을 그대로 사용하므로 전화선 공급자에게 일정의 대여비를 지급하면 인터넷 서비스를 이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기에 커다란 고정투자비는 (서버와 스위치의 구축을 제외하고는) 없다. 반면에 케이블 TV와 동일한 라인을 사용하는 케이블 인터넷의 경우 기존의 전화선이 아닌 광케이블(Fiber)과 동축케이블(Coaxial Cable)을혼합한 쌍방향(2-way) HFC(Hybrid Fiber Coaxial)를사용하며, 가입자와 서비스 공급자 사이에 별도의 네트워크구축이필요하다.

IV. 인터넷 접속에 대한 조세와 사회후생

1. 현행 인터넷 접속관련 조세제도

국내에서는 인터넷 접속자는 가입설치비 10%를 부가세로 납부하고 인터넷 서비스 이용료에 대해서도 부가세 10%를 부담하고 있다. 반면, 미국에서는 1998년 하원의 Internet Tax

Freedom Act(ITFA) 이전에는10개의 주에서 인터넷의 접속에 세금을 부과하였으나 ITFA를통해 부가세를3년동안면제하여주었다.

일본의 경우는 5%(지방소비세 1% + 재화용역세 4%)의 세금을 케이블 인터넷에 부과하고 있다. 반면, 일본정부는 민간투자자의 인터넷 가입자와 사업자간의 네트워크망의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저금리 융자나 세금우대 조치를 하고 있다. 첫째, 광케이블망을 국가의 지원하에 전국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것으로 ' 전기통신기반충실임시조치법 에 근거하여 특별융자, 고정자산세의 경감조치, 법인세의 특별상각 등 각종 지원을 하고 있다. 그 내용을 <표 4> 에 정리하였다. 둘째로, 인터넷고속화 특별융자제도를 통해서 2000년 4월부터 ADSL 기술을 이용하는 인터넷 접속 서비스의 고속화, 고기능화를 위해 제2종 전기통신사업자가 설비를 취득하기 위한 자금에 대해서 금융기관의 5년간 저리융자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이는 통신요금의 저렴화를 조기에 실현하기 위한 환경을 마련하기 위함이다.

<표 4> 일본의 광케이블망 구축을 위한 지원

	내 용
적용기간	2000년4월1일 2002년3월 31일까지한시적으로적용
특별융자	광섬유망정비에필요한자금에대해서일본정책투자은행으로부터NTT-C에의한 저리융자
조세특별조치	법인세특별상각(7%로감면) 고정자산세의특례(시정촌세: 취득후5년간1/6 경감)
기 타	통신 · 방송기구에대한채무보증(5년간손금산입)

자료: 2000년우정성보도자료: www.hokkaido-bt.go.jp/C/C12/c121004.htm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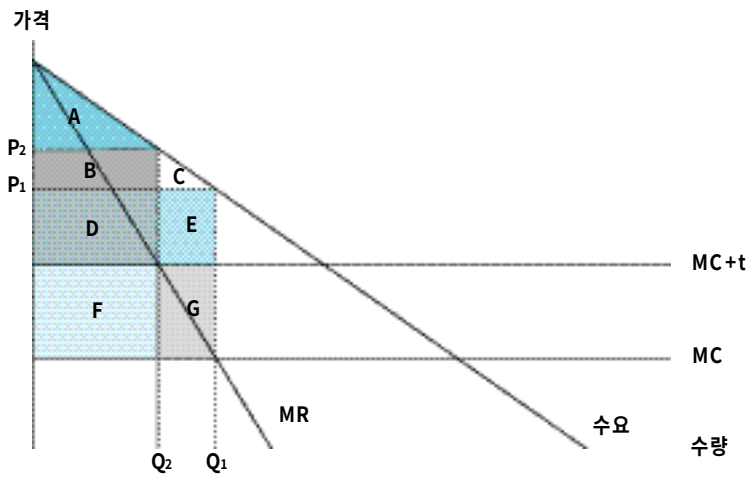
2. 기존의 사회후생손실 추정방식

[그림 1]에서는 인터넷 접속에 대한 부가세의 부과로 인한 사회후생의 감소를 설명하고자 한다. 국내의 경우 각 케이블 인터넷 서비스의 공급자가 특정지역에서 독점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독점의 경우와 같은 가격과 수량이 결정되는 것으로 가정하였다[9]. 즉, 세금부

9) 인터넷이용자들은케이블인터넷이외에도다른광역인터넷서비스즉, DSL이나ISDN을이용할수있다. 따라서광역인터넷시장전체를고려했을때, 케이블인터넷공급자가반드시독점적인지위를누린다고는할수없다. 이경우의가장큰차이는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증가한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점을 제외하고는 케이블 인터넷이 DSL과 ISDN과는 차별화된(differentiated) 서비스라고한다면이러한가정은크게무리가없다.

케이블 인터넷 서비스에 부가세를 부과함으로써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잠재적 소비자와 공급자의잉여후생모두가사회후생의손실에포함되고그만큼사회후생의손실이커진다.

[그림 1] 부가세 부과와 사회적 손실



과 전에는 각 지역의 독점적인 공급자는 한계비용(MC)이 한계수익(MR)과 일치하는 점에서 가격(P_1)과 수량(Q_2)을 결정한다. 만일 여기에 부가세를 부과하는 경우를 상정하여 보자. 세금부과 이후에는 한계비용이 MC + t (t : 부가세율)로 상승하게 됨에 따라 가격이 P_2로 상승하고 균형 공급량은 Q_2로 감소하여 소비자의 후생과 공급자의 잉여후생은 각각 A와 BD로 대표된다. 따라서 전통적인 세금으로 인한 사회후생의 손실은 CEG로 나타낼 수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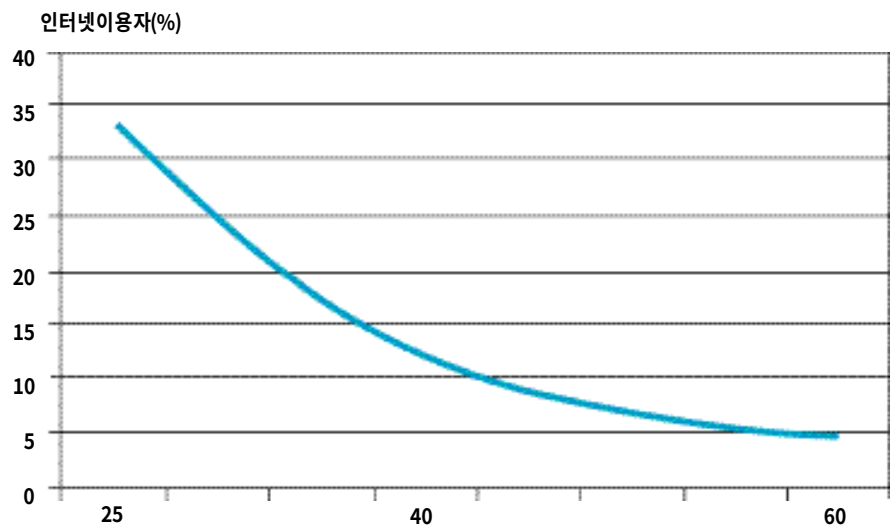
3. 공급 감소로 인한 추가적인 사회후생손실

케이블 인터넷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우선 시설투자비 등의 고정비용이 필요하다고

가정하자. 만일 고정비용이 공급자의 잉여후생(BD)보다 크다면 기업은 시장에 진입하지 않을 것이다. 이러한 시장은 규모가 작아 상대적으로 사업성이 떨어지는 지역일 것이다. 이와 같이 케이블 인터넷 서비스에 부가세를 부과함으로써 공급이 감소하는 경우, 잠재적 소비자와 공급자의 잉여후생 모두가 사회후생의 손실에 포함되고 그만큼 사회후생의 손실이 커진다. 즉, 세금이 없었다면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지역[10]에 있는 잠재적 소비자의 후생과 잠재적 공급자의 잉여후생이 이에 포함된다[11]. 따라서 이런' 고정투자비용에 따른 시장진입장벽 이 고려된다면, 세금으로 인한추가적인 사회후생의 손실이 발생하게된다.

물론 잉여후생의 감소분은 수요탄력성에 따라서 결정된다. 미국의 광역인터넷에 대한 수요는 [그림 2]에 나타나 있다. 이는 미국의 소비자들에게 광역 서비스를 받기 위해 얼마까지를 지불할 용의가 있는지를 조사한 설문을 근거로 한 것이다. 광역 인터넷 접속에 대한 수요

[그림 2] 미국의 광역 인터넷 수요 (미 전역 기준)



자료: *Building a Positive, Competitive Broadband Agenda,* ITAA white paper, 2001.

10) 주로인구밀도가낮거나저소득층이많은지역이다.
11) 이분석에서는세금을전혀부과하지않을경우와부과할때의경우로구분하였다. 임계세율(critical tax rate)이존재하는경우에임계세율에서는공급자의잉여가없어공급자가시장에진입하는경우와그렇지않은경우에모두공급자잉여가없다. 만일세율을임계세율에서출발하여세율을임계세율보다높일경우공급자는당연히시장에공급을중단하게된다. 이경우 앞에서언급된추가적사중손실중에서공급자잉여분은제외되고잠재적소비자후생만이포함되어야한다.

광역 인터넷 서비스의 대부분은 기존의 온라인에서 속도의 제약으로 인해 구현하지 못했던 것들을 실현하고 있을 뿐 새로운 아이템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미국의 경우에도 광역인터넷의 미성숙으로인해아직은광역인터넷에대한수요가게임산업에집중되어있음을알수있다.

탄력성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75에서 -3.2까지 추정된다. 수요탄력성이 높을수록 세금으로 인한 사중손실이 크게 된다. 따라서 앞에서 언급된 ' 고정투자비용에 따른 시장진입장벽 ' 까지 고려한다면 사중손실은매우 클 것이라 생각할 수있다[12].

4. 사회후생손실을 가중시키는 기타 요인

가. 정액제의요금체계

대부분의 인터넷 접속요금은 정액제이다. 따라서 부가세로 인한 가격상승의 경우 소비자는 서비스를 중단하거나 계속하는 두 가지의 선택밖에 없다. 따라서 종량제(이용시간에 따른 사용료 부과)의 경우 세금의 인상으로 이용시간이 줄어드는 것에 비해 수요가 큰 폭으로 감소한다.

나. 네트워크외부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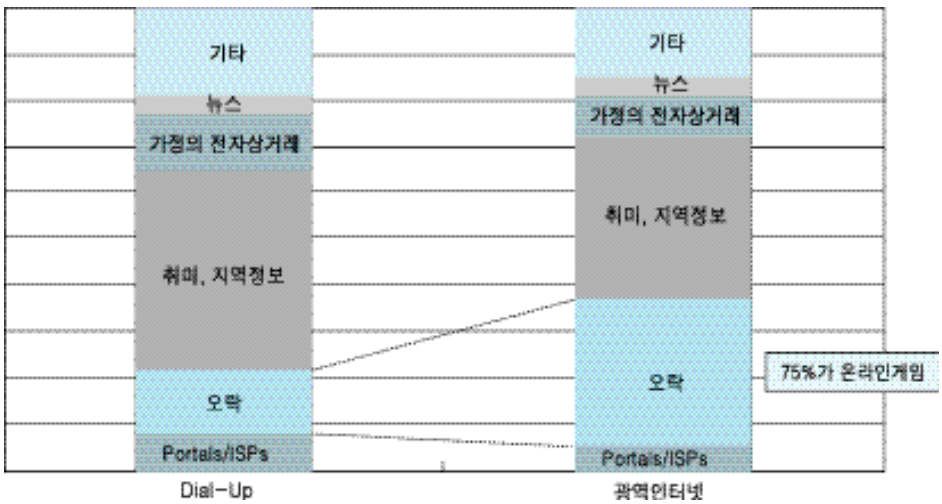
광역 인터넷의 사용자의 편익은 광역 인터넷 사용자의 수와도 비례한다. 사용자가 줄어들면 서비스 자체가제공되지 않을 수 있으며, 서비스가 제공되더라도사용자가 부담하는 비용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서비스의 질도 떨어진다.

다. 디지털콘텐트산업으로의파급효과(spillover)

광역인터넷서비스는빠른속도만으로는별다른의미가없다. 속도와용량의제약이없어짐으로인해서, 저속 인터넷에서는불가능한서비스들을제공하는 사업이늘어나고있다. 즉, 온라인상에서영화나스포츠중계를감상하거나온라인게임을즐기고, 음악을다운로드받고, 동

12) 미국의경우를국내에그대로적용하기는어렵다. 빠른인터넷에대한수요는각나라의사회 · 문화적인상황에영향을받으며, 네트워크인프라에도크게영향을받는다. 따라서국내의인터넷수요에관한직접적인연구가요구되며, 미국의경우는 단지비교의수단임을밝혀둔다.

[그림 3] 미국의 전화모뎀과 광역 인터넷의 이용 구성



자료: *Building a Positive, Competitive Broadband Agenda,* ITAA white paper, 2001.

영상을통한비디오컨퍼런스나채팅등은고속인터넷의등장과함께등장한산업이다[13]. 그러나이들대부분은 기존의온라인에서속도의제약으로인해구현하지 못했던것들을실현하고 있을 뿐 새로운 아이템을 제공하지는 못한다. 즉, 빠른 속도에 맞는 콘텐트가 부족한 현실이다. [그림 3]에서 볼 수 있는바와 같이 미국의 경우에도 광역인터넷의 미성숙으로 인해 아직은광역인터넷에대한수요가게임산업에집중되어있음을알수있다[14].

Ⅴ. 요약 및 시사점

케이블 인터넷만을 고려하면 부가세로 인한 사회후생 감소는 다른 산업에 비해서 클 수 있

13) 미국의경우광역인터넷을기준으로서비스를제공하는온라인기업은다음과같다: Bloomberg Video, Broadcast.Com, ChannelSeek.Com, Clear Digital, CNN VideoSelect, ESPN Video, Film.Com, Hi-Speed Zone, Hollywood.Com, Internet Radio, Launch.Com, LiveConcerts.Com, MSNBC Video, MusicNet.Com, OnBroadband, Real Player G-2 Sites, SonicNet Streamland, TelevisionCommercials.Com, U8 TV, Universal Studio, VideoSeeker.Com, WebActive, Yack!, Heat.Net, Kali.Net.

14) 물론여기서간과되어서는안될부분은과연광역인터넷서비스와디지털콘텐트산업중어느쪽이 ‘ 먼저 ’인가하는점이다. 즉, 디지털콘텐트산업의미성숙으로광역인터넷의보급이지체되고있다고도생각할수있다. 아직이점에관한구체적인연구는없다. 하지만분명한것은두산업은서로의발전에중요한역할을하는보완관계에있다는점이다.

케이블 인터넷서비스산업에대한 조세정책은형평성과 효율성을감안하면서고정비용이 많이 소모되는산업의특성을고려한정책이어야한다.

는 요인을 가지고 있다. 이는 케이블 인터넷 서비스의 거대한 시설투자비용에 기인한다. 그러나이런논의를통해면세등과같은조세정책상의시사점을도출할수있는것은아니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예를 들어 국내에서 케이블인터넷과 함께 공급되는케이블 TV의 경우는 도입 당시에는 부가세를 면제하고, 2002년 7월부터는 과세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러한 방식은 미국의 전자상거래에 대한 조세유예기간과 형식상으로는 유사하다. 그러나 전자상거래의 사례를 그대로 인터넷 접속과 관련하여 해석하기는 어렵다. 두 가지의 경우 다 시기적절한 조세정책이 중요한 요소라는 점에는 차이가 없다. 즉, 케이블 인터넷의 경우 전자상거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산업의장 · 단기적인전망에 따라이에부합되는정책이 요구된다. Goolsbee and Zittrain(1999)에따르면, 미국은 전자상거래의 조세 부과로 발생하는세입이 적어도몇년간은중요하지 않을것으로예상되고또한 세금의부과에따른조세저항도 점차 감소하리라는 추정하에서 조세유예정책이 유용하다고 할 수 있다[15]. 반면에 인터넷접속산업의 경우는 앞에서살펴본바와 같이 조세의부과로인한 잠재적 수입도크고그 잠재적손실또한클 수있다. 따라서조세유예정책이적합한지는불투명하다.

둘째, 케이블 인터넷의 보급은 ' 정보격차(digital divide)[16]'의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 즉, 전반적인 인터넷의 보급은 정보격차를 줄이는 데 일조할 수 있다. 하지만 케이블 인터넷과 같은 고속 인터넷의 경우 이용자의 소득이 상대적으로 (전화모뎀 이용자의 소득에 비해) 높음으로 인해 여기에 대한 투자지원 등은 정보격차를 증대시킬수 있는 여지가 있다.

셋째, 네트워크망을 구축하는 데에 있어서 일본과 같은 투자지원제도도 국내에 있어서는 효과적인 처방이 아닐 수 있다. 즉, 정부는 1997년 이후 벤처기업(전기 · 통신 사업자 포함)을 지원하기위해시설투자에 대해 여러 세금감면의 혜택을 부여하였다. 현 시점에서 네트워크망의 구축에 중복지원을 할 경우는 과잉지원이 될 수 있으며 국내에서 두루넷과 하나로통신을 제외한 지방의 군소 케이블 인터넷 사업자의 비율이극히작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이러

15) 앞에서언급된바와같이국내전자상거래에대한과세의효과문제는미국과동일시할수없는여러여건이있음을밝혀둔다.
16) 정보격차는정보화가급속히진행되면서정보를가진자와그렇지못한자간의전반적인격차가벌어지는현상을지칭한다.

한지원책을통한효과를크게 기대하기어렵다.

넷째, 인터넷 접속에 관한 부가세 면제의 문제는 형평성의 문제에 부딪칠 수 있다. 대부분의 온라인 사용자가 비사용자들에 비해 소득이 비교적 높은 계층에 속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부가세 면세정책은 극히 역진적일 수 있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케이블 인터넷 서비스산업에 대한 조세정책은 형평성과 효율성을 감안하면서 고정비용이 많이 소모되는 산업의 특성을 고려한 정책이어야한다.

참고문헌

이종관,『일본의광역인터넷시장동향』, 한국정보통신정책연구원, 2001.

Andal, D. F.,“ State and Local Taxation of Electronic Commerce: Read my E-mail, No New Taxes,”*State Tax Notes*12 (1997), pp. 1387~1395.

Goolsbee, A.,“ The Implications of Electronic Commerce for Fiscal Policy(and Vice Versa),”mimeo, Harvard Law School, 2000.

Goolsbee, A., and J. Zittrain,“ Evaluating the Costs and Benefits of Taxing Internet Commerce,”mimeo, Harvard Law School, 1999.

ITAA white paper, *Building a Positive, Competitive Broadband Agenda,* Information Technology Association of America(ITAA), Arlington, VA, 2001.

Romer, P.,“ New Goods, Old Theory, and the Welfare Costs of Trade Restrictions,” *Journal of Development Economics* 43 (1994), pp. 5~38.

Varian, H.,“ Estimating the Demand for Bandwidth,”mimeo, UC Berkely, 1999.

<부표1> 국내 케이블 인터넷 접속 가능 지역 현황(2001년 11월 현재)

	방송국수	가능지역
서울	21	중구 · 종로구, 서대문구, 용산구, 성동 · 광진구, 동대문구, 중랑구, 성북구, 도봉 · 강북구, 노원구, 은평구, 마포구, 양천구, 강서구, 구로 · 금천구, 영등포구, 동작구, 관악구, 서초구, 강남구, 송파구, 강동구
부산	8	중동 · 영도구, 서 · 사하구, 부산진구, 동래 · 연제구, 남 · 수영구, 강서 · 북 · 사상구, 해운대구 · 기장군, 금정구
인천	5	중 · 동구 · 옹진 · 강화군, 남 · 연수구, 남동구, 부평 · 계양구, 서구
대구	6	중 · 남구, 북구, 수성구, 달서구 · 달성군, 서구, 동구
광주	2	동 · 북구, 남 · 서 · 광산구
대전	2	중 · 서 · 유성구, 동구 · 대덕구
울산	1	울산
경기도	9	수원 · 오산시 · 화성군, 성남시, 고양 · 파주시, 과천 · 의왕 · 군포시 · 안양시, 부천시 · 김포군, 광명 · 안산 · 시흥시, 구리 · 남양주 · 하남시 · 광주 · 가평 · 양평 · 여주시, 용인 · 이천 · 평택시 · 안성군, 의정부시 · 동두천시 · 양주군 · 포천군 · 연천군
강원도	3	춘천시 · 홍천 · 철원 · 화천 · 양구 · 인제군, 강릉 · 동해 · 삼척 · 속초 · 태백시 · 양양 · 고성군, 원주시 · 횡성 · 영월 · 평창 · 정선군
충청도	5	청주시 · 청원군 영동 · 옥천 · 보은군, 충주 · 제천시 · 단양 · 괴산 · 진천 · 음성군, 천안시 · 아산시 · 연기군, 서산시 · 예산 · 당진 · 태안 · 홍성 · 청양군, 공주 · 논산 · 보령시 · 부여 · 금산 · 서산군
전라도	6	전주시 · 완주 · 무주 · 진안 · 장수군, 익산 · 군산시, 정읍 · 남원, 목표시 · 신안 · 무안 · 강진 · 완도 · 해남 · 진도 · 영암 · 장흥군, 여수 · 여천 · 광양 · 순천시 · 여천 · 고흥군, 나주시 · 화순 · 보성 · 담양 · 구례 · 곡성 · 장성 · 영광 · 함평군
경상도	8	포항시 · 울릉 · 영덕 · 울진군, 구미 · 김천 · 상주시 · 칠곡 · 성주 · 고령 · 군위군, 경주 · 영천 · 경산시 · 청도군, 안동 · 영주 · 문경시 · 예천 · 의성 · 봉화 · 청송 · 영양군, 창원 · 진해시 · 함안 · 의령군, 김해 · 밀양 · 양산시 · 창녕 · 합천 · 거창군, 마산 · 통영 · 거제시 · 고성군, 진주 · 사천시 · 남해 · 하동 · 산청 · 함양군
제주도	1	제주시 · 서귀포시 · 북제주군 · 남제주군
계	77	

자료: 한국케이블TV 중앙방송, http://www.cvision.co.kr/menu_catv/so.html

경제위기를 초래한 아르헨티나의 재정건전화 정책 실패



朴 炯 秀 전문연구위원(XXXXXXXXXXX)

Ⅰ. 아르헨티나의 최근 경제위기

1. 아르헨티나 경제

1994 1995년 멕시코 경제위기 여파(Tequila effect)로 인한 금융공황(financial panic) 상태에서도 채무불이행(default)의 위기만은 넘겼던 아르헨티나 경제가 2001년 12월 23일 대외부채에 대한 지불유예(moratorium) 선언에 이어 금년 1월 3일에는 만기가 돌아온 외채 2,800만달러를 상환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는 등 심각한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아르헨티나는 1930년대 쇠고기 수출 등에 힘입어 1인당 국민소득이 프랑스에 버금가는 경제대국에 올라서기도 하였으나 1940년대 이후 군사통치, 사회적 갈등 등으로 국력을 소진하여 경제적 위상이 계속 추락해 왔었다. 1980년대에는 지속된 재정적자에 따른 對政府 신용공급 확대로 민간부문 여신이 크게 감소하여 경제가 어려워진 가운데 만성적인 인플레이션과 주기적인 초인플레이션에 시달렸으며 재정 및 외환정책의 일관성 결여, 은행에 대한 규제·감독 부실 등으로 민간부문 파산 위험(1980 1982년) 및 정부부채 상환불능(1989 1990년)의 지급불능 위기(solvency crisis)를 겪은 바 있다.

* 이 원고는 필자 개인의 의견으로서 한국조세연구원의 공식견해를 나타내는 것은 아닙니다.

1994 1995년 멕시코 경제위기 여파로 인한 금융공황 상태에서도 채무불이행의 위기만은 넘겼던 아르헨티나 경제가 2001년 12월 23일 대외부채에 대한 지불유예 선언에 이어 금년 1월 3일에는 만기가 돌아온 외채 2,800만달러를 상환하지 못하여 실질적인 채무불이행 상태에 빠지는 등심각한위기상황에직면하게되었다.

지난 1994 1995년에도 멕시코의 평가절하 여파가 금융기관들의 도산 및 채무상태 악화로 이어져 금리가 급상승하고 페소화 표시 예금의 급격한 인출, 자본의 해외도피 및 이에 따른 외환보유액 감소 등 사태가 악화되어 금융위기[1]가 발생하였다. 그러나 IMF, World Bank 등의 금융지원을 통해 통화위원회(currency board)제도[2]를 유지하면서 달러화로의 교환을 무제한 허용함으로써국내외 투자자들의 심리를 안정시키고 환율을 방어하여 금융시스템의 안정을 회복할 수 있었다.

2. 최근 경제위기의 배경

최근 아르헨티나 경제가 또다시 위기상황에 직면하게 된 주된 원인은 <표 1>에 나타난 바와 같이 막대한 규모의 재정적자 및 경상수지 적자(twin deficit) 지속이외채원리금 상환부담과 더불어 아르헨티나의 외채를 급격히 증가시킴으로써 대내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면 언제든지 위기국면에직면할수밖에없을 정도로 아르헨티나경제구조를 취약하게 만든 데 있다.

현재 아르헨티나가 채택하고 있는 통화위원회제도하에서는 정부가 통화증발을 통해 재정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전재정의 유지가 거시경제 안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난 수년간 방만한 재정지출, 세수기반 약화, 비효율적인 조세행정, 공공부채에 대한 이자지급 등으로 막대한재정적자를 기록하였으며 <표 2>에서 보는 바와같이재정적자의 대부분을 외자조달을 통해 보전해 오고 있다.

이와 같은 재정적자와 함께 아르헨티나 경제는 경상수지도 적자를 지속하고 있는데 이것은 경쟁 상대국들은 아시아 금융위기에 자국통화에 대한 평가절하로 대응하여 온 반면 아르헨티나 정부는 달러화에 대한 1:1의 고정환율(페그제)을 고수하여 페소화 가치가 상대적으

1) 동금융위기는일종의유동성위기(liquidity crisis)였다.
2) 1991년4월, 아르헨티나정부는고질적인인플레이션의폐해를근절하기위해화폐발행액을基軸通貨인달러화표시준비자산에엄격히연동시켜달러화로의무제한兌換을보장하는通貨委員會제도를도입하였다.

<표 1> 아르헨티나의 재정수지, 경상수지 및 외채 추이

	1997	1998	1999	2000	2001			
					I	II	III	연간예상
재정수지(GDP대비비중, %)								
연방정부재정수지	-1.6	-1.3	-2.5	-2.4	-1.1	-0.6	..	-2.7
(연방정부기초수지)	(0.4)	(0.9)	(0.4)	(0.9)	(-0.2)	(0.6)		(1.5)
정부전체재정수지	-2.1	-2.1	-4.2	-3.6	..	..	..	-3.7
(정부전체기초수지)	(0.3)	(0.5)	(-0.8)	(0.5)				(1.5)
대외교역(전년동기대비증감률, %)								
경상수지(GDP대비비중, %)	-4.1	-4.9	-4.3	-3.1				-1.7
수출액(f.o.b)	11.0	0.0	-11.8	13.2	3.8	2.5	4.9	3.7
수입액(c.i.f)	28.1	3.1	-18.7	-1.2	-2.9	-8.3	-24.0	-3.9
교역조건(악화-)	-1.2	-5.5	-5.9	10.2	-3.0	3.8	..	-0.6
실질실효환율(기말, 절하-)	5.0	0.3	12.6	1.7	4.4	..	..	..
외채규모(기말, 억달러)								
총외채	1,251	1,406	1,452	1,462	..	..	..	1,503
(GDP 대비비중, %)	(42.7)	(47.0)	(51.6)	(51.3)				(53.9)
· 공공부문	748	824	847	846	..	..	..	896
· 민간부문	503	581	605	616	..	..	..	607
외환보유액(기말, 억달러)								
외환보유액	243	265	273	269	..	..	..	187

주: 2001년외환보유액은 2001년 11월말기준임.
자료: IMF, 아르헨티나 경제부(Ministry of Economy) 및 J.P. Morgan,“ Emerging Markets: Economic Indicators(2001년 12월호) 및 “ Emerging Markets Outlook(2001년 12월호).

<표 2> 아르헨티나 공공부문의 부채(2001년 6월말 기준)

(단위: 백만달러, %)

		금액	GDP대비 비중
중장기채무	국채	94,642	33.3
	(외화표시)	(92,356)	(32.5)
	차관	33,741	11.9
	소 계	128,383	45.1
단기채무(재무성채권)		3,759	1.3
공공부문의총부채		132,143	46.4

자료: 아르헨티나경제부(Ministry of Economy)

통화위원회제도하에서는 정부가 통화증발을 통해 재정재원을 조달하는 것이 근본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건전재정의 유지가 거시경제 안정에 매우 중요한 요소임에도 불구하고 아르헨티나 정부는 지난 수년간막대한 재정적자를 기록하였으며 재정적자의대부분을 외자조달을 통해 보전해오고있다.

로 고평가됨으로써 수출품의 가격경쟁력이 약화되어 왔기 때문이다. 뿐만 아니라 아르헨티나 수출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곡물의 가격이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수출비중이 30%나 되는 브라질 경제가 침체하는 등 대외여건이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경제개혁의추진이지연되는등 이에 적극 대처하지 못한 데서 그원인을찾을 수 있다.

3. 경제위기의 심화

이처럼 취약한 경제구조를 가지고 있던 아르헨티나 정부는 마침내 IMF, World Bank 등에 금융지원을요청하게 되었고 1999년 이후IMF 구제금융지원시의 요구[3]에 의해수 차례에 걸친 재정긴축정책이 단행되자 아르헨티나 경제는지속적인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된다. 경제성장률이 1999년 -3.4%, 2000년 -0.8%를 기록한 데 이어 2001년에도 -3.0%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추정[4]되고 있으며 20%에 육박하는 높은 실업률, 임금 삭감, 연금 축소 등으로 인해절대빈곤층이증가하고 중산층마저 붕괴되고있다.

특히 2001년 들어서는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 둔화, 고유가, 신흥개도국에대한 차입금리 인상 등 대외경제 여건이 악화된 데다가 국내경기침체로 과감한 재정지출 축소가 어려워지고 조세수입이 예상보다 크게 감소하여 IMF와 합의한 재정목표 달성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이에 아르헨티나정부는 IMF와 협의하여 5월과 8월, 두차례에 걸쳐 재정목표를 완화하기도 하였으나 2001년 12월초 IMF가 2001년도 재정목표인 연방정부 재정적자 하한선인 65억달러의 달성이 불투명하다는 것을 이유로 12월중 인출예정이었던 12.6억달러의 자금지원을유보하자 곤경에 처하게 되었다.

더군다나 지난해 11월 아르헨티나 정부의 대외채무 구조조정 발표로 대외신인도가 크게

3) IMF는 2000년3월Stand-By Arrangement(SBA)를통해3년간, 72억달러규모에달하는구제금융을승인하면서재정건전화를금융지원조건의최우선순위에두었으며 2000년9월에는아르헨티나정부와 2000년중연방정부누적재정수지를 65억페소이내로감축하기로하는등의재정목표에합의하였다.

4) 아르헨티나경제는 2001년1 · 4분기-2.0%, 2 · 4분기-0.2%, 3 · 4분기-4.9%의성장률을기록하였다.

하락[5]한 이후 국내에서도 페소화 평가절하에 대한 소문 및 국가부도에 대한 우려가 은행예금 인출[6]로 이어지고 정부의 예금인출 제한조치를 계기로 그간 국민들의 정부 경제정책에 대한 저항이 전국적인 파업으로 확대되면서 아르헨티나 경제사태는 최악의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비록 금년 1월 6일아르헨티나 상 · 하원이 Eduardo Duhalde 임시대통령[7]에게 페소화 평가절하(1:1→1:1.4), 은행시스템개혁, 가격 통제, 국내산업 및 고용시장 보호 등을 위한 특별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을 압도적으로 승인함으로써 경제정책상의 변화가 있을 것으로 예고되고 있기는 하지만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근본적인 재정개혁, IMF의 금융지원 재개, 해외채권자들과의 외채협상, 고정환율제 포기에 따른 인플레이션 수습, 은행 부실화 방지 등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아직도 해결하기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 있다.

아르헨티나 경제사태의 최근 추이

2001.	9. 7	IMF, SBA에의한신용공여한도를 205.7억달러로증액 * IMF는 2000년3월 10일아르헨티나의 3년간(2000 2002) 경제개혁프로그램에 대한 72억달러 규모의 대기성 차관 협약(Stand-By Arrangement)을승인하였으며 2001년1월 12일에는신용공여한도를 140억달러로증액한바있음.
	10. 12	Moody's 사, 아르헨티나국가신용등급을 Caa3으로하향조정
	10. 30	S&P사, 아르헨티나국가신용등급을 CC로하향조정
	11. 1	아르헨티나 정부, 950억 달러에 달하는 대외채무 구조조정 등을 포함한 경제회생방안발표
	11. 6	S&P사, 아르헨티나국가신용등급을디폴트상태인SD(Selected Default)로하향조정
	12. 1	아르헨티나정부, 예금인출에따른 금융기관도산을막기위해 개인의예금인출및 해외송금을주당 250달러및1천달러로제한

5) 국제신용평가기관들은아르헨티나의국가신용등급을다음과같이하향조정하였다.
· S&P사: 2001년 10월 30일 CC등급→ 11월6일SD(Selected Default)등급
· Moody's사: 2001년 10월 12일 Caa3등급→ 11월 20일 Ca등급
6) 예금인출규모는 2001년 11월중 30억달러, 12월1 18일중 127억달러에달하였다.
7) Duhalde 임시대통령이금년1월2일취임하기이전2주동안아르헨티나의대통령은4번이나바뀌었다.

Duhalde 임시대통령에게 특별권한을 부여하는 법안이 승인됨으로써 경제정책상의 변화가 예고되고 있기는하지만 재정적자 축소를 위한 근본적인 재정개혁, IMF의 금융지원 재개, 해외채권자들과의 외채협상, 고정환율제 포기에 따른 인플레이션 수습, 은행 부실화 방지 등 어려운 문제들이 산적해있다.

12. 5 IMF, 아르헨티나에대한금융지원(12월예정분 13억달러) 유보
12. 13 전국적인대규모총파업반발로정치 · 사회적불안정확산
12. 19 아르헨티나 정부, 폭동사태 확산으로 30일간 비상사태 선포 Domingo Cavallo 경제부장관사임
12. 20 Fernando del la Rua 대통령전격사임
Moody's사, 아르헨티나국가신용등급을디폴트전단계인Ca로하향조정
12. 23 Adolfo Rodriguez Saa 임시대통령, 대외부채에대한지불유예(moratorium), 달러화에대한페그제고수, 제3의통화구상등경제개혁발표
12. 27 쾰러IMF 총재, 경제위기해결을위해아르헨티나정부와협력할용의가있음을천명
12. 30 반정부시위및지방정부의불신등으로Saa 임시대통령취임1주일만에사임
상원임시의장도사임하여아르헨티나정국이극도의혼란에빠짐

2002. 1. 2 Eduardo Duhalde 임시대통령취임
1. 3 만기가돌아온외채2,800만달러를갚지못해실질적인채무불이행발생
1. 6 아르헨티나 상 · 하원, 페소화 평가절하(1:1→1:1.4), 경제재건 등을 위해 대통령

II. 재정건전화 정책의 실패와 그 원인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금번 아르헨티나 경제위기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재정구조의 근본적인 개혁보다는 임시방편적인 긴축조치에 의존하는 등 인기영합주의(Populism)에 입각한 정책을 반복하다가 아르헨티나 경제안정에 필수적인 재정건전화에 대한 가시적인 성과를 보이지 못하자 대내외적으로 공공부채의 유지가능성(sustainability) 및정책당국의 재정적

자 축소 능력에 대한 회의가 강력히 제기되면서 발생하게 되었다. 이하에서는 아르헨티나 정부가 부실화된 재정을 시정해 보려는 정책을 지속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재정건전화 달성에 실패해 온 과정과 그 이유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1. 아르헨티나의 재정

우선 아르헨티나의 재정상태를 살펴보면<표 3>에서 보듯이 1990년대 초반의 재정수지 흑자 기조가 1994 1995년 금융위기를 전후하여 적자기조로 반전된 이후 최근까지 지속적으로재정적자를 보이고 있다.

1990년대 초반에는 Menem 전 대통령(1989년에 취임)이 무역자유화, 국영기업 민영화, 성장촉진을 위한 관료주의적 절차의 간소화를 대폭 추진하는 한편 Cavallo 전 경제부 장관이 통화위원회제도를 도입(1991년)하여 투자자들의 신뢰 회복과 물가안정을 이루면서 경제

<표 3> 아르헨티나 연방정부의 재정 추이

(단위: 백만페소, %)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I III
연방정부총세입	7208.3	20233.5	27871.3	35755.8	38318.1	36211.7	35514.9	39842.8	41188.6	39866.7	31634.6
(증감률)		(180.7)	(37.7)	(28.3)	(7.2)	(-5.5)	(-1.9)	(12.2)	(3.4)	(-3.2)	
조세수입	6455.9	18029.4	25743.1	32277.4	35005.6	33380.3	32869.1	36350.4	37632.3	35351.0	28199.9
· 소득세	171.2	451.9	840.9	2899.2	4065.6	3730.6	4689.8	5426.9	6519.7	6077.7	5227.3
· 사회보장기여금	3121.1	8969.6	13169.4	13321.2	14084.9	12597.5	10629.6	10900.7	10635.7	9615.1	7326.0
· 부가가치세	689.5	2494.1	5497.1	8573.6	8846.4	9145.8	10589.4	10992.0	11346.0	10241.6	7862.6
· 소비세	673.3	2345.2	2185.1	3417.7	3822.8	3923.5	3141.8	5003.6	5673.5	5064.1	3728.2
· 수입관세	165.9	599.2	1449.3	1610.7	1687.6	1596.1	1928.2	2630.3	2597.1	2227.1	1462.4
비조세수입	703.4	2162.6	2089.5	3433.8	3258.7	2807.3	2612.9	3457.7	3472.8	4515.7	3434.7
· 자본수입	49	41.5	38.7	44.6	53.8	24.1	32.9	34.7	83.5	..	..
연방정부총세출	7453.6	20196.2	26564.8	34148.9	38734.4	39187.4	41534.7	44124.5	45642.0	48509.0	35619.1
(증감률)		(171.0)	(31.5)	(28.5)	(13.4)	(1.2)	(6.0)	(6.2)	(3.4)	(6.3)	
일반공공행정	541.7	1600.3	2108.1	2901.4	3677.2	3765.5	4191.3	4357.6	4664.1	5279.7	2913.9
국방	497.5	1449.8	1796.1	2003.1	2007.5	2084.5	2012.1	2025.7	2022.8	2030.8	1395.6
공공질서및안전	381.4	1250.0	1597.7	1643.4	1430.3	1464.0	1416.5	1448.9	1388.5	1466.3	1055.2
경제사업	923.5	2315.3	3222.0	4064.6	3583.2	2835.1	2629.8	2974.4	3104.0	2293.7	1487.3
사회보장및복지	4226.1	11590.2	15657.3	20498.7	24179.5	25187.8	25799.7	27002.7	26878.3	28946.1	21356.2
연방정부재정수지	-245.3	37.3	1306.5	1606.9	-416.3	-2975.7	-6019.8	-4281.7	-4453.4	-8642.3	-3984.5

주: 사회보장및복지관련지출에는교육, 보건관련지출이포함됨.
자료: 1991 1998년은IMF, *Government Finance Statistics Yearbook,* 2000
1999 2000년은아르헨티나경제부(Ministry of Economy)

금번 아르헨티나 경제위기는 정부가 인기영합주의에 입각한 정책을 반복하다가 아르헨티나 경제 안정에 필수적인 재정건전화에 대한가시적인성과를 보이지 못하자 대내외적으로공공부채의 유지가능성및정책당국의재정적자축소능력에대한회의가강력히제기되면서발생하게되었다.

가 급성장[8]한 데 힘입어 재정수지가 흑자기조를보였었다.

그러나 1994 1995년 금융위기에 따른 경기후퇴로 조세수입에 차질이 발생하고 위기극복을 위한 각종 기금의 설립[9] 등으로 정부의 대내외 채무가 급증하면서 재정수지가 적자로 반전되었다. 이후 아르헨티나의 재정은 비효율적인 조세행정, 세수기반 약화, 방만하고 비효과적인 재정지출, 막대한공공부문의 부채에 대한 이자지급, 사회보장제도 실시에 따른 재정부담 등으로 적자를 지속하였으며 특히 1999년 이후에는 지속된 경기침체로 조세수입이 당초 예상에 미치지 못하자 대규모의 재정적자를보이고있다.

2. 재정건전화 정책 추진과 실패

1999년 이후 아르헨티나 정부는 IMF의 구제금융시 요구에 따라 합의하여 정한 <표 4>와 같은 재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단계적인 재정적자 축소(1999년 : GDP의 4% → 2000년 : 3% → 2003년 : 0%)를 위한 재정, 공공부문, 금융 · 노동시장 등에 걸친 광범위한 개혁정책을추진하게된다.

특히재정부문에서는 연방정부차원에서 fiscal responsibility law를개정[10]하여중기 재정건전화 계획을 강화하는 한편 연방정부 및 재정이 적자를보이고 있는 주정부에 대해 비이자 재정지출 규모를 2000년 수준으로 동결하고 조세행정 및 사회보장제도의 개혁을 강화하여 세수증대를 도모하기 위한 federal fiscal pact를실행하였으며 주정부에 대해서도 자체적인 fiscal responsibility law를 입법하게 하고 federal commitment를 통해 지방양여금(revenue sharing system)을줄이기로 합의하였다.

8) 아르헨티나의 1991 1994년평균경제성장률은 7.7%에달하였다.
9) 民間銀行구조조정용기금(25억달러규모), 州銀行민영화지원용기금(19.5억달러규모) 등에 27억달러의재정자금을투입하였다.
10) 동법은중기재정건전화를위해 1999년제정되었다.

<표 4> IMF와 합의(2000년 9월)한 재정목표

(단위: 백만페소)

	2001				2002말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연방정부누적재정수지하한	-2,100	-3,800	-5,100	-6,500	-5,000*
연방정부누적비이자지출상한	13,313	26,173	39,895	53,212	..
지방정부누적재정수지하한	-600*	-1,400*	-2,000*	-2,760*	-2,000*
연방정부부채증가상한	2,150	3,900	5,250	6,700	5,000*
연방정부단기부채증가상한	1,500	1,500	1,500	1,500	..
통합재정부채증가상한	2,750	5,300	7,250	9,460	7,000*

주: * 는performance criterion이아닌indicative를표시함.

<표 5> 1999 2000년 연방정부 재정수지 추이

(단위: 백만페소)

	1999				2000			
	I	II	III	IV	I	II	III	IV
Ⅰ. 경상수입	13,891.5	13,879.0	14,080.7	12,788.5	13,535.5	14,778.9	13,988.0	12,909.3
Ⅱ. 경상지출	14,490.4	14,088.1	15,093.5	15,338.1	14,919.8	14,511.8	14,959.5	15,110.4
Ⅲ. = Ⅰ-Ⅱ	-598.9	-209.1	-1,012.8	-2,549.6	-1,384.3	267.1	-971.5	-2,201.1
Ⅳ. 자본수입	1,832.0	844.5	62.7	39.5	67.8	129.9	103.8	99.8
Ⅴ. 자본지출	814.4	859.0	686.0	817.3	718.6	695.4	706.0	783.1
Ⅵ. 총수입(= Ⅰ + Ⅳ)	15,723.5	14,723.5	14,143.4	12,828.0	13,603.3	14,908.8	14,091.8	13,009.1
Ⅶ. 총지출(= Ⅱ + Ⅴ)	15,304.8	14,947.1	15,779.5	16,155.4	15,638.4	15,207.2	15,665.5	15,893.5
Ⅷ. 재정수지(=Ⅵ-Ⅶ)	418.7	-223.6	-1,636.1	-3,327.4	-2,035.1	-298.4	-1,573.7	-2,884.4
연간누적재정수지	418.7	195.1	-1,441.0	-4,768.4	-2,035.1	-2,333.5	-3,907.2	-6,791.6

자료: 아르헨티나경제부(Ministry of Economy)

그러나 미국 등 주요 선진국들의 경기 둔화, 고유가, 신흥개도국에 대한 차입금리 인상 등 대외 경제여건이 악화되는 가운데 아르헨티나 경제도 경기침체 국면으로 접어들자 2000년 12월 들어 아르헨티나 정부는 재정긴축 정책에서 후퇴하여 제한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확장 정책을 도모하는 한편 IMF, World Bank 등에 구제금융의 증액을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경기가 계속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과감한 재정지출 축소가 어려워진 반면 조세수입은 지속적으로 줄어들어 IMF와 합의한 재정목표 달성에 차질이 발

2000년 12월 들어 아르헨티나 정부는 재정긴축 정책에서 후퇴하여 제한적인 경기부양을 위한 재정확장 정책을 도모하는 한편 IMF, World Bank 등에 구제금융의 증액을 요청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내경기가 계속 침체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함에 따라 IMF와 합의한 재정목표 달성에 차질이 발생하였다.

생하였다.

특히 의회 재구성 등 정치적 불안과 이익단체들의 정부정책에 대한 저항으로 재정적자 축소 등 지속적인 경제개혁이 힘들어지자 2001년 3월 Jose Luis Machinea 경제부장관이 사임하였다. 이후에도 Ricardo Lopez-Murphy 경제부 장관의 across-the-board budget cut(2001년 3월 중순), Domirgo Cavallo 장관의제한적인 조세양여 및 수입관세 인상(3월말), mega swap(5월말), 추가적인 조세부담 완화 및 환율 고평가에 따른 수출입업자에 대한 보상체계 도입(6월 중순) 및 2001년 하반기재정수지 균형을 천명한 zero-deficit plan(7월 11일) 등 단발적인 재정수지 개선 노력은 계속되었으나 국내외 투자자 및 국민들에 대한 신뢰를 회복시키기에는 역부족이었다.

2001년 5월 들어 IMF와의 합의하에 <표 6>과 같이 재정목표를 완화하였으나 6월 기준으로 연방정부 누적 재정적자가 52억달러에 달하는 등 재정적자가 줄어들지 않자 아르헨티나 정부는 8월 IMF에 SBA 금융지원 한도의 증액을 다시 요청하는 한편 재정목표도 <표 7>과 같이 재수정하게된다.

<표 6> IMF와 합의 수정(2001년 5월)한 재정목표

(단위: 백만페소)

	2001				2002말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연방정부누적재정수지하한		-4,939	-6,249	-6,500	-5,000*
연방정부누적비이자지출상한		26,657	40,184	53,212	..
지방정부누적재정수지하한		-1,450*	-2,080*	-2,760*	-2,000*
연방정부부채증가상한		5,039	6,399	6,700	5,000*
연방정부단기부채증가상한		3,500	3,500	3,500	..
통합재정부채증가상한		6,639	8,524	9,460	7,000*

주: 굵은글씨는수정된부분을나타내며*는performance criterion이아닌indicative를표시함.

<표 7> IMF와 합의 재수정(2001년 8월)한 재정목표

(단위: 백만페소)

	2001				2002말
	3월말	6월말	9월말	12월말	
연방정부누적재정수지하한			-6,601	-6,500	-2,290*
연방정부누적비이자지출상한			39,194*	50,684*	..
지방정부누적재정수지하한			-2,080*	-2,760*	-2,000*
연방정부부채증가상한			6,751	6,700	2,290*
연방정부단기부채증가상한			3,500	3,500	..
통합재정부채증가상한			8,876	9,460	4,290*

주: 굵은글씨는수정된부분을나타내며*는performance criterion이아닌indicative를표시함.

이후에는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대외채무 구조조정 발표(11월), IMF의 구제금융 지원 유보(12월), 예금인출 급증 및 전국적인 파업 등으로 아르헨티나 경제사태가 급격히 악화되자 조세수입이 급락하여 <표 8>에서 보듯이 재정적자 규모가 크게 늘어났다[11].

<표 8> 2001년 연방정부 재정수지 추이

(단위: 백만페소)

	2001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Ⅰ. 경상수입	4,766.6	4,322.4	4,106.8	3,960.5	5,094.6	5,206.7	4,360.5	4,482.2	4,124.2	3,870.1	3,440.0
Ⅱ. 경상지출	5,474.1	4,654.1	5,302.6	4,638.1	5,878.6	5,288.4	5,228.1	4,194.6	3,747.6	4,383.3	4,133.4
Ⅲ. = Ⅰ-Ⅱ	-707.5	-331.7	-1,195.8	-677.6	-784.0	-81.7	-867.6	287.6	376.6	-513.2	-693.4
Ⅳ. 자본수입	10.4	11.6	3.7	14.4	23.3	13.2	65.4	20.5	12.8	4.2	4.4
Ⅴ. 자본지출	287.5	235.2	283.1	214.9	239.8	242.2	198.4	234.3	264.4	187.5	171.3
Ⅵ. 총수입(=Ⅰ+Ⅳ)	4,7770	4,334.0	4,110.5	3,974.9	5,117.9	5,219.9	4,425.9	4,502.7	4,137.0	3,874.3	3,444.4
Ⅶ. 총지출(=Ⅱ+Ⅴ)	5,761.6	4,889.3	5,585.7	4,853.0	6,118.4	5,530.6	5,426.5	4,428.9	4,012.0	4,570.8	4,304.7
Ⅷ. 재정수지(=Ⅵ-Ⅶ)	-984.6	-555.3	-1,475.2	-878.1	-1,000.5	-310.7	-1,000.6	73.8	125.0	-696.5	-860.3
연간누적재정수지	-984.6	-1,539.9	-3,015.1	-3,893.2	-4,893.7	-5,204.4	-6,205.0	-6,131.2	-6,006.2	-6,702.7	-7,563.0
IMF와합의한목표			-2,100.0			-3,800.0			-5,100.0		-6,500.0*
2001. 5월수정된목표						-4,939.0			-6,249.0		-6,500.0*
2001. 8월수정된목표									-6,601.0		-6,500.0*

주: *는 2001년 12월말목표치를표시함
자료: 아르헨티나경제부(Ministry of Economy)

11) 금년 1월 5 6일 아르헨티나 하원의 법안 검토과정에서 2001년도 재정적자 규모가 IMF와 합의한 목표치의 2배에 가까운 110억페소에달하는것으로드러났으며현지언론보도에의하면호르헤카파타니치내각장관이지난해말조세수입이급전직하해 ' 충격적인수준 에달했다고토로했다고한다.

국민들의조세저항 · 납세 거부감 및경기침체로 인한 조세 수입의 감소, 공공부문 지출 규모 축소에대한정치 · 사회권의 반발, 경기부양을위한 제한적인 재정지출확대, 막대한공공부문의 부채에대한이자지출증가등이재정정책실패의원인이다.

3. 재정정책 실패의 원인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그간 아르헨티나 정부의 재정건전화 정책이 실패하여 부실재정이 시정되지 못하였던데에는다음과같은 원인이 있었다.

우선 재정수입 측면에서 아르헨티나 정부가 각종 세율을 인상하고 모든 요구불예금에 대해 금융거래세를 도입[12]하고 부가가치세에 대한 면제혜택 철폐 및 산업 · 농업부문에 대한 각종 세제상 혜택을 축소하는 한편 세금체납 · 회피를 줄이기 위해 징세행정을 강화하고 조세관련 행정소송을 신속히 처리하기위한사법조치, 체납된 세금 및사회보장 기여금에 대한 자진납부 유도 등의 정책을 시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국민들의 조세저항 · 납세에 대한 거부감을 해소시키지 못하였고[13] 수출 부진, 내수 위축 등 경기침체를 방치하여 조세수입이 기하급수적으로줄어들게 되었다.

또한 재정지출 측면에서도 재정지출 삭감 명령, 정부기구의 축소 및 공무원 감원, 공공부문의 효율성 제고, 부패척결,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 재정지출에 대한 관리강화, 사회보장제도 개혁[14], 건강보험제도 개혁[15] 등을 통해 공공부문의 지출 규모를 축소하고자 하였으나 사회보장 및 복지지출 삭감 등에 대해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어온 정치 · 사회권이 거세게 반발한 데다 경기부양을 위한 제한적인 재정지출 확대, 막대한 공공부문의 부채에 대한 이자지출 증가 등으로 지출규모가줄어들지 않았다.

더군다나 의회와 지방정부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야당과 연방정부간의 대립으로 주정부에 대한 지방양여금 13% 감축, 2001년 하반기중 재정수지 균형 유지, 2002년중 재정지출

12) 동조세는 2001년4월부터 2002년말까지한시적으로도입되었다.
13) 더군다나최근경제위기로금리가폭등하자체납세금에대한벌금부과장치마저무력화되었다.
14) 여성에 대한 연금지급 개시연령 상향조정, 자영업자의 사회보장 기여금 현실화, 특정계층을 위한 별도 연금제도에 대한개선, 사적연금에대한관리 · 감독강화등의조치를포함한다.
15) 현행노조별로 운영되고있는의료기관을통폐합하고 사적보험인 HMO와의경쟁촉진, 최근 심각한재정난에 빠져 정부가 긴급조치를취하고있는 PAMI의근본적개혁등의조치를포함한다.

20% 삭감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 재정개혁의 추진이 계속 지연되게 된 것도 재정건전화 정책실패가경제위기를 초래하게 만든 한가지 원인이 되었다.

참고문헌

국제금융센터,「아르헨티나관련사태보고」, 2001. 12. 24.

대외경제정책연구원,「아르헨티나 사태의 배경과 전망」,『KIEP 오늘의 세계경제』 제01-64호, 2001. 12. 21.

박창균,「Emerging Market에서의 외환 · 금융위기: 최근 아르헨티나의 경우를 중심으로」,『재정포럼』2001년 10월호, 한국조세연구원.

삼성경제연구소,「아르헨티나모라토리엄선언의배경및전망」, 2001. 12. 26.

한국은행,「아르헨티나의채무지급중단선언과이에대한금융시장의반응」,『주간해외경제』제2001-51호.

한국은행뉴욕사무소,「아르헨티나의통화위원회제도운용경험및Dollarization 논의」, 1999. 7.

Argentina 정부, 각종재정통계, Ministry of Economy(http://www.mecon.gov.ar/)

Argentina 정부 및 IMF, Letter of Intent 및 Memorandum of Economic Policies(2000. 2월 · 9월 · 12월, 2001. 5월 · 8월)

IMF, 아르헨티나구제금융관련보도자료(2000. 3. 10, 2001. 1. 12, 2001. 9. 7)

진화와 규범

……경험을 통한 학습(learning from experience)은, 동물세계에서와마찬가지로 인간세계에서도 사고(reasoning)의 과정이 아니고, 성공적이었기 때문에 널리 보급된 습관의 관찰 · 보급 · 전달 및 발전의과정이다. 종종실행자개인이알았기때문이아니라, 이습관은그 개인이 속한집단의생존 기회를증대시켰기때문에채택된다.

프리드리히폰하이에크의『법, 입법그리고자유』(*Law, Legislation and Liberty*)에서

* Friedrich A. von Hayek(1899~1992)는오스트리아태생의영국경제학자로서법학, 정치학, 경제학, 심리학, 윤리학에이르는여러분야에서뛰어난업적을남겼다. 그의자유주의철학은오늘날시카고학파(Friedman, Lucas 등으로대표되는) 경제사상의모태(母胎)를이룬다고볼수있다. 학문체계의방대함에있어서현대경제학자중에서그와비견될사람은없을정도이다. 그의방대한 이론체계는사회철학체계라고표현할수있는데이체계를이용하여그가궁극적으로주장하고자하였던것은개인의자유, 시장경제, 사유재산제도와같은자유주의의고전적가치들이었다. 그는20세기의현대사회에서이러한고전적가치가크게손상되고있다고보고이의부활을주장하였다. 1974년에스웨덴의경제학자G. 뮈르달과공동으로노벨경제학상을수상했다.



일본 세제개혁의 최신 동향

鞠 重 鎬 /요코하마시립대학상학부경제학과교수

본고는 일본세제조사회에서 2001년 12월에 작성한『2002년도 세제개정에 관한 답신』을 중심으로 일본의 향후 세제개혁 방향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다. 앞으로『재정포럼』에서는 주요국의 세제 및 재정동향 등을「해외동향」란을 통하여 수시로 게재할 계획이다.<편집자주>

Ⅰ. 일본 세제조사회의 지위와 역할

본고는 2001년 12월 일본 세제조사회가 제출한 답신을 중심으로 하여 앞으로 일본의 세제가 어떠한 방향으로 개편 또는 개혁될 것인가를 살펴보는데 그 목적이 있다.

세제개혁이라함은세제전체를바꾸거나개별세금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는 국회에서 세제개혁안을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세제개혁을 디자인하고 그 구체적인 개혁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정부세제조사회가 담당하고 있다. 미국이나 유럽에서는 어떤 소수의 전문가 그룹인 작업위원회(task force)에게 세제개혁에 관한 기획(plan)을 요청하고, 이 작업위원회는 저명한 연구자를 대표로 하여 몇 년간의 세월을 들여 세제보고서(tax report)의 형식으로 개혁해야 할 권고사항을 정리하여 공표하고 있다. 이 세제보고서는 공청회 등을 통하여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의회의 심의를 거쳐 최종적인 모습을 드러내게 된다. 이에 비해 일본의 경우는 내각총리(수상)의 자문기관인 정부세제조사회에 세제개혁에 관한 자문을 의뢰하고 동 조사회는 이 의뢰에 근거하여 세제개혁에 관한 다양한 논의를 하게 되며, 최종적으로 합의한 내용을정리하여수상에게답신을제출한다.

세제조사회에는 정부세제조사회만이 아닌 자민당 세제조사회도 있으며 정부세제조사회가 제출한 답신의 내용이 제대로 실현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그러나 정부세제조사회는 기본적으로 일본 세제개혁의 기본방향을 담당하는 기관으로, 세제 전문가의 의견을 반영하는 정부세제조사회의 답신은 내용이 충실하다. 세제조사회의 답신은 최종적으로 국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 여부가 결정되게 되는데 石弘光(2001, p.11)은 이와 같은 일본의 세제개혁에 관한 진행방식을 구미의「세제보고서 방식」과 구분하여「심의회 방식」이라 부르고 있다. 일본에

는 상당히 많은 심의회가 존재하고 있지만, 조세정책의 입안이나 세제개혁의 추진에 있어 정부세제조사회의 심의는 반드시 거쳐야 할 과정으로 되어 있으며, 정부세제조사회는 가장 권위가 있는 심의회 중의 하나이다.

일본 정부세제조사회는 30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동 조사회 위원들은 국민 각계 각층의 대표자로 구성되며 임기는 3년이며 원칙적으로 3회를 연임할 수 있다. 2000년 9월 동 조사회 위원의 교체로 새롭게 발족하였으며[1], 학계 8명, 언론계 2명, 경제계 대표 6명, 평론가 · 변호사 · 세무사등 전문가 6명, 지방단체 4명, 기타 노동조합 대표 등 4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 위원에 더하여 각계의 대표로 이루어지는 16명의 특별위원이 임명되어 총 46명이 세제조사회를운영하고있다[2].

일본 정부세제조사회는 단기 및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세제개혁에 대한 제언을 하게 되는데 보통의 경우 임기가 시작할 때 내각총리(수상)에게 자문하는 형식으로 3년간 심의를 하게 된다. 단기적인 관점에서 세제개혁에 관한 심의도 이루어지나 동 조사회가 보다 중시하고 있는 것은 중장기적으로 일본 세제의 청사진을 제시하고 구체적이고도 중요한 세제개혁의 실행계획(plan)을 만드는 것이다. 이 실행계획을 정리한 것이 바로 수상의 자문에 대한 답신이 된다. 예컨대 1990년대에 이루어진 법인세율의 인하, 소득세율의 누진도 완화, 소비세의 도입, 이자 · 양도익에 대한 과세 강화 등 주요 세제개혁은 모두 일본 세제조사회의 심의를 거쳐 실시되고 있는것이다.

> 일본도 우리나라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으로는 국회에서 세제개혁안을 심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으나 실질적으로 세제개혁을 디자인하고 그 구체적인 개혁방향을 제시하는 것은 정부세제조사회가 담당하고있다.

정부세제조사회의 가장 중요한 작업은 3년간의 논의를 집대성하여 임기만료 직전에 제출하는 「중기답신」을 작성하는 것이다. 이 중기답신은 각종의 特別部會나 소위원회에서의 논의 성과를 토대로 일본세제에 관한 문제점을 정리하여 향후 세제개혁방향을 제시하는 일본판 「세제보고서」이다. 재무성(우리나라 재정경제부에 해당)이나 총무성의 국세나 지방세 세제 담당 사무국(관료)에서도 세제개혁 보고서를 작성할 수 있으나, 일본 국민의 대표로서 사회일반의 의견을 수렴하는 세제조사회의 답신이 사회적으로 큰 영향력을 갖고 있다. 한편 자민당 세제조사회는 단기적인 세제개정 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그러나 정부 세제조사회는 세율의 변경 등 주요 세제개혁의 최종단계에서 그 판단을 자민당 세제조사회에 위임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정부세제조사회의 답신이 국회의 심의까지 개입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정부 세제조사

1) 현재일본정부세제조사회회장은이시히로미츠(石弘光) 히토츠바시(一橋)大총장으로필자의지도교수였다.
2) 전체적인토론은동조사회의총회에서이루어지나기술적이고도전문적인주제를다룰때는별도로전문소위원회를설치하여집중적으로검토하고있다. 최근법인세관계의개혁을위해2개의전문위원회를두고있다. 하나는회사분할세제와연결납세의제도화를전문적으로검토하는법인과세소위원회이고, 다른하나는법인사업세의외형표준과세를추진하기위해구체적인검토를담당하는지방법인과세소위원회이다.

회의 한계라 할 수 있다.

가장 최근의 「중기답신」(일본판 세제보고서)은 2000년 7월에 제출된 『일본세제의 현황과 과제 - 21세기를 대비한 국민의 참가와 선택 -』으로 공평 · 중립 · 간소의 원칙에 입각하여 개인소득과세, 법인과세, 소비과세, 자산과세, 국제과세 등 일본 세제 전반에 관한 개혁방향을 자세하게 제시하고 있다. 본고에서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이 중기답신 이후 2001년 12월에 제출한 『2002년도 세제개정에 관한 답신』이다. 이 답신은 일본의 향후 세제개혁 방향 파악과 나아가 일본 세제와 밀접하게 관련이 있는 우리나라의 세제개혁방향을 입안하는 데 많은 참고가 될 것으로 생각된다.

이하 제II절에서는 최근 일본 세제조사회의 활동을 개괄하고, 제III절 이하에서는 각 분야별 세제개편을 개괄한다. 제III절에서는 법인과세, 제IV절에서는 금융 · 증권 관련세제, 제V절에서는 자산관련세제, 제VI절에서는 조세특별조치의 정리, 납세자번호제도 등 기타 주요 항목의 개편방향을 살펴본다. 마지막 제VII절에서는 일본세제 각각의 개편방향이 우리에게 주는 정책시사점에 대하여 간단히언급하기로 한다.

II. 최근 일본 세제조사회의 활동 및 재정상황

일본 세제조사회는 2000년 12월에 2001년도 세제개정에 관한 답신을 정리한 바 있다. 이후 2001년 5월에는 금융소위원회를 설치하여 증권시장의 활성화를 위한 금융세제 방식에 대하여 검토하고 9월에 「증권세제 등에 대한 의견」을 정리하여 총회에 보고하였다.

법인과세소위원회에서는 2000년 기업분할 · 합병 등의 기업조직 재편성에 관한 세제 및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을 위한 심도 있는 검토를 해왔다. 이 소위원회 논의를 기초로 2001년 10월 「연결납세제도의 기본방향」을 정리하여 총회의 심의를 거쳐 공표하였다.

2001년 7월에 설치된 기초문제소위원회에서는 조세특별조치의 개혁 등 당면 과제에 대하여 검토함과 동시에 앞으로 추진해야 할 중장기적인 세제개혁의비전에대하여도검토를진행하고 있다.

위와 같은 소위원회의 논의를 기초로 일본 세제조사회 총회가 2001년 11월 하순부터 2002년 세제개정에 대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 본고의 주된 대상이 되는 2002년 세제개정의 지침이다. 2002년도 세제개정의 지침을 살펴보기에 앞서 최근 몇 년 동안의일본 세제개혁의흐름을살펴보기로 하자[3].

1987년부터 1988년에 걸쳐 일본에서는 고령화사회에 대비하여 소득 · 소비 · 자산간 균형(balance)이 잡힌 조세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샤우프권고 이래 근본적인 세제개혁이 이루어졌다. 구체적으로는 개별간접세를 폐지하고 소비세를 창설하는 한편 개인소득과세의 누진세율구조의 완화 · 간소화가 이루어졌고 이와 동시에 이자과세의 개편에 따른 자산소득과세의 적정화를 달성하였다.

1994년에는 소자녀 · 고령화의 진전에 대응하기 위해 개인소득과세 누진세율구조를 더욱 완화시켜

3) 1990년대일본의세제개편과재정개혁에대한구체적인내용에관해서는국중호(1998)를참조

주로 중견 소득계층의 부담 경감을 도모하였다. 한편 소득과세의 충실을 도모하기 위해 소비세율을 5%(신설된 지방소비세 1% 포함)로 인상 하는 동시에 중소사업자에 대한 특별조치를 근본적으로 개편하였다. 개편시기는 경제상황을 배려하여 소비세율 인상 시기를 1997년 4월로 연기하였다. 1994년부터 1996년에는 개인소득과세의 특별감세를 실시하여 소비세율의 인상에 선행하는 감세가 이루어졌다.

1997년 이후 금융시스템 불안이 실물경제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게 되었고 1998년에는 실질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등 일본경제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일본정부는 경기회복을 도모하는 관점에서 세제면에서도 최대한의 배려를 하는 방향으로 선회하였다. 그 일환으로 1998년에는 1997년에 내세운 재정구조개혁을 기조로 하는 정책을 변경하여 두 번에 걸친 개인소득과세 특별감세를 실시하였고, 법인과세에 대해서도 기업활동과 국제경쟁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과세베이스의적정화와 더불어 세율을 인하하였다.

1999년 세제개정에서는 개인소득과세 및 법인과세에 대하여 6조엔을 훨씬 상회하는 항구적인감세를 실시하였다. 또한 경기회복을 위하여 개인소득과세의 정률감세를 실시하는 한편, 법인과세의 과세베이스는 개정하지 않은 채 세율을 인하하는 조세부담 경감 조치만이 실시되었다.

이상과 같은 세제 변화의 흐름으로 일본의 국민소득 대비 조세부담률은 22.6%(2001년 예상치)로 주요 선진국 가운데 가장 낮은 수준이다. 조세부담률에 사회보장률을 합한 국민부담률을 보아도 다른 외국에 비하여 낮은 수준이다. 개인소득과세의 경우 계속적인 恒久 감세나 누차에 걸친 각종 공제의 확충으로 일본 경제활동인구의 약 4분의 1 정도가 비납세자로 되어 있다.

일본 정부세제조사회는 조세가 수행해야 하는 공적서비스의 재원조달기능이 불충분한 상태라고 보고 공적서비스를 조달하기 위한 재원을 국민 모두가 넓고 공평하게 서로 나누어 부담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일본의 공공서비스 수준은 상승곡선을 그리고 있는 데 비해서 국민부담률은 낮은 수준에 머무르고 있어 세출과 세입의 차이(gap)가 확대되고 있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세제조사회는 조세가 수행해야 하는 공적서비스의 재원조달기능이 불충분한 상태라고 보고 공적서비스를 조달하기 위한 재원을 국민 모두가 넓고 공평하게 서로 나누어 부담해야 할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여기에는 소자녀 · 고령화, 국제화 · 정보화, 라이프스타일의 다양화 등 경제사회의 구조 변화와 조화를 이룰 수 있는 세제 구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강하게 자리잡고 있다. 공정하고 활력 있는 사회를 실현해가기 위한 구조개혁의 일환으로서 공평 · 중립 · 간소라는 기본원칙에 따른 바람직한 세제 구축을 목표로 일본 세제조사회는 앞으로 빠른 속도로 논의를 진행해 나갈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 정부는 1980년대 후반의 거품경제 붕괴 이후 경기회복을 목표로 세출의 증대와 항구적인 감세 등 세제측면에서의 여러 정책을 취해 왔다. 이러한 정책에도 불구하고 일본의 경제 및 재정상황

은 호전되지 않고 세출 · 세입 격차(gap)가 확대되어 중앙 및 지방의 장기채무 잔액은 2001년 말 약 666조엔에 달할 것으로 예상되는 등 위기적인 재정상황에 육박하고 있다. 고이즈미(小泉) 정권은 2001년 6월 경제재정자문회의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향후 경제재정운용 및 경제사회의 구조개혁에 관한 기본방침(이하 「기본방침」)」에 기초하여 일본의 경제성장을 제고하기 위한 구조개혁을 추진해가고 있다. 그 일환으로 2002년도 예산은 재정구조 개혁의 첫걸음으로서 국채 발행액을 약 30조엔 이하로 한다는 목표하에 세출의 삭감과 효율적인 부문에서의 중점적인 배분에 초점을 두고 있다. 나아가 재정 균형(balance)을 실현하기 위한 노력으로서 「구조개혁과 경제재정의 중기전망」을 책정하여 기초수지(primary balance) 흑자달성을 향한 목표를 제시하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만이 아니라 지방정부의 노력도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지방분권추진위원회(2001)는 지방세의 충실 확보를 중심으로 한 최종보고를 제출하고 있다. 일본의 지방재정은 차입금 잔액이 누증되고 개개의 단체에서도 공채비를 비롯한 의무적 경비가 증가하는 등 어려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다. 2001년 6월 제출된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최종보고에서는 지방공공단체가 재정면에서 자기결정권과 자기책임을 보다 명확히 할 것을 기본으로 하여 계속적이고 철저한 행정 · 재정개혁을 염두에 두고 사업 규모의 억제를 위해 노력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4].

지방분권추진위원회는 세입면에서 세원의 편재성이 적으며, 세수의 안정성에 대비한 지방세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현재의 법인이익에 과세하는 법인사업세를 자본금이나 급여총액 등의 외형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외형표준과세를 제안하고 있다. 나아가 중앙과 지방의 역할분담을 고려하여 국고보조부담금의 정리 · 합리화나 지방교부세의 개편과 함께 세원 이양을 포함한 중앙 및 지방정부의 세원배분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2001년 12월에 제출된 일본 세제조사회의 답신을 보면 동 조사회도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이러한 입장을 지지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동 조사회의 답신을 중심으로 각 분야별 2002년도 일본세제개혁의기본방향을살펴보기로한다.

III. 법인과세 개혁 방향

거품경제 이후 일본경제는 국제화와 함께 경기침체를 겪으면서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기업집단의 一體的 경영을 강조하고 있다. 이에 발맞추어 일본 세제조사회는 21세기 경제의 인프라가 되는 연결납세제도의 구축을 본격적으로 검토하기에 이르렀다. 기업분할 · 합병 관련 세제와 함께 연결납세제도를 2002년도에 도입함으로써 기업의 조직 재편성이나 일본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목표로 하고 있다. 연결납세제도의 도입

4) 한편일본에서는지방세의法定外勢에 관하여각지역에서다양한노력이 진행되고있다. 과세자주권을활용하고재원확보를 도모하려고하는것은 지방분권의관점에서 보아바람직하다고 할수 있다. 그러나 東京都의은행세나 호텔세등은 한정된특정인이나 구역외의 사람만을 대상으로하고있다. 일본세제조사회는법정외세도입의 경우지방세법에근거하여공평 · 중립등의세제원칙에따를필요가있으며, 지방공공단체는스스로의책임과부담으로주민에게정면으로마주하여지방공공정책을추진해가는자세가요구된다고하고있다.

목적은 실질적으로 하나의 법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기업집단을 하나의 납세단위로 하여 과세하고자 하는 것이다. 연결납세제도의 대상이 되는 기업집단(group)은 단일법인으로 간주될 수 있는 모회사 및 그 모회사의 자회사이다. 일본의 법인세제는 현재 개개의 법인을 전제로 하여 과세하고 있는데, 이와는 달리 기업집단을 하나의 납세단위로 하는 연결납세제도는 곧 새로운 과세체계를 창설하는 것을 의미한다.

기업집단을 하나의 과세단위로 하게 되면 기업집단 내의 소득(이익)과 결손을 통산하게 되므로 연결납세제도의 도입으로 인한 세수 감소가 발생하게 된다. 일본의 세제조사회가 계산한 결과에 따르면 2000년 법인 기준으로 8,000억엔 정도의 세수 감소가 발생한다고 한다[5]. 세수 감소에 대한 대응책으로서 일본 세제조사회는 조세특별조치의 개편과 더불어 과세베이스의 확대, 그리고 연결납세제도의 적용개시 전에 발생한 결손금액의 이월공제 부인조치등을 염두에 두고 있다.

한편 법인관련 지방세로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법인사업세 및 법인주민세의 경우에는 지방공공서비스로부터의 편익과 부담간의 관계를 강조하여 기업진단을 과세단위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의 법인을 납세단위로 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하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법인과세와 관련하여 일본 세제조사회가 가장 중요하다고 보는 것은 기업간 · 산업간 조세의 중립성 확보 및 경제활성화의 관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과세기반은 확대하고 세율은 인하한다」라는 법

일본 정부는 법인세의 과세베이스 적정화를 법인세제개혁의 주요 과제로 하고 있는데, 특히 연결납세제도라는새로운제도도입에맞추어법인세제전반의 개편을 노리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충당금이나 법인간 배당과세문제의 개편을 통한 과세베이스의확대를염두에두고있다.

인세제 개혁이 1980년대 후반부터 이루어져 왔다. 그후 1998년 세제개혁에서 법인세 과세베이스의 대폭적인 개편과 법인세의 기본세율을 인하하였으나 하시모토(橋本) 정권에서 오부치(小淵) 정권으로 바뀌면서 재정구조개혁에서 경기부양정책으로 정책기조의 변경이 있었다. 그 결과 1999년 세제개정에서는 경기침체 상황을 탈피하려는 정책으로 과세베이스 확대조치는 이루어지지 않은 채 법인세율 인하만이 이루어졌다. 그러다가 2001년 고이즈미(小泉) 정권에서는 다시 「구조개혁 없이 경제성장 없다」라는 슬로건을 내세우며 정책을 추진하고있는 상황이다.

일본 정부는 법인세의 과세베이스 적정화를 법인세제 개혁의 주요 과제로 삼고 있는데, 특히 연결납세제도라는 새로운 제도 도입에 맞추어 법인세제 전반의 개편을 노리고 있다. 보다 구체적으로는 충당금이나 법인간 배당과세문제의 개편을 통한 과세베이스의 확대를 염두에 두고 있다. 일본은 이러한 법인세제의 개혁으로 기업활력 발휘, 신설기업 · 산업의 창출, 그리고 경제 효율성의 향상을 도

5) 소득및결손금에근거하여기계적인계산을했을경우의규모이다.

모하려고 하는 것이다.

지방세에 있어서는 세부담의 공평성 확보, 應益課稅로서의 조세성격 명확화, 지방분권의 진행에 걸맞는 안정적인 基幹稅의 확보, 경제활성화 · 경제구조개혁의 촉진 등을 위해 법인사업세에서 외형표준과세 도입이 논의되고 있다. 2000년 11월에 自治省(현재의 총무성)이 제시한 외형표준과세 도입의 구체안은 법인이익(소득)기준과 외형기준을 함께 사용하는 것이다. 이 도입안에서는 법인이득(소득)에 대한 세율을 현행세율의 2분의 1로 인하하며, 외형기준부분에 대해서는 가산법에 따른 부가가치 금액으로서 「사업규모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이 자치성의 안은 증세를 목적으로 하기보다는 자원배분의 왜곡이 적은 과세표준을 정하고 세율은 낮고 과세베이스는 넓은 과세체계를 의도한 것이다. 일본 세제조사회는 이 자치성 안이 현행 법인소득 과세체계보다 더 바람직한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그후 2001년 11월 여러 방면으로부터 수집된 의견에 기초하여 總務省이 새로운 외형표준과세 방안을 제시하였다. 이 총무성의 안은 외형기준에 있어 부가가치액을 기본으로 하면서 자본금액을 기준으로 과세하는 방식을 보완적으로 병용하는 것이다. 자본금액에 따라 과세하는 방식은 「중기답신」에서 바람직한 외형기준으로 제시한 4가지 유형 중의 하나이다. 일본 세제조사회의 답신에서는 자본금액이 법인의 사업활동 규모를 어느 정도 제시하는 동시에 담세능력을 나타낸다고 하는 입장을 나타내었다. 동 조사회는 이 개선안이 납세자의 담세능력을 배려하고 과세구조의 간소화를 가져와 「세율은 낮고 과세베이스는 넓은」 공평 과세를 견지할 것으로 평가하고 있다. 답신에서는 외형표준과세의 도입시기를 명시하고 있지는 않으나, 과세불공평의 시정, 세수 안정화, 노력한 기업이 보상받는 세제의 확립, 그리고 참다운 지방분권의 실현에 기여하기 위해서는 외형표준과세를 조기에 도입할 필요가 있다고 역설한다.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최종보고서에서도 외형표준과세의 도입을 명기하고있다.

법인과세와 관련하여 세제조사회의 답신에서는 동족회사의 유보금 과세제도와 교제비 과세제도에 관하여도 언급하고 있다. 우선 동족회사의 유보금 과세제도에 관한 입장을 보면 동족회사에 대하여 일반 법인세 이외에 일정액을 초과하는 내부유보를 대상으로 추가적으로 과세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는 간접적으로 배당지출을 유인하는 기능을 담당하고 있는 동시에 법인형태와 개인형태간의 세부담 차이를 조정하고자 하는 목적도 갖고 있다. 이러한 입장에서 동 조사회는 동족회사의 유보금 과세제도는 현행 일본의 법인세와 개인소득세의 기본적 구조를 전제로 하는 이상 앞으로도 필요하다고 하고있다.

다음으로 교제비 과세에 대한 입장을 살펴보자: 동 조사회는 교제비를 세제상 경비로서 용인하는 경우 불요불급한 지출을 조장하고, 교제비 지출이 공정 · 투명한 거래를 저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세제가 이와 같은 문제를 조장하는 것은 경제구조개혁의 관점에서도 문제가 많으므로 교제비 과세제도를 완화할 필요가 없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한편 일본의 경우 사립대학 등은 법인세법상 학교법인 형태의 공익법인으로 취급되고 있으며, 공

익법인 가운데에서도 특별한 우대조치를 받고 있다. 사립대학의 경우 수익사업부문에서 비수익사업부문으로의 지출(소위 「간주기부금제도」)이 기부금으로 간주되고 있다. 이 간주기부금을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액으로 파악하게 되면 다른 공익법인에 비하여 사립대학이 우대받는 것이다. 동 조사회는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사립대학에 대한 세제상의 조치를 취할 것을 제언하고 있다.

IV. 금융 · 증권관련 세제

금융 · 증권관련세제와 관련하여 일본 세제조사회의 2002년도 세제개정에 관한 답신에서는 주식양도익과세, 저축우대세제, 주식투자신탁과세 및 배당과세에 대한 세제개편방향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이하에서는 이들 세제에 관한 각각의 세제개편방향에관해 언급하기로한다.

우선 주식양도익과세에 대한 개편방향을 보면 금융소위원회가 2001년 9월에 종합정리한 「증권세제에 대한 의견」에서 원천분리과세제도의 폐지와 신고분리과세제도로의 일원화, 그리고 세율인하 및 손실이월제도 창설이라는 개편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일본의 주식양도익과세를 보면 원천분리과세제도와 신고분리과세제도를 선택할 수 있는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이러한 과세방법에 대해 일본 세제조사회는 지금까지 여러 차례에 걸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지적하여왔다.

① 다른 국가들에게는 예가 없는 「간주이익」에 대해서 과세하는 것이며 소득과세로 적합하지 않은점
② 의도적으로 세부담을 조정할 수 있다는 점

지방세에 있어서는세부담의공평성 확보, 응익과세로서의 조세성격 명확화, 지방분권의진행에걸맞는 안정적인 기간세의 확보, 경제활성화 · 경제구조개혁의 촉진 등을 위해법인사업세에서의외형표준과세도입이 논의되고있다.

③과세에있어 익명성이있는 점
④개인주민세가 비과세되기 때문에 그 적정화가 필요한 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여 증권의 단기매매보다는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자산운용을 도모하도록 하여 건전한 증권시장의 형성에 일조하기 위한 증권세제의 정비를 서두르고 있는 것이다. 「증권세제에 대한 의견」이 제출된 후 국회에서의 심의를 거쳐 가결 · 성립한 주식양도익과세에 관한 개정법안은 기본적으로 이 의견을 받아들였다고 일본 세제조사회는 평가하고 있다. 또한 신고납세제도하에서는 신고가 投資家 본인의 자기책임하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과 증권회사의 영업자세 개선이나 시장감시 · 감독의 강화 등 인프라 정비의 중요성도지적하고 있다.

다음으로 저축우대세제의 개편방향을 보면 「성역을 두지 않는 조세특별조치의 개혁」이나 「저축우대에서 투자우대로의 금융정책 교체」(기본방침)이라는 관점에서 근본적인 개편을 도모하고 있다. 일본의 가계는 증권투자보다 예 · 저금 중심의 저축을 중시하는 경향이 있다. 저축을 중시하는 경향의 요인으로 일본국민이 예비적 동기에 따른 저축성향이 높기는 하나 그 외에도 저축을 우대하

여 온 각종 제도가 있었기 때문으로 지적되고 있다. 일본의 고령자세대(세대주가 65세 이상인 세대)의 소득분포는 고소득자층과 저소득자층으로 양극화되어 있다. 고령자세대의 평균 저축잔고는 노동자세대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이며 이자소득이 고령자세대의 소득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대체로 1% 전후이다. 이러한 상황을 인식하여 일본 세제조사회는 생활자금 준비 차원을 강조하여 일률적으로 고령자세대를 우대하는 소액저축비과세제도가 더 이상 현재의 고령자세대의 실태와 부합하지 않는다고 지적한다. 요컨대 고령자 상호간 · 세대간의 세부담의 공평성 확보 및 과세베이스의 확대를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소액저축비과세제도는 기본적으로 폐지되어야 한다고 하는 것이 일본 세제조사회의 기본 방향이다.

동 조사회는 이와 같은 고령자 우대 소액저축비과세제도뿐만 아니라 생명보험료공제제도 · 손해보험료공제제도도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이들 공제제도는 제도 창설 후 장기간이 경과하였고 이미 이들 보험가입률이 상당 수준에 도달해 대부분의 납세자에게 이들 공제제도가 적용되고 있다. 따라서 이들 공제제도가 보험 가입에 미치는 유인효과는 기대하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보험을 저축수단으로서 파악하는 경우 다양한 저축수단 중 보험에 한해서 세제상 우대하는 공제제도는 금융상품간의 세부담 공평성 및 중립성 등에 비추어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세제조사회는 이들 공제제도를 폐지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이다[6].

셋째로, 주식투자신탁에 대한 세제의 개편방향을 보면 주식투자신탁이 「저축유사상품」으로서 널리 보급되어온 경위를 감안할 때 종전대로 이자에 대한 과세와 마찬가지 방식을 채용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관점을 제시하고 있다. 주식투자신탁은 자산운용을 직업으로 하는 전문가가 금융서비스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그 운용상황을 보면 펀드 내에서 분산투자된다고 하는 점에서 일반 개인투자가에게는 주식에 직접투자하는 것보다 익숙해지기 쉬운 측면을 갖고 있다. 금융소위원회는 주식투자신탁(공모형)에 대한 과세방식에 대해 광범위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 과세방식으로서 한때 수익분배금의 성격을 배당소득으로 포착하는 한 수익에는 배당과세를 부과하고, 주식 양도시에는 양도익과세를 부과하는 것과 마찬가지 방식으로 변경해가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그러나 주식투자신탁에 대한 과세방식으로서 수익분배시의 과세는 이자와 마찬가지 방식을 취하고, 양도시에는 주식과 마찬가지로 양도익과세를 부과하는 방식은 정합적이지 않으므로 채용할 필요는 없다고 하는 것이 일본 세제조사회의 입장이다. 나아가 증권투자신탁에 관한 세제를 검토하는 경우 금융세제만이 아니라 소득세제 전체의 과세방식과도 관련하여 다방면에 걸쳐 향후 더욱 심도 있는 검토를 진행하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마지막으로 배당과세의 개편방향과 관련해서는 우선적으로 주주 중시의 경영자세를 확립하는 등 주식보유의 매력을 높여가는 발행회사의 노력이

6) 세제조사회는소액저축비과세제도및생명보험료공제제도, 손해보험료공제제도에대해오래전부터폐지 · 축소의방향으로 개편해야한다고 주장하여왔으나제도창설이후실제로이러한수정은이루어지지않고있다.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 배당과세의 경우 증권시장의 저변을 확대하고 널리 일반 국민의 시장 참가를 촉진하는 관점에서 검토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다. 그러나 소액배당 특례나 배당공제 가운데 유리한 쪽의 선택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대부분의 개인주주가 이자와 같은 수준 또는 이자 이하의 세부담 수준으로 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고 있다. 또한 소득세에서 확정신고불요제도가 채택되고 있는 일정 소액배당의 경우 현재 개인주민세가 비과세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적정화를 도모해가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Ⅴ. 자산과세의 개편방향

일본 세제조사회는 상속세에 대해 개인소득과세의 근본적인 개편과 연관지어 세율구조나 과세베이스등에대해서폭넓게검토를하고있다. 최근계속적으로 확충되어온 기초공제나 각종 특례조치를 개편함과 더불어 공적인 사회보장제도가 충실하게 마련되어왔다는점을감안하여사망보험금, 사망퇴직금의비과세제도에대해서도개편을계획하고있다.

일본 세제조사회는 상속세의 경우 모든 재산을 평등하게 취급하는 것이 과세 공평상 강하게 요구되고 있는 점, 과세시기가 사망(상속개시)이라고 하는 우발적인 사건에 의해 결정되는 점, 과세되는 기회가 일생 동안 극히 한정되어 있다는 점에서 볼 때 상속세를 그때그때의 정책수단으로서 이용하기에는 적절치 않아 그 정책적인 활용에는 문제가 많다고지적한다.

> 저축우대세제의개편방향을보면「성역을두지않는 조세특별조치의 개혁」이나「저축우대에서 투자우대로의금융정책교체」라는관점에서근본적인개편을 도모하고있다.

상속세와 관련한 중소기업 사업승계문제에 관하여 세제조사회는 이를 상속세의 세율구조와 과세베이스 등의 폭넓은 개편과 관련하여 검토해야 하는 문제로서 다루고 있다. 동 조사회는 기존의 중소기업 사업승계 우대조치가 사업의 원활한 승계를 통하여 중소기업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점을 인정하면서도 다음과 같은문제점이있다고지적한다.

①스스로 창업을 하는 자와 사업을 승계하는 자와의 기회균등

②다음세대의경영능력여하에관계없이사업자산이이전되어자원배분의효율성을저해하는점

③사업용 자산이 없는 급여소득자의 상속세부담과의 균형(balance) 문제

이러한 문제점을 개선하고 공평성이나 구조개혁의 관점 즉「모든 재산을 공평하게 과세한다」는 기본원칙에 따라 중소기업 사업승계 우대조치를 개편해가려는것이일본 세제조사회의 입장이다[7].

증여세를 보면 1975년 이래 그대로 유지되어 온

7) 한편으로농지의납세유예제도와마찬가지조치를사업승계일반에도확대해야한다는의견이있으나이점에관하여세제조사회는다음과같은문제점을지적하고있다.
①납세유예제도는농지에관련한재산권이 법률상엄격하게규제되고있는점을 감안한이례의조치로그방식에 대하여검토가필요하다는점, ②사업의승계 · 계속을객관적으로파악하는 것은곤란하다는점, 세제로써이를구축하기 어렵다는점, ③사업의승계를요건으로하면 자유로운사업전환이방해되어산업구조개혁을저해할염려가있는점

기초공제수준(60만엔)을 증여세의 기능이나 소득세의 과세최저한 수준과의 균형을 배려하여 당면 조치로서 2001년도 세제개정에서 대폭 인상하고 있다(110만엔). 그러나 일본 세제조사회는 고령자가 보유하는 개인금융자산을 장년 · 중년세대에 빠른 시기에 이전시켜 소비 확대를 도모한다는 관점에서 증여세를 경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 입장을 취하고 있다. 왜냐하면 현행 제도하에서 이미 상당한 금액을 매년 비과세로 증여하는 것이 가능하게 되어 있기 때문이다. 세제조사회는 증여세가 상속세의 과세회피를 방지하는 기본적인 기능을 담당하고 있으며 상속세 과세대상자가 극히 일부의 자산가에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증여세의 경감이 세대간 재산이전을 촉진하는 효과도 매우 한정적이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이처럼 증여세를 상속세 개편의 일환으로 폭넓게 검토하고 있음을 엿볼 수 있다.

일본은 시정촌세로서 고정자산세가 기간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지방재정백서』에 의하면 고정자산세가 1999년 시정촌세 수입의 46%를 차지하고 있다). 고정자산세는 토지, 가옥, 상각자산에 과세하는 종합자산보유과세의 성격을 띠고 있다. 세제조사회는 고정자산세 평가에 대해 계속하여 지가공시가격의 70%를 기준으로 한 전국적인 평가의 균형을 도모하는 것이 적당하다고 하고 있다. 2003년 이후의 세부담에 대하여는 평가 변경의 동향, 부담수준의 상황이나 시정촌 재정의 상황 등을 감안하여 부담의 균형화 · 적정화를 더욱 촉진하는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8].

토지보유 · 유통에 관련된 세목 등에 대하여는 양도익과세의 적정화를 염두에 두고 개편을 추진해 가고 있다. 특히 토지기본법의 기본이념, 지가추이, 과세베이스가 각종 특례조치에 의해 크게 침식되고 있는 것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고 있다. 공적 서비스의 비용을 넓고 공평하게 나누어 부담하기 위해서는 토지세제만이 아니라 다른 각종 세목을 이용한 응익원리의 실현과도 조합시켜 가는 것이 중요하다고지적한다.

한편 일본 세제조사회는 등록면허세 부담경감에 대해서는반대입장이다. 왜냐하면지가가큰 폭으로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토지수요가 저조한 상황에서 등록면허세 부담을 1% 정도 경감한다고 해도 토지에 대한 수요를 충분히 불러 일으킨다고는 보고있지않기때문이다. 등록면허세는 기본적으로 등기에 의해 발생하는 이익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고액의 토지거래 등 등기 · 등록과 관련한 담세력에 따라 과세하는 것으로 수수료와는 성질이 다르다는 입장이다. 따라서현재의 어려운재정상황하에서 등록면허세가 토지유통을 저해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아이세목을계속해서유지해갈것으로예상된다.

부동산취득세의 경우 주택용지나 상업용지의 취득에는 이미 대폭적인 경감조치가 강구되어 있어 그 이상으로 부담을 경감한다고 하여도 토지수요를 충분히 불러 일으킨다고는 보고 있지 않은 것이 현재 상황이다. 앞으로도 부동산취득세는 도도부현 재정을 지탱하는 주요 세목으로서 그 역할이 강조될 것으로 보인다[9].

8) 또한납세자의이해와신뢰를확보하기위한조치로서고정자산세대장縱覽制度의확충을통한정보공개의필요성을강조하고있다.
9) 한편사업소세는도시재생이나도시환경정비사업의귀중한재원으로앞으로도그기본적인구조를유지해갈필요가있다고한다.

VI. 기타 주요항목의 개편방향

1. 조세특별조치의 정리

경제사회가 급속하게 변화하고 다양화되는 상황에서는 개인이나 기업의 자유스러운 활동을 통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이 가능하게 되는 환경을 정비하는 것이 보다 중요하다. 세제를 정책적으로 지나치게 운용하게 되면 정책세제에 따른 왜곡이 심하게 발생하여 효율적인 자원배분을 저해하게 된다. 조세특별조치는 특정 개인 · 기업의 세부담을 경감함으로써 경제정책, 사회정책 등 특정한 정책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설명할 수 있다. 조세특별조치를 「공평 · 중립 · 간소」라고 하는 조세원칙에 반하는 예외조치로 보고 이를 개편하여 과세베이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일본 세제조사회의입장이다.

일본은 법인의 약 7할이 결손법인이며, 개인소득과세 납세자의 부담 수준이 낮게 조정되어 경제활동인구의 약 4분의 1 정도가 비납세자로 되어 있는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하에서 조세특별조치의 정책효과가 한정적일 수밖에 없고, 조세특별조치의 개편을 통하여 세제가 개인이나 기업의 경제활동에 초과부담을 가져오지 않도록 원점에서부터 재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한다.

조세특별조치는 세입측면에서의 보조금(조세지출)이라고 할 수 있는데 개개의 조치들에 대하여 정책목적 및 효과, 정책수단으로서의 적정성 및 이용실태라는 관점에서 명확한 기준을 세워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 기준으로서 일본세제조사회는 다음과 같이 언급하고 있다.

세제조사회는 증여세가 상속세의 과세회피를 방지하는기본적인 기능을담당하고있으며상속세과세대상자가극히 일부의자산가에한정되어있기때문에 증여세의 경감이 세대간 재산이전을 촉진하는 효과도 매우한정적이라고보고있다.

①정책목적 및 효과: 조세특별조치 등은 어디까지나 정책수단이므로 그 정책목적이나 효과를 항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
②정책수단으로서의 적정성: 다른 정책수단과 비교함으로써 동 조세특별조치가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정책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
③이용실태: 일정기간 동안 이용실태가 저조한 조치, 즉 형태만 남아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폐지해야 한다.

지금까지 일본에서는 많은 정책세제를 이용하여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을 지원하고자 하는 관점에서 각종 특례조치가 적용되어 왔다. 이들 지원에 관해서도 위와 같은 관점에서 기존의 조치를 철저하게 재검토한 후에 유효하다고 판단되는 조치에 국한하여 존속시키려는태도를취하고있다.

2. 주세

주세의 개편 방향과 관련하여 가장 큰 논점으로 되어 있는 것이 發泡酒와 그 유사 주류와의 세부담 균형 문제이다. 세제조사회는 각종 주류의 생산 소비 행태의 변화에 따라 적절한 부담균형을 위한 세

제 개편을 염두에 두고 있다. 요컨대 현행 주세제도가 최근의 발포주나 과실주 등의 양조주를 중심으로 한 생산 · 소비 동향 변화에 적합하게 되어 있지 않다고 보고 있는 것이다. 일본 세제조사회는 이전부터 「같은 종류 · 같은 등급에는 같은 부담」이라는 소비과세의 기본원칙을 감안하여 세제의 중립성이나 공평성 확보의 관점에서 주세의 과세방식에 대해검토할필요가있다고지적하여 왔다.

발포주 과세방식에 대해 경제상황이나 상품개발을 위해 쏟은 노력도 배려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다. 그러나 맥주와 발포주 간에 현재와 같은 세부담 격차를 설정할 정도의 차이는 없어지고 있기 때문에 세제의 중립성 · 공평성을 확보하기 위해 맥주와의 부담 균형을 도모해갈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세제조사회의 입장이다.

3. 납세자번호제도

일본에는 아직 납세자번호제도가 도입되어 있지 않다. 세제조사회는 이 납세자번호제도가 적정 · 공평한 과세의 실현, 세무행정의 효율화 · 고도화, 나아가 납세자의 세제에 관한 신뢰 향상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보고 있다. 현재 금융 · 증권관계세제를 구축하는 데 있어 납세자번호제도가 채택되고 있지 않는 것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것은 분명하다. 앞으로 거래의 국제화 · 전자화의 진전에 대응하기 위해 납세자번호제도의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

현재로서는 납세자번호제도에 대해 의의나 번호부여방식 도입에 따른 비용과 편익효과, 사생활보호문제 등의 다양한 논점이 혼재하고 있다. 납세자번호제도 도입에 대하여 일본 국민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를 염두에 두고 자료정보제도 등 납세를 지탱하는 다른 제도나 금융 · 증권관련세제를 감안하여도입을향한적극적인논의가진행중이다.

납세자번호제도와 깊은 관계가 있는 것이 전자신고이다. 정보화 · 디지털화의 진전이나 보급을 배경으로 전자일본(e-japan) 중점계획에 기초하여 행정 전반에서 신청 · 신고 수속의 전자화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세무행정분야의 신고, 신청, 납부 등의 절차에 대하여도 납세자의 신뢰를 얻는 보안(security) 확보를배려해 가면서 전자화를 도모할 필요성에 대해 강조하고 있다.

4. 에너지관련 세제와 환경문제의 대응

일본 세제조사회는 기존 에너지관련 세제 가운데 특정 공공서비스로부터의 편익과 부담과의 밀접한 대응관계(응익원리)가 인정되는 특정재원에 대해서는 그 합리성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한편으로 기존의 에너지 관련 세제 가운데는 자원의 효율적 배분을 왜곡시켜 재정의 경직성을 초래하는 세목이 있으므로 응익원리의 관점에서 그 타당성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동 조사회는 지적하고 있다. 예컨대 휘발유나 자동차 등을 세원으로 하는 도로특정재원의 경우 도로정비를 위해 이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보다는 심각한 재정사항이나 최근의 도로정비 개선상황을 고려하여 일반 재원화를 포함하여 그 개편을 도모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다. 일본의 연료과세 세부담 수준이 국제적으로 보아도 높지 않다는 점과 지구온난화문제 관점에서도 에너지 관련세제의 세율을 인하하는 것

은 타당하지 않다는 입장이다.

세제를 이용하여 환경문제에 대응해 나가는 데는 국민에게 널리 부담을 지워야 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국민의 이해와 협력을 얻는 것이 필수불가결하다. 일본 세제조사회는 중앙 · 지방의 환경시책 전반에 걸쳐 구체적으로 세제를 구상하는 데 있어서는 오염자부담원칙(PPP)을 견지하고 있다. 특히 지구온난화문제에 관하여는 京都의정서의 체결을 목표로 국내제도의 정비 · 구축을 본격화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규제적인 수단과 방법, 자주적 노력, 경제적인 수단과 방법 등의 조치와 더불어 에너지 관련 세제면에서 그 대응을 추진해가고 있다고 할 수있다.

5. 국제과세

국제화가 진전됨에 따라 일본에 진출하는 형태는 자회사나 지점의 개설이라는 방법만이 아니라 외국 파트너십이나 SPC(특정목적 자회사) 등의 집단투자제도(scheme)를 이용한 방법이 채택되는 등 형태가 다양화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업체를 이용하여 일본에서 얻은 소득에 대해 적정한 과세를 하는 데는 사업체의 활동이나 기업 · 개인에 관한 정보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게 된다. 일본 세제조사회는 앞으로 기업활동 실태 변화에 대응하는 형식으로 외국기업 등에 관한 과세방식을 개편해가야한다고언급하고있다.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각국 세제의 차이를 이용하여 조세회피를 자행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제도 · 집행 양면에서 대응함과 동시에 포괄적인 조세회피방지책이 시급하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소위 「유해한 조세경쟁」을 비롯한 다양한 국제과세문제에 대해 앞으로도 일본이 OECD회의에서도 국제 규칙(rule) 만들기에적극적으로 참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조세특별조치를 「공평 · 중립 · 간소」라고 하는 조세원칙에 반하는 예외조치로 보고 이를개편하여 과세베이스를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이 일본 세제조사회의 입장이다.

Ⅶ. 정책시사점

일본 세제조사회가 2001년 12월 제출한 답신이 일본 세제의 개혁방향 전체에 관하여 정리하고 있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2000년 7월에 나온 답신이 포괄적인 내용을 담고 있다. 그러나 2001년 12월의 답신은 세제조사회의 구성원이 새롭게 선출되고 나서 학계, 언론계, 경제계 등 각계의 의견을 반영하는 형태로 나온 가장 최신의 답신으로서 앞으로일본세제를조망하는데 걸맞는 자료이다.

특히 법인과세소위원회나 기초문제소위원회 등 전문소위원회의 활동에 기초하여 각각의 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룬 다음 이를 바탕으로 총회에서 논의하는 심의회 형식은 전문성과 일반성을 조화시키려는 노력이라 할 수 있다[10]. 이하에서는 각각의 분야별로 우리나라 세제개혁에 어떠한 시사점을 줄 수

10) 나아가이러한노력에는세제조사회만이지방분권추진위원회등과보조를같이하는형태로세제개편방향을조정하고있다.

있을것인가에관하여간단히언급하기로한다.

우선 법인과세 개혁 방향으로서 국세 법인과세와 지방세 법인과세의 과세표준을 구분할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국세 법인과세가 법인이익에 대해 과세하는 체계로 되어 있고 지방세 법인과세는 아직 제대로 정착되지 않은 상황이다. 이에 비해 일본은 국세와 지방세 모두 법인이익에 과세하는 체계로 되어 있어 경기변동에 심하게 영향을 받는다. 국세 법인과세의 경우는 기업의 경영환경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과세체계로서 기업분할 · 합병 관련 세제와 연결납세제도를 정비하고 있으며 이 때의 과세표준은 기본적으로 법인이익이 그 대상이 되고 있다. 법인관련 지방세로서 일본의 법인사업세는 앞으로 지방공공서비스로부터의 편익과 부담간의 관계를 강조하는 외형표준과세의 도입으로 정리되고 있다. 이는 일본 법인세 과세체계의 시행착오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나라가 일본과 같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기 위해서는 국세 법인과세는 기업분할 · 합병 관련 세제와 연결납세제도를 참고로 기업의 경영환경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체계로 전환하고 지방세 법인과세는 세수의 안정성과 동시에 응익원칙에 맞는 외형표준과세의 도입이 필요하다는 것이 일본의 법인과세 개혁 논의로부터 얻을수 있는 시사점이라할 것이다.

다음으로 금융 · 증권관련세제와 관련하여 얻을 수 있는 시사점은 효율적 부문에의 투자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하는 점이다. 일본은 기본적으로 예비적 동기에 의한 저축성향이 높아 이자율이 낮아도 높은 저축률을 보이고 있다. 높은 저축률이나 경상수지 흑자에 따른 풍부한 자금공급을 일본은 구조조정을 위한 자금으로 사용한 것이 아니라 경기부양을 위한 공공지출의 증대에 사용하여 왔다. 이를 위해 방대한 공채를 발행하여 현재는 공채발행잔고가 GDP의 130%를 초과하는 수준에까지 이르렀고 재정적자의 해결이 최대 현안으로 되어 있을 정도이다. 일본에서는 금융 · 증권관련세제를 저축보다는 투자 중심의 세제로 전환하고 있으나 세출의 삭감과 더불어 한계생산성이 높은 부문에의 집중적인 투자 없이는 재정적자의 해결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우리나라는 현재 재정적자가 그리 문제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기는 어려우나 정치적인 이유에 의한 것이든 경제적인 이유에 의한 것이든 재정적자에 의해 비효율적인 부문의 투자가 확대되면 방대한 매몰비용(sunk cost)이 발생하게 되고 이를 효율적인 부문에의 투자로 되돌리기가 얼마나 어려운가를 일본의 경험으로부터 배울 수가 있다. 따라서 금융 · 증권 관련 세제의 정비는 비효율적인 세출 삭감을 전제로 한 상태에서 한계생산성이 높은 부문에의 투자를 조장하는방향으로정비되어야 할것이다.

셋째로 일본의 자산과세 개편방향은 상속세나 증여세가 정책과세로서 부적절하다는 지적과 함께 토지 유통과세로서의 등록면허세의 유지 등을 지적하고 있으나 우리나라 자산과세에서 무엇보다 시급한 것은 지방과세에 있어 종합자산과세의 정비라는 점이다. 우리나라는 취득세 및 등록세라는 거래 자산과세가 중심이 되어 있어 응익원리와는 거리가 먼 과세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이에 비해 일본은 지방의 기간세로서 토지, 가옥, 상각자산에 과세하는 종합자산보유과세인 고정자산세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지방분권추진위원회에서도

이 고정자산세가 응익원리를 충실히 실현한 세로서 평가하고 있다. 일본 세제조사회는 지방분권추진위원회의 의견을 존중하는 입장에서 평가의 문제를 어떻게 조정해 갈 것인가로 고정자산세 과세대상의 평가문제를 뒷받침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이러한 세제개편의 단계라기보다는 그 이전의 단계로서 지방세에서 응익원리를 구현하는 자산과세 체계가 아직 정비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요컨대 우리나라는 국세 자산과세와의 조정을 포함하여 지방세에서 종합자산과세의 정비를 무엇보다도 시급하게추진할필요가있다고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기타 주요 항목의 개편방향으로부터 얻을 수 있는 정책시사점에 대해 간단히 언급하면서 글을 맺기로 한다. 비과세나 조세감면 등 조세특별조치를 정비하는 데 있어 개개의 조치들에 대하여는 그 정책목적 및 효과, 정책수단으로서의 적정성 및 이용실태라는 관점에서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정비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는 우리나라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도 타당하다는 생각이다. 조세특별조치는 어디까지나 정책수단이므로 그 정책목적이나 효과를 항시 검증할 필요가 있다는 점, 조세특별조치가 특정한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최적의 정책인지의 여부에 대하여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리고 일정기간 동안 이용실태가 저조한 형태만 남아 있는 조치에 대해서는 폐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 등을 기준으로 하여 정비해갈 필요가 있을 것이다.

나아가 우리나라에서 발포주와 같은 상품이 유행하게 되는 경우 그 유사 주류와의 세부담 균형 문제를 어떻게 정비할 것인가, 정보화 · 디지털화의 진전에 대응하기 위해 납세자번호제도와 전자신고

우리나라는 국세 자산과세와의 조정을 포함하여 지방세에서 종합자산과세의 정비를 무엇보다도 시급하게 추진할 필요가 있다.

제도를 어떻게 운영해갈 것인가, 공공서비스로부터의 편익과 부담과의 밀접한 대응관계를 실현하는 에너지관련 세제를 이용하여 환경문제를 대응해가는 데 있어 어떠한 방법으로 국민에게 부담을 지울 것인가, 국경을 넘나드는 거래가 확대됨에 따라 각국 세제의 차이를 이용한 조세회피행위에 대응하기 위한 세제개혁을 어떻게 진행해 갈 것인가 등에 대하여는 앞으로 일본의 세제개편 논의를 참고하면서 착실히 준비해 나가는 것이 요구된다.

참고문헌

일본정부세제조사회, 『日本 稅制の現狀と課題-21世紀に向けた國民の參加と選擇-』, 2000. 7.
일본정부세제조사회, 『平年 14年度(2002年度) 租稅改正に開する答申』, 2001. 12.
국중호, 『1990년대 일본의 재정개혁과 세제개편』, 한국조세연구원, 1998.
石弘光, 『稅制ウォッチング』, 中合新書1591, 2001.
일본지방분권추진위원회, 『지방분권추진위원회 최종보고』, 2001. 6.
일본총무성, 『지방재정백서』, 2001.

이코노미스트세계대전망 – THE WORLD IN 2002



지은이: 영국The Economist

편　역: 현대경제연구원

체　제: 신국판(A5) /값 15,000원

발　행: 한국경제신문 한경BP(전화 3604-561　2, 595)

2002년지구촌의글로벌트렌드는무엇인가?

이 책은 세계 90여 국가에서 동시 출간된 영국의 권위 있는 시사주간지 <The Economist>의 《THE WORLD IN 2002》의 한글판이다. 전세계 분야별 최고 전문가들이 2002년에 전개될 세계 각국의 정치 경제를 명쾌하게 분석 · 전망했다.

제1부에서 2002년 세계의 주요 이슈를 살펴보고 제2부에서 2002년 미국이 떠맡은 과제, 아시아의 성장 속도 등 2002년 세계 각국의 경제 사회상을 개관한다. 제3부에서는 산업과 경영, 금융과 경제, 과학 분야의 급변하는 세계 환경과 핵심 이슈들을 전망하고 있다. 제4부에서는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분석한 '2002년 한국 경제 전망'을 통해 국내 경제의 동향을 싣고 있다.

2002년 한 해를 " 전반적으로 경기가 회복하고 첨단기술이 발전할 것 이라고 내다본 이 책에 실린 대표적인 예측을 뽑아보면 다음과 같다." 미국과 유럽은 하반기에 빠른 경기회복을 보이고 금리는 오름세를 보일 것이다 ","" 인터넷이 다시 엄청난 규모의 폭발을 일으킬 것이고 전세계적으로 닷컴기업들이 부활할 것이다 "" 주요 에너지로서 빛이 전기를 대체할 것이다 "

첨단기술 부문에서는 광대역 기술이 가장 각광받을 것으로 예측됐다. 실시간 DVD화질의 화상회의를 가능하게 해주는 이 첨단 시장은 2006년까지 지금의 4배 규모로 급성장할 것이며 금액은 8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팜컴퓨팅사의 개인휴대단말기(PDA)는 가고 컴팩의 ' iPaq H3670 ' 시대가될 것이며 광선탐지 칩을 내장한 고해상 디지털카메라도 각광받을 것이다. 전동상품 중에서는 아이들이 타는 전동 스쿠터 대신 어른들의 시티벅스가 히트할 것으로 보인다. 내장된 컴퓨터와 24볼트 배터리로 시속 14마일까지 소리 없이 달리는 이 상품의 가격은 5백99달러.

지역별 전망을 보면 유로화라는 ' 화폐동맹 으로 유럽국가들이 획기적인 기회를 맞게 될 것이며 동유럽 국가들의 EU 가입 준비도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했다. 영국도 유럽 단일 통화 체제 합류를 놓고 국민투표에 들어갈 예정이다. 미국의 국방정책에 힘이 더 실리면서 팍스 아메리카나의 위력은 계속되겠지만 부시 대통령의 인기는 떨어지고 민주당이 다수당으로 복귀할 가능성이 크다.

아시아 경제에 대해서는 아시아를 강타한 5년전의 금융위기의 재발 가능성을 경고하고 있다." 5년전 큰 타격을 받았던 태국,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필리핀, 한국 중 말레이시아만이 고정환율제를 택하고 있다. 만약 달러화의 가치가 떨어진다면 아시아의 화폐에 강한 부담으로 작용할 것이다. " 지난해 WTO에 가입한 중국에 대해서는 완전한 시장개방까지 5년이 남았지만 이에 앞서 혼돈의 조짐은 올해부터 나타나 무역흑자가 줄고 위안화의 평가절하 문제가 고개를 들 것으로 내다봤다.

관심을 끄는 대목은 " 미국의 아프가니스탄 공격을 가장 적극적으로 지원한 영국이 어떤 식으로든 테러 공격을 당할 가능성이 높다 ","" 미국은 요란한 폭격보다는 꾸준한 정보활동을 주축으로 비밀리에 전쟁을 진행할 것이다. " 등이다.

이 책의 원고 집필에는 <이코노미스트>는 물론 <워싱턴 포스트>, <El Pais>, <Corriere della Sera>, <파이스턴 이코노믹 리뷰>, <파이낸셜 타임스>, <US 뉴스& 월드 리포트> 등 세계 유수 언론사들의 편집장들이 참여했다.

정책흐름

1. 2001년 직접세분야 시행령 개정(안)
2. 2001년 간접세분야 시행령 개정(안)
3. 2002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2001년 직접세분야 시행령 개정(안)

※이자료는재정경제부세제실에서 2001년 12월 19일에발표한「2001년직접세분야시행령개정(안)」의전문입니다.

Ⅰ. 배경 및 기본방향

□금년도세법시행령개정은

○「넓은세원 · 낮은세율, 경쟁력있는세제, 알기쉽고간소한 세제」를 지향하기 위한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등법률개정의기본취지에맞추어

○연구개발 · 설비투자확대 등을 통하여 성장잠재력 배양 및경기활력회복을세제면에서뒷받침하면서

○과다한 규제를 완화하고 납세편의를 제고하여 기업하기좋은환경을조성하고

○의료비 · 보험료 등 각종 공제를 보완하여 근로소득자의부담을경감하는 한편 개정법률의시행에필요한사항을규정하는등의내용을중심으로마련하였음.

※이를 위해 소득세법, 법인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부가가치세법 등 11개 세법의 시행령개정추진(간접세관련시행령개정내용은별도설명)

□기업경쟁력강화및경제활력회복을지원하기위하여

○중소기업투자준비금 손금산입 등 세제지원을 받을 수 있는 중소기업의 범위에 영화산업 등의 서비스업을 추가하고 수도권 내 소재하는 중기업으로서 20% 특별세액 감면을적용받을 수 있는지식기반사업의범위를연구 · 개발업, 엔지니어링사업등으로정함

○접대비 손금산입한도 제한 등(일반기업의 20% 수준) 세제상 규제를 받는 업종에서 부동산업은 제외하고 서비스업은범위를완화

□규제 완화, 납세편의 제고 등을 통한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을위하여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이 다른 법인의 주식을 취득 · 보유시에는 주식가액에 상당하는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토록 하고 있는 것을, 건설업, 해운업, 종합상사 등에는 업종의 특성을 감안하여차입금기준을자기자본의2배에서4배로완화

○합병 · 분할시 존속(신설)법인이 소멸법인으로부터 승계받아 손금처리할 수 있는 세무조정사항의 범위를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 조세특례제한법상의각종 준비금으로 대폭 확대하여 기업의 구조조정을 세제면에서 지원함.

○또한, 금융기관의채권 재조정에 따라 발생한 현재가치 할인차금을 기업회계기준과 같이 대손금으로 인정하는 등기업회계와세무회계의차이를축소함.

○소액이어서 채무자의재산 확인등 별도의절차없이 바로 대손처리할 수 있는 소액채권의 기준을 2만원에서 10만원으로상향조정함.

○현재 금융기관에 대해서만 허용되고 있는 원천징수 본점일괄납부를 비금융기관에까지 확대적용하고, 인터넷에의한전자계산서교부를허용

□의료비 · 보험료 등 각종 공제를 보완하여 근로소득자의부담을경감

○의료비공제 대상 항목에 시력보정용 안경, 보청기 등의 구입비용을 추가하고, 교원공제회 등 각종 공제회의보장성급부도보장성보험료공제대상에포함함.

○사업주가 종업원의 질병치료를 보험금 지급사유로 하여 종업원재해보험에 가입하고 불입하는 보험료에 대해서도 일정한도 내에서 근로소득세를 비과세하고 기업이 우리사주조합에 지출한 출연금을 손비로 인정하는등근로자의복지지원세제를확충함.

□기타사항

○장묘문화개선을 위하여 상속재산에서 공제하는 장례비용에납골당사용비용을추가

○증권회사의접대비손금산입한도계산기준이되는수입금액을기업회계기준에맞추어수수료기준으로전환

○공익신탁에맡기는기부금을 소득의 5%(개인:10%)까지 손금산입되는 지정기부금에 추가하여 기부문화의 확산을지원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 손금인정단체와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수취하는 기부금에 대해 증여세가 면제되는 공익법인의범위를일치조정

Ⅱ. 주요 개정내용

1. 성장잠재력 배양 및 투자활성화 지원

가. 중소기업업종의범위확대

현 행	개 정 안
□중소기업투자준비금 및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대상업종 ○제조업등 18개업종 ※중소기업투자준비금 - 사업용 자산가액의 20%를 손금산입 - 3년거치후3년분할환입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투자금액의 3%를 소득세 · 법인세에서공제	○서비스업을추가 - 과학및기술서비스업, 뉴스제공업, 영화산업(영화및비디오제작업 · 제작관련서비스업 · 배급업), 공연산업, 전문디자인업, 포장및충전업, 관광사업(카지노, 관광유흥음식점업, 외국인전용유흥음식점업 제외), 노인복지법에의한노인복지시설운영업

<개정이유>

○서비스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내수진작 등 경기 활성화

<적용예>개정령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나. 특별세액감면대상지식기반산업의범위

법개정내용	개 정 안
□수도권 내에서 지식기반산업을영위하는 중기업에 대해서도 소득세 또는법인세20% 감면적용	□세액감면대상지식기반산업 ○엔지니어링사업 ○부가통신업 ○연구및개발업 ○정보처리 및 기타 컴퓨터운영 관련업

<개정이유>

○지식의 창출, 전달 및 활용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업종을중심으로지식기반산업을선정하여세제지원

<적용예>개정령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다. 부품·소재산업의연구·인력개발에대한지원

현 행	개 정 안
□연구및인력개발준비금의익금산입 ○매출액의 3%(기술집약적 산업은 5%)를준비금으로손금산입	
○손금산입한준비금은3년거치3년분할익금산입	○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에대한출자금과중소기업의부품·소재신뢰성 인증획득비용을추가
- 다만, 미사용또는용도외사용시3년후일시익금산입	
□연구및인력개발비세액공제 ○증가지출분의50% 또는경상지출분의15%를세액공제	
○연구및인력개발비의범위 - 연구전담부서직원의 인건비, 위탁및공동기술개발비등	○중소기업의 부품·소재 신뢰성 인증획득비용을추가

<개정이유>

○국내개발부품·소재에대한신뢰성제고

<적용예>개정령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라. 부동산업등에대한규제완화

현 행	개 정 안
□부동산업 및 소비성서비스업에대해서는접대비및광고선전비한도액을일반법인보다규제	□부동산업을 규제대상에서 제외하고, 소비성서비스업의범위를축소
○부동산업 - 비주거용건축물자영건설업 - 부동산임대업, 비주거용부동산분양공급업, 부동산중개업	
○소비성서비스업 - 숙박업(관광숙박업 제외), 단란주점영업및유흥주점영업, 운동·경기및기타오락관련산업, 달리 분류되지 아니한 공연관련산업, 경기 및 오락용품 임대업, 특수욕탕업, 유료욕실등이부설된미용업	→호텔업·여관업(관광숙박업제외), 유흥주점업, 단란주점업, 무도장운영업, 도박장운영업(외국인전용카지노및폐광지역카지노제외), 마사지업(의료행위제외)

현 행	개 정 안
※접대비 손금산입 제한 : 일반법인의20% 수준 ※광고선전비 : 매출액 2% 초과분 손금불산입	

<개정이유>

○기업의 접대비 신용카드사용 의무화 등 경비지출의 건전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위한 제도적장치가 이미마련되었음.

○생활수준의 향상에 따른 관광, 체육 및 여가산업에 대한 수요 증가로 건전한 체육 및 여가문화의 육성 필요성증대

<적용예>개정령공포일이속하는과세연도분부터적용

2. 기업하기 좋은 환경조성

가. 금융기관의 채권재조정에 따른 현재가치 할인차금의 대손금인정

현 행	개 정 안
<신 설>	□금융기관이채권재조정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채권의 장부가액과 현재가치의 차이(현재가치할인차금)를대손금으로처리한경우손비인정

<개정이유>

○금융기관이 회사정리·화의 및 기업구조조정촉진법 등에 의하여 이자율 인하, 기한연장 등 채권을 재조정하는경우

- 이에 따라 실질가치가 떨어진 채권가치의 하락가액(현재가치할인차금)을 기업회계기준에서와 같이 당기에 대손금으로 처리할수 있도록하여 기업의세무조정 부담을완화

<적용예>영공포일이속하는사업연도에채권을재조정하는분부터적용

(2) 대손특례인정소액채권금액의상향조정

현 행	개 정 안
□소액채권의대손처리특례 ○회수기일 6월경과 채권 중 2만원 이하의 채권은 채무자의 재산확인 등별도의확인조치없이바로대손처리가능	○대손처리금액상향조정 - 2만원이하⇒ 10만원이하 (채무자별채권가액의합계액기준)

<개정이유>

○채권의 회수비용을 감안하여 대손처리 가능한 소액채권의 범위를상향조정

<적용예>2002년1월1일 이후최초로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다. 합병·분할시세무조정사항의승계범위확대

현 행	개 정 안
□법인의 합병·분할시 피합병법인의세무조정사항승계 ○피합병법인의 세무조정사항은 원칙적으로승계불인정	□세무조정사항승계확대 ○대손충당금한도초과액 ○조특법상의준비금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장기채권 등의현재가치할인차금등

현 행	개 정 안
○단, 다음의 경우 예외적으로 승계인정 • 퇴직급여충당금한도초과액 • 유가증권의평가손익 • 기업회계기준에의한채권 • 채무의재조정과관련한조정사항	□다음요건을 갖춘 분할의경우 모든세무조정사항의승계허용 ○분할평가차익의 과세이연 요건을 갖추고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승계한경우 *과세이연요건 • 5년이상가동법인이분할할것 • 분할대가의95% 이상을주식으로 지급할것 • 분할신설법인이 사업과 관련된 자산·부채를포괄승계받을것

<개정이유>

○법인의합병·분할시기업회계와세무회계상차이로불가피하게발생하는세무조정사항과조특법에의해손금산입한 준비금에 대해 승계를 허용하여 기업의 합병·분할등구조조정이원활히이루어질수있도록지원

○분할평가차익에 대한 과세이연요건을 갖춘 분할로서 자산·부채를 장부가액으로 승계한 경우에는 조세회피가발생할 소지가없는점을 감안하여 모든세무조정사항의승계허용

<적용예> 영 공포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합병·분할하는 분부터적용

라. 유동화전문회사의화폐성외화자산·부채관련파생상품의평가차손익인정

<개정이유>

○유동화전문회사가 해외ABS를 발행하면서 환위험

현 행	개 정 안
□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손익은당기손익으로반영 ○파생상품등의평가는불인정	□유동화전문회사(SPC)가화폐성외화자산·부채의환위험을회피하기 위해체결하는통화스왑계약의평가손익도당기손익으로인정

Hedge를위해통화스왑계약을체결하는경우

- 기초상품(화폐성 외화자산·부채)의 평가차손익은 인정하면서 파생상품(통화스왑계약)의 평가차손익은 불인정하는문제점해소

• 외화자산의 평가이익이 발생하고 파생상품의 평가손실이 발생하는 경우 기업회계상으로는 당기순이익이 '0' 이나 세무상으로는 외화자산의 평가이익만이 반영되어 법인세과세문제발생

- 외화ABS 발행을통한원활한외자조달을지원

<적용예> 영공포일이속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마. 특례재평가법인에대한상장기한연장

현 행	개 정 안
□기업공개를 위해 구 조세감면규제법상 자산재평가 특례를 인정받은 법인의주식상장기한	□주식상장기한연장
○재평가일부터 13년이내	○ 2003.12.31까지
○상장기한 내 비상장시 재평가차액에대해법인세과세	
※구조감법상재평가특례	
- 증권거래소에 주식을상장하기위한 법인은 자산재평가법의 규정에 불구하고	
• 매월1일(재평가법: 매사업연도 개시일) 기준으로재평가가능	
• 자산취득후 도매물가 상승률 25% 미달시에도재평가가능	

<개정이유>

□현재주식시장의여건 및 일부 생명보험사의경우 기업공개시 상장차익 배분문제 미해결 등의 현실을 감안하여 구 조감법상 재평가특례에 따라 재평가를 실시한법인의상장기한을 2003년말까지로연장함.

바. 차입금과다법인의지급이자손금불산입보완

현 행	개 정 안
□차입금과다법인(차입금이 자기자본의일정비율을초과하는법인)이 다른법인의주식을보유하고있을 시에는그주식가액에상당하는차입금의지급이자를손금불산입 ○일반법인: 자기자본의2배 ○소비성서비스업: 자기자본의1배 ○여신전문금융회사: 자기자본의 15배	○건설업, 해상운송업, 항공운송업, 종합무역상사: 자기자본의4배

<개정이유>

○건설·해운·항공·종합상사 업종의 특성을 반영하여 자기자본에대한차입금기준을조정

<적용예>개정령 시행후 최초로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사. 관광호텔등에대한외국인투자감면요건완화

<개정이유>

□관광업에대한 외국인투자활성화, 특히 부족한 관광호텔 및 국제회의시설의 건설을 유도하기 위하여 금액기준을하향조정하고지역제한규정을 폐지

현 행	개 정 안
□다음의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7년간100%, 3년간50% 감면 ○관광호텔업, 수상관광호텔업및국제회의시설 - 외투금액3천만불이상 ○제주도및관광단지·특구안에위치한종합휴양업으로서5천만불이상 <신 설>	□감면요건완화 ○2천만불이상으로완화 ○3천만불이상으로완화 - 지역제한을 폐지하고 종합유원시설업을추가 ○복합화물터미널 및 공동집배송단지등으로서3천만불이상 ○항만개발·운영사업으로서 3천만불이상

□산업인프라의 중요요소인 물류업 및 항만개발·운영사업에대한외국인투자지역의지정요건을신설

<적용예>법시행일이후최초로신고하는분부터적용

3. 납세편의 제고

가. 원천징수일괄납부대상법인확대

현 행	개 정 안
□소득세 원천징수세액 본점 일괄납부의대상법인 ○국세청장의승인을받은금융기관	○국세청장의승인을받은모든법인

<개정이유>

○전국에 다수의 사업장이 있는 비금융기관의 경우에도 납세편의와 행정비용 절감을 위해 국세청장의 승인을 받은경우에는본점일괄납부를허용

<적용예>2002년1월1일 이후최초로원천징수하는분부터적용

나. 인터넷을통한전자계산서교부제도도입

현 행	개 정 안
○전자계산조직 내에서 교부, 전송, 보관하는 경우에만 전자계산서교부허용	○인터넷을 통한전자계산서 교부도 허용

<개정이유>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거래편의 증진을 위해 인터넷을 통한계산서교부를허용

* 부가가치세법에서는 기허용

<적용예>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교부하는 분부터 적용

4. 봉급생활자 공제 확대 및 원천징수제도 개선

가. 간이세액표상특별공제액인상

현 행	개 정 안
○간이세액표상특별공제액 - 120만원 * 특별공제 •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기부금, 신용카드공제등	○공제대상 가족수에 따라특별공제액차등적용 • 가족수2인이하: 현행유지 • 가족수3인이상: 180만원

<개정이유>

□최근 의료비 · 교육비 · 신용카드 등 각종 공제의 신설 또는확대로인하여연말정산시많은환급세액이발생

○매월 근로소득세 원천징수시 이러한 공제 확대효과를 미리 반영하여 매월 봉급수령시 근로소득세가 과다징수되지않도록함.

○일반적으로 부양가족이 많은 경우 자녀교육비, 의료비, 보험료등연말정산시각종특별공제금액이큰점을감안

<적용예>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나. 의료비공제대상비목확대

현 행	개 정 안
○소득공제대상의료비의범위 - 병원비또는약국의의약품구입비 - 장애인의보장구구입비용 * 의료비공제: 의료비중연간급여액의3% 초과분공제(연 300만원 한도)	- 안경(콘텍트렌즈 포함) 및 보청기 구입비용추가 * 단, 안경의경우본인및부양가족1인당연간 50만원을한도로함.

<개정이유>

□시력교정용 안경 및 보청기 구입비는 시력 · 청력장애를 보정하기 위하여 추가적으로 드는 비용이므로 의료비공제대상에포함

○현재 의료비공제대상에 해당되는 시력교정수술인 LASIK(레이저각막절삭술)과의형평성유지

<적용예>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다. 단체정기재해보험보완

<개정이유>

□보험금 지급사유에 종업원의 질병 치료를 추가하고 보험료 비과세한도를 현행 보험료공제 수준으로 확대하여종업원의업무상재해에대비하기위한제도확충

현 행	개 정 안
□단체정기재해보험(종업원의 업무상재해대비) ○보험금지급사유 - 종업원의사망및상해	- 『종업원의질병치료』를추가
○보험의성격 - 종업원을피보험자와수익자로함 - 만기에환급하지않음	- 종업원을 피보험자와 수익자로 하며, 만기에 납입보험료를 한도로 환급금지급 • 만기환급금은근로소득으로과세
○사용자부담 보험료에 대한 근로소득세비과세한도 - 연 18만원	- 연 70만원

□다만, 만기 환급금은 근로 제공에 대한 대가관계에 있는점을감안하여근로소득으로과세

* 연금의 경우에도 불입액은 소득공제(비과세)하되 추후 연금수령시는과세

<적용예>2002년1월1일 이후최초로지출하는보험료분부터적용

라. 교원공제회등의보장성급부도보험료공제대상에포함

현 행	개 정 안
○보장성보험료공제 - 공제대상 • 생명 · 상해보험 • 손해보험 • 농협 · 수협 · 신협 · 새마을금고법에의한공제 - 공제한도: 연 70만원	- 「교원 · 군인 · 경찰 · 소방 · 지방행정공제회의 보장성급부도 공제대상에포함.

<개정이유>

□교원공제회 등특별법에 의하여 설립된 공제회의 보장성급부의경우에도

○일반 보장성보험과 실질적 내용이 동일하므로 보험료공제대상에포함

<적용예>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지출하는 분부터적용

마.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범위확대

현 행	개 정 안
○소득공제대상이 되는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범위 ①차입금상환기간 10년이상일것 ②소유권이전후3월내차입할것 *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 상환액소득공제(연300만원한도)	○아래의경우를 공제대상에추가 - 금융기관간 대출금의 대환을 통하여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다른 금융기관으로이전한경우 * 종전의금융기관에서 차입한 한도내에서인정 - 주택양수자가 양도자의 주택을 담보로차입한후지체없이소유권을 양수자본인에게이전하는경우

<개정이유>

□최근 주택저당차입금을 금리가 낮은 다른 금융기관으로이전하는사례가빈번

○이 경우에도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소득공제혜택을 계속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중산 · 서민층 근로자의내집마련에대한세제지원의실효성제고

□금융기관에서 자금을 차입하여 잔금을 청산한 후에야 소유권이전등기가가능한경우가많은점을감안하여

○「선차입, 후소유권이전」의경우도공제대상에추가

<적용예>2001년1월1일 이후 최초로지급하는이자상환액부터적용

바. 우리사주제도에대한세제지원

법개정사항	개 정 안
○출연또는배정시 - 종업원출연금: 연간 240만원한도로소득공제 - 기업 출연금 : 대통령령이 정하는 한도내에서 종업원 배정시에는비과세 ○종업원의인출시과세 - 3년이상보유시: 인출금× 9% - 3년미만보유시: 인출금×9 36%(종합과세)	○기업출연분의 종업원 1인당 연간 비과세한도 : 연간급여액의 20%(다만, 동금액이 500만원이하인 경우에는 500만원) ○『근로자복지기본법에의한우리사주조합에 법인이 지출한출연금을 손비로인정 ○근로자복지기본법에 의한 우리사주조합이재산을증여받는경우상속·증여세비과세

<개정이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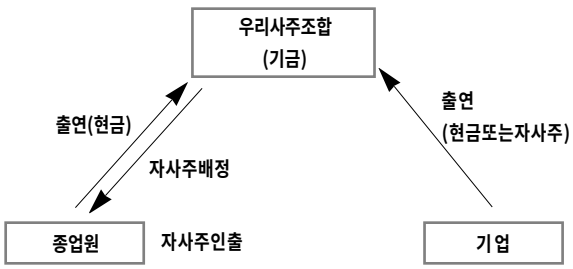
○3년 이상 자사주 보유후 인출시 소득세 최저세율(9%)로 과세되는 점을 이용하여 기업이 종업원에게 자사주를 과다하게 배분하여 세부담을 회피하는 것을 방지하도록

- 기업출연금으로 취득한 주식의 배정한도를 일정수준으로제한(한도초과분은배정즉시과세)

○우리사주조합의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하여 법인의 우리사주조합에 대한 출연금을 손비 인정하고 재산을 증여받은경우상속·증여세비과세

<적용예>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배정·인출하거나 증여받는분부터적용

[참고1] 우리사주제도(Employee Stock Ownership Plan)



<출연단계>

○종업원출연금: 전액소득공제(공제한도: 연240만원)

○기업출연금 : 전액 손비인정 (금년말 법인세법시행령 개정)

* 출연받은우리사주조합: 상속·증여세비과세

<우리사주조합운영단계>

○우리사주조합을 도관(pipe line)으로보아 운용수익 비과세

- 단순 매개역할을 수행하는 점을 감안하여 운용단계에서는 과세하지 않고 그 운용수익으로 취득한 자사주를 종업원이인출하는단계에서과세

<인출단계>

○배정후3년 이내에 자사주 인출시 : 근로소득으로정상과세

- 장기보유유도를위하여단기보유시에는세제혜택배제

○배정후 3년 이후에 자사주 인출시 : 소득세 최저세율 수준(9%)으로분리과세

[참고2] 우리사주제도 비교

□새로이 도입되는 우리사주제도는 근로자복지기본법(2001년 1월 1일 시행 예정)에 의하여 종전의 제도를 확대개편한것임.

○종전 제도 : 종업원이 유상증자 등에 참가하여 우선적으로자사주취득

○개정된 제도 : 유상증자 참가 외에 종업원과 기업(성과급)이 공동으로 기금을 조성하여 자사주를 취득한 후 종업원에게배분

		개정된제도	종전제도
법적근거		근로자복지기본법및증권거래법	증권거래법
투자대상		자사주	자사주
투자방법		• 유상증자 · 신규상장시 주식매입 • 회사 · 종업원 출연금으로 자사주식(구주 또는 신주) 매입	• 유상증자 · 신규상장시 주식매입(20% 우선배정)
주식 취득자금		• 종업원자기자금 • 회사의출연금 • 우리사주조합운용수익등	• 종업원자기자금
주식의무 보유기간		• 1년간	• 1년간
과세방안	출연 · 취득	• 종업원 출연금은 240만원 한도내에서소득공제	• 구입시소득공제없음
	인출	• 3년이전인출시근로소득으로정상과세 • 3년보유후인출시저율분리과세(9%)	· 인출시과세하지않음

5. 기타 미비점 보완

가. 금융기관이 아닌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에 대한 원천징수제도개선

현 행	개 정 안
□제도권 금융기관이 수취하는 이자는원천징수면제. 다만, 채권이자는원천징수 ○기타 금융보험업을 영위하는 법인이수취하는이자는모두원천징수	□비제도권의 금융보험업 영위 법인이수취하는이자에대하여도제도권 금융기관과 동일한 원천징수방식적용

<개정이유>

○개인대부업자의 경우 수입금액에 대하여 원천징수를 하지않는것과형평유지

○수입금액에대해15% 법인세원천징수시과다한세금선납부담등으로경영에큰애로로작용하는문제점을해소

<적용예>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이자를 지급하는 분부터적용

나. 접대비손금산입개선

현 행	개 정 안
□증권회사등의 접대비 손금산입한도계산금액 ○원칙: 기업회계기준에의한매출액 - 자기소유유가증권: 매각익 - 위탁유가증권: 수수료 ○예외 - 증권회사의 위탁유가증권 매매의 경우 : 매매대금의 8%(수수료 수입은제외) - 위탁회사의 수익증권 매각의 경우 : 매각대금의 5%(수수료 수입은 제외) - 자산운용회사의 증권투자회사주식 매각의경우: 매각대금의 5%(수수료수입은제외)	○기준수입금액개선 - 증권회사 : 위탁매매 · 중개 · 인수 · 주선, 수익증권 판매 등 수수료의경우동금액의 10배 * 단, 20배(2002) → 15배(2003) → 10배(2004) - 증권투자신탁회사법상 위탁회사 : 투자신탁 운용 수수료의 경우 동금액의10배 - 자산운용회사: 증권투자회사운용

현 행	개 정 안
	수수료의경우동금액의10배 - 신용보증사업 영위 법인 · 한국수출입은행의수입보증료: 7배
□도서상품권등에 대한 접대비 손금산입특례 ○도서 · 문화상품권을 발행법인으로부터 구입하여 타인에게 무상증여시 업무관련여부와 관계없이 접대비간주	< 폐 지>

<개정이유>

□현행 세법상 접대비 손금산입 한도는 원칙적으로 수입금액을기준으로계산하도록되어있으나

○증권회사 등에 대해서는 예외적으로 수입금액과 관계없이 유가증권 위탁매매 대금의 일정률(8%)를 기준으로 계산하고 있어 접대비 한도가 다른 업종에 비하여 너무높은수준이므로

○증권회사 등의경우도다른업종과같이매출액(유가증권 위탁매매의 경우: 수수료)을 기준으로 접대비 한도를계산하도록하고그수준도전반적으로하향조정

□다만, 수수료 기준으로 전환시 증권회사 등의 경우 접대비한도계산기준이되는 외형이규모가비슷한 제조업 · 판매업등의1/10 수준에불과하게되는점을감안하여수수료의 10배를기준으로하여계산하도록 함.

※접대비 한도가 일시에 크게 축소되지 않도록 3년에 걸쳐점진적으로축소

○법률에의해신용보증사업을영위하는 법인의보증료수입과「한국수출입은행」의 수출 및해외건설관련보증료수입에대하여도증권회사와동일한기준을적용하되

- 정부투자 · 출자기관인 법인의 경우 일반 법인 접대비 한도의 70%까지만 인정되는 점을 감안하여 수수료의 7배를수입금액으로간주하도록함.

□도서 · 상품권 등에 대한 손비인정 특례를 폐지하여 과세체계정상화

<적용예>2002년1월1일이후최초로개시하는사업연도분부터적용

다. 공익신탁으로신탁하는기부금의지정기부금인정

현 행	개 정 안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은 현재손비(또는소득공제) 불인정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 등에 출연하는재산의가액은상속세비과세(상속세및증여세법 $7)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을 지정기부금으로손비인정 ※지정기부금손비인정제도 ○사회복지 · 문화 · 예술 · 종교 등 공익단체중세법에규정된단체에 지급하는기부금에대해 - 소득금액의 5%(개인은 10%) 한도내에서손비인정

<개정이유>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 기부금은 다른 지정기부금과 마찬가지로공익목적으로지출되는기부금에해당하고

- 공익신탁을 통하여 공익법인에 출연하는 재산에 대해서는상속세도비과세되는점을감안

* 공익신탁의요건

- 공익신탁의수익자가지정기부금단체에해당할것
- 공익신탁의 만기일까지 신탁계약이 중도해지되거나 취소되지아니할것
- 공익신탁의중도해지또는종료시잔여신탁재산이국

가 · 지방자치단체및다른공익신탁에귀속될것

<적용예>2002년1월1일 이후최초로개시하는사업연도 분부터적용

라. 차입금지급이자가손금불산입되는대기업의범위

현 행	개 정 안
□자기자본의 5배(2002년부터 4배)를초과하는차입금에대한이자가손금불산입되는대기업의범위조정	
○대규모기업집단소속법인 ⇒자산또는자본규모등을감안하여대통령령으로정하는법인	○직전 사업연도 자기자본 1,000억원초과법인

<개정이유>

○세법에서 인용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상 대규모기업집단 개념을삭제하고적용대상범위를자체기준으로전환

<적용예>2002년1월1일 이후 최초로개시하는사업연도 분부터적용

마. 상속 · 증여세법및법인세법상공익법인의범위일치

<개정이유>

○특정단체가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는 경우 동 단체를 상속 · 증여세법에서도 공익법인으로 보도록하여

- 당해단체가기부받은금액에대하여증여세를면제받기 위하여다시공익법인으로지정받아야하는불편해소

현 행	개 정 안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된경우에도 - 상속 · 증여세법상 공익법인으로 지정되어야 기부받는 금액에 대하여상속 · 증여세면제	○법인세법상 지정기부금단체로 지정되면동 단체를 상속 · 증여세법상공익법인으로보도록함.

* 지정기부금 : 일정 범위 내에서 손비처리가능한 기부금. 이에반해법정기부금(예: 국방헌금)은전액손비처리가가능

* 지정기부금손금산입한도액

[당해사업연도의소득금액- 법정기부금손금용인액- 이월결손금] × 5%

기부자 [지정기부금손비인정] → (기부) 지정기부금단체/공익법인 [상속 · 증여세비과세]

<적용예>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 · 증여재산을 출연받는분부터적용

현 행	개 정 안
○상속재산에서 공제되는 장례비용의범위 - 최소 500만원 - 최대 1,000만원한도	○5백만원 이내의 납골사용비용 추가인정

바. 납골사용비용에대한장례비추가공제허용

<개정이유>

○묘지난해소및화장문화 확대를위한지원강화

* 공설납골당: 58개, 사설납골당: 27개(1999년말기준)

* 1기당평균납골안치료 220만원, 관리비5만원/년징수

<적용예>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적용

2001년 간접세분야 시행령 개정(안)

※이자료는재정경제부세제실에서 2001년 12월 21일에발표한「2001 간접세분야시행령개정(안)」의전문입니다.

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및 시행규칙

1. 외화획득관련 영세율 제도 보완

가. 외국인도수출등을수출의범위에추가(부가영 §4)

현 행	개 정 안
□수출의범위 ○내국물품을외국으로반출하는것 ※수출재화에포함되는것 - 내국신용장 · 구매확인서에 의하여 공급하는재화 - 사업자가 외국 무상지원용으로 국제협력단에게공급하는재화	□다음을수출의범위에포함 ○재화의 공급은 외국에서 이루어지나 대가를 국내에서 수령하는 등 실질적인수출에해당하는것 - 외국인도수출 수출대금은 국내에서 영수하지만 국내에서 통관되지 아니한 수출물품등을외국으로인도하는수출 - 중계무역수출 수출목적으로 물품 등을 수입하여 국내에반입하지않고바로해외에서인도하는수출 - 위탁판매수출 물품을무환으로수출하여당해물품이판매된범위안에서대금을결재하는계약에의한수출 - 위탁가공수출 가공임지급조건으로외국에서가공할 원료를 거래상대방에게 수출하거나 외국에서 조달하여 가공한 후 가공물품을 외국으로 인도하는 수출
	○수탁가공무역중에서다음의요건을갖춘수출 - 사업자가국외의비거주자또는외국법인과직접계약에의하여공급 - 대금을 외국환은행에서 원화로 받는것 - 국외의외국법인등이지정하는국내사업자에게인도 - 외국법인등과 계약한국내사업자가인도받은물품을제조 · 가공후 수출또는그대로수출하는경우

<개정이유>

○현재 중계무역 등의 경우 국외거래에 해당되어 부가세 과세 대상이 아니나, 본사 등이 국내에 있는 경우 본사에서 구입하는 비품등에 대해부가세매입세액공제를 허용하여수출 업체지원

○외국법인과의 계약에 의하여 국내에서 재화를 생산하여 외국법인 등이 지정하는 국내의 업체에서 제조 · 가공 등을거쳐 외국으로 수출하는 거래의경우도영세율 적용이되는수출의범위에포함

<적용시기>2002년1월1일이후 최초로공급하거나공급받는분부터적용

나. 미군주둔지역 주변사업자의 영세율 적용 연장(부가영 §26①)

현 행	개 정 안
□미군부대 주변 사업자로서 관할세무서장의지정을받은사업자가미군이나외국인에게외화를받고재화나용역을공급하는경우 ○금년 말까지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지난해시행령을개정하여2002년부터폐지예정	□미군주둔지역 중 문화관광부장관에의해관광특구(이태원, 송탄, 동두천)로지정된지역에서 ○관할세무서장의지정을받은소매점, 양장·양화·양복점을운영하는사업자에한해 ○2003년말까지 한시적으로 영세율연장적용

<개정이유>

○감면폐지에 따른 업체의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실제로 외국인관광객이많이방문하는미군주둔지역중관광특구에한해서영세율적용을2년간한시적으로연장하되

- 음식업, 목욕탕 등 서비스업은 제외하고, 소매점, 양복점등재화의공급에한해영세율적용

<적용시기>2002~2003년중공급하는분에한하여적용

2. 부가가치세 비과세·감면 축소

가. 상업방송 이용 수수료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전환(부가영 §2)

<개정이유>

○현재 과세되고 있는 지상파 방송, 음악유선방송, 인터넷 방송등과의과세형평유지

- 다만, 면세사업 당시 취득한 시설자재등의 재고자산에 대한매입세액은공제허용

현 행	개 정 안
□지상파 방송(2001년 과세 전환), 음악유선방송은부가가치세과세 ○위성방송·종합유선방송·중계유선방송 수신료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단, 광고는과세	○과세전환

○외국의경우도모두상업방송에대해과세

* EU지침: 공공기관이공급하는공공방송에한해면세

<적용시기>

○ 2002년7월1일이후최초로공급하는분부터적용

○위성방송의 경우는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분부터적용

나. 의제매입세액공제율축소등(부가영 §62, 규칙 §19)

현 행	개 정 안
□면세농산물을 구입하여 과세되는 재화·용역을공급하는사업자(예: 식품제조업자)의경우농산물구입가격의 일정률을 납부할 부가가치세에서공제 ○공제율: 3/103 (음식업5/105) ○공제대상 - 면세농·축·수·임산물	○2/102(음식업3/103) ○공제대상확대 - 소금 및 면세되는 단순가공식품(예: 김치, 두부) 포함 - 농산물등의1차가공과정에서발생하는부산물포함

<개정이유>

○의제매입세액 공제는 면세농산물 생산을 위한 자재 등의 구입시 부담한 부가가치세 부담률만큼 공제하는 것이 원칙이나

- 현행 공제율이 정해진 1997년 이후 배합사료, 선외내연기관 등 농업용 기자재에 대해 영세율 적용이 계속 확대되었고
- 최근 부가가치세 부담이 전혀 없는 수입농산물의 비중(쌀, 밀 등의 경우 대부분이 수입쌀)이 확대되어 면세농산물을 구입하는 사업자가 부담하는 실제 VAT부담률보다 현행 공제율이 너무 높음.

○현재 공제되는 면세 농수산물과의 형평을 감안하여 소금과 단순가공식품인 김치, 두부 등에 대해서도 공제 허용

<적용시기>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다.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하는 용역의 영세율 적용대상 축소(부가영 §26)

현 행	개 정 안
□다음의 외화획득사업 등에 대해 부가세 영세율 적용 ①국내에서 국내사업장이 없는 비거주자 ·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공급하고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는 것은 영세율을 적용하되	
○다만, 음식 · 숙박용역, 부동산임대용역에 대해서는 영세율 적용을 배제함(Negative System)	○국내에서 비거주자 등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대한 영세율을 다음에 열거된 업종에 대해서만 적용하여 감면 축소(Positive System) - 통신업(소포송달업 제외) - 운수업 중 보세구역 내의 창고업 - 오락 · 문화 및 운동관련 서비스업 중 뉴스제공업과 영화산업(영화관 운영업 및 비디오물 감상실 운영업 제외) - 사업서비스업, 무형재산권 임대용역 - 상품종합중개업(오퍼상) - 외국법인 등과 계약에 의하여 공급하는 재화로서 외국법인 등이 지정하는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는 재화 중 과세사업에 사용하는 재화
②외신기자클럽이 외신기자에게 공급하는 재화 또는 용역	<폐지>

<개정이유>

□목욕탕업 등과 같이 국내에서 이용되는 서비스에 대한 영세율 적용은 소비지과세원칙에 맞지 않고 내 · 외국인 차별과세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과세전환

○다만, 소비가 국외에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무형의 서비스(예:무형재산권의 임대용역) 등은 용역의 수출로 볼 수 있으므로 영세율 적용

□외국법인 등이 국내업체로부터 발주를 받아 그 중 일부 재화를 국내업체에 발주하고, 국내업체가 제조한 재화를 외국법인이 지정하는 국내업체에게 인도하는 경우

○수출과 동일한 효과가 있는 외화획득재화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영세율 적용

*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경우 세금계산서 교부가 불가능하여 매입세액 공제가 되지 않아 원가상승 요인이 되므로 국제 경쟁력저하

□외신기자클럽에서 식당을 위탁 운영하고 있으나 내·외국인 차별없이 동일하게 가격을 받고 있으며 영세율 적용실익이없어과세전환

<적용시기> **2002년1월1일이후최초로공급하거나공급받는분부터적용**

라. 통신사업자의‘ 금융정보제공용역 ’ 등을과세전환(부가영 §32)

현 행	개 정 안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에의하여등록한통신사가공급하는통신용역은부가가치세면제 * 통신의정의 - 전파법에 의하여 무선국의 허가를 받아 외국통신사와 통신계약을 체결하고 - 국내외의 정치·경제·사회·시사 등에 관한 보도·논평 및 여론 등을전파함을목적으로행하는송수신또는발행하는간행물	□정간법에 의한 통신용역과유사한 용역을 제공하는 통신사(AP, UPI 등)에 대해 등록여부에 관계없이 부가세면제 * 현행정간법상외국통신사는등록이허용안됨. □통신사가공급하는용역이라도 ‘ 금융정보제공 ’용역등은과세전환 ○특정회원 또는 특정인을 대상으로 환율·선물·금리·주식·채권·파생상품등특정정보를주로제공하는경우(정보제공업에해당)

<개정이유>

○정간법규정에 의한 등록을못하는 외국의통신사가 제공하는 통신용역에 대해서도 국내 통신사와 동일하게 부가세면세

○통신사가 제공하는 용역이라 하더라도 특정회원을 대상으로 금융정보 등 특정정보를 제공하는 경우에는 현재 과세하고 있는 다른 정보제공 사업자와의 과세형평을고려하여과세전환

※정보제공용역에대한과세현황

용역제공자	서비스내용	과세현황
연합뉴스	○Telerate : 미국브릿지사와계약하여외국의 에너지·주식등의영문경제관련정보	면세
중앙일보	○Joins.com : 인물정보, 만화서비스등	과세
(주)데이콤	○Lexus/Nexis : AP, UPI통신, 법률정보	과세

<적용시기> **2002년 1월 1일이후 최초로공급하는용역분부터적용**

마.「간이과세자 전환 건물」등에 대한 감가상각 의제기간 연장등(부가영 §19, §53, §53의3, §74의4)

현 행	개 정 안
□과세사업에 사용되어 부가세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건물등 감가상각자산을일정기간내에 간이과세자로전환, 면세목적으로전용하는 경우 과세표준을 재계산하여부가세액을추징	
○이 경우건물및 구축물의 감가상각의제기간을5년으로규정하여5년내에간이과세자로전환하는경우부가세매입세액추징	○감가상각 의제기간을 10년으로 연장하여 10년 이내에 간이과세자로 전환하는 경우 부가세 매입세액추징 * 추징세액계산 [취득가액×(1 - 5/100×경과된 과세기간 수)]×10%×(1-업종별 부가가치율)
□과세사업에 공한 감가상각 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라도 사용한경우는자가공급으로보아부가세과세	□면세목적에사용한건물등의비율이5% 이상인경우에한해과세

<개정이유>

○부가세 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건물·구축물에 대해서는 5년동안 과세사업에 계속 사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 신규 사업자가 일반과세자로 등록하여 건물 등을 신축·구입하면서환급을받고5년 경과 후간이과세자로 전환하거나 면세사업에 사용하는 경우 세부담이 전혀 없어 세부담 회피의 소지가 크므로 의제내용연수를 연장
- 특히, 임대업의경우 임대수입에 대해납부하는 부가세가 초기 환급세액을 초과하기까지는 상당한 시일이 소요되는점감안

* 법인세법상건물및구축물의내용연수: 15 ~ 50년

○과세사업에 공한 감가상각자산을 면세사업에 일부라도 사용한 경우에 자가공급으로 보아 과세하고 있으나 면세공급비율이 5%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해 과세토록 개선하여납세편의제고

* 과·면세 공통매입세액의 경우도 면세비율이 5% 미만인 경우는전액공제

<적용시기>

○ 2002년1월1일이후최초로취득하는분부터적용

※사례: 건물을 11억원(건물가액: 10억, VAT : 1억)에 매입하여 1억원을 환급받고 6년 후 간이과세자로 전환된경우

- 추징세액 : 10억(취득가액) × (1-5/100×12) × 10%(세율) ×(1-0.3) = 2,800만원

3. 부가가치세 면제 범위 조정

가.「손해사정·보험계리 및 보험계약심사용역」부가가치세면제(부가영 $3)

현 행	개 정 안
□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보험용역 ○보험업법에 의한 보험업(보험중개·대리를포함)	□보험회사에게 제공하는 손해사정·보험계리 및 보험계약심사용역은보험업의필수부수용역이므로 보험업과 동일하게 부가가치세 면제

<개정이유>

○손해사정용역 등은 보험업법상 보험의 가장 중요한 기능인 손실보상의 필수적 선행용역이며 선택적으로 용역이용이 불가능하고 보험과 관계없이 독립적으로 수행될수없는보험업의고유업무임.

○최근 보험사들이 손해사정용역·보험계약심사용역 등의 전문화를 위해 기업분사(Spin-Off)를 통한 구조조정을단행하고있으나

- 보험회사가 분사된 손해사정회사 등에 지급하는 용역대가에 대해 부가가치세 과세시 원가상승 요인 때문에 기업구조 조정에걸림돌

<적용시기>2002년1월1일이후최초로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나. 지자체 위탁 ‘ 묘지 및 화장업 ’ 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부가영 §29)

현 행	개 정 안
□사설묘지업 등을 의료보건용역의 범위에포함하여부가가치세면제 ○장사등에관한법률에 의해 사설묘지 · 사설화장장 또는 사설납골시설을 설치한 자가 제공하는 묘지 및화장업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공설묘지 · 공설화장장 및 공설납골시설의관리용역에대해서도면세

<개정이유>

○사설묘지와의 형평을 고려하여 공설묘지 등의 위탁관리용역에대해서도부가가치세면제

<적용시기>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다.「방문학습지도, 회원권모집」등을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인적용역의범위에 추가(부가영 §35 1호)

현 행	개 정 안
□개인이 독립된자격으로 공급하는 인적용역은부가세면제 ○저술 · 만화 · 음악등의용역 ○외판원이 판매실적에 따라 수당을 받고제공하는용역등	○방문학습지도, 각종 회원모집, 대리운전등개인이독립적으로일의 성과에 따라 수당 또는이와유사한성질의대가를받는용역추가

<개정이유>

○개인이 독립적으로 일의 성과에 따라 대가를 받는 용역은순수한노무용역으로서근로용역과유사한점을감안

<적용시기>2002년 1월 1일이후 최초로공급하거나 공급받는분부터적용

4. 과세자료 양성화 및 납세편의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가. 유흥업소에 대해 ‘ 프린터 내장형 신용카드 ’ 설치 명령 근거 신설(부가영 §86②)

현 행	개 정 안
□사업장 관할 세무서장은 납세보전 등을 위해 납세의무자에게 필요한 사항을명령할수있음. ○납세보전등을위해사업자에게서류제출, 세금계산서교부 · 금전등록기설치 · 사용등필요한사항을 명할수있음.	○유흥업소의 신용카드 허위매출전표의 작성을 방지하기 위해 ‘ 수동조회기 를 ‘ 프린터내장형조회기 ’ 로교체토록유도하기위해 - 신용카드 가맹사업자의 카드조회기설치 · 사용에대한명령사항부여근거신설

<개정이유>

○유흥업소 등 신용카드가맹점이 수동조회기를 이용하여 결제대행서비스업체(예: 유니텔)를 통해 승인을 받아 백지전표 또는 수기전표를 교부하는 등 불법거래 양상이발생하고있어

○불법카드거래가 많은신용카드가맹업종 등에대해 세무서장이 프린터내장형 신용카드조회기 설치를 의무화하도록명령할수있는근거신설

<적용시기>2002년 1월 1일부터시행

나. 임대용부동산의 전대시 임차금을 과세표준에서 공제 (부가영 §49의2①)

현 행	개 정 안
□부동산 임대보증금의 부가세 과세표준(간주임대료) 계산 ○임대보증금×정기예금이자율×과세대상일수/365	○부동산을 임차하여 다시 임대하는 전대업의경우과세표준계산시임차금을차감

<개정이유>

○전대차의 경우 총 임대보증금 합계에서 임차보증금을 차감한금액으로하는것이실질과세에부합

<적용시기>2002년1월1일이후최초로용역을공급하는 분부터적용

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시재고매입세액전액 공제(부가영 §63의3⑦)

현 행	개 정 안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로 전환시보유중인재고물품에대한부가세매입세액을공제 ○단, 재고매입세액이납부할세액을 초과하는경우는환급하지아니함.	○납부할세액을초과하는경우 환급허용

<개정이유>

○재고매입세액은 매입세액의 일종으로 공제 받지 못하는세액은전액환급함이타당

- 일반과세자가 간이과세자로 전환시 재고납부세액을 전액가산하고있는것과의형평유지

<적용시기>2002년1월1일이후최초로일반과세자로전환하는분부터적용

라. 고물상등을간이과세적용대상업종에추가(부가영 §84)

현 행	개 정 안
□부가세 사업자 중에서 일부업종은 간이과세자의적용을배제하고일반사업자로만사업자등록의무부여 ○도매업 ○과세유흥장소 · 부동산매매업 · 광업 ○양화점 · 양복점 등을 제외한 제조업 ○변호사 · 회계사 · 세무사등 ○국세청장이정하는업종등	○도매업 중에서도 고물상 등 폐자원 중간수집상은 간이과세자 등록허용

<개정이유>

○고물상 등 폐자원 수집업자 중 상당수는 소규모 · 영세사업자임에도 불구하고 표준산업분류표상 도매업자라는 이유로 일반과세자에 해당되어 과세형평에 맞지 아니함.

○간이과세 배제업종인 제조업 중에서 양복업, 제분업, 제과업, 떡방아간 등 영세한 업종에 대해 간이과세를 허용하는점과형평고려

<적용시기>

○ 2002년1월1일이후최초로공급하는분부터적용

Ⅱ. 특별소비세법시행령

1. 가정용부탄에 대한 특소세 환급대상 및 절차 등(특소영 §34의2)

<법개정내용>

◇ LPG부탄가스(특소세 114원/kg) 중 캐비넷히터 등 취사난방용과1회용부탄캔등에사용되는가정용부탄에 대해서는 LPG프로판가스(특소세 40원/kg)와 같은 세율이 적용되도록 세금인상 차액을 가정용부탄가스 판매업자에게 환급하도록 개정됨에 따라 환급대상·범위 및부당환급방지요건등을정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환급대상 LPG부탄가스 판매사업자 ○부탄가스충전사업자 ○부탄가스제조업자및수입업자 □취사난방용등가정용부탄의범위 ○용기내장형가스 난방기(캐비넷히터)용부탄가스 ○이동식부탄연소기용(부탄캔) ○에어졸·방향제등 생활용품에 주입하는부탄 □부당환급세액추징대상이되는허위세금계산서의범위 ○가정용부탄가스 공급없이 교부된 세금계산서 ○가정용부탄가스를 공급한 사업자 외의 사업자명의로 교부된 세금계산서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 후에 교부된세금계산서 ○취사난방용이외용도로판매한부탄가스
<신 설>	○동일재화공급에대해2중으로교부된세금계산서등 □상습적부당환급사업자에대한관허사업취소요구기준 ○최근2년이내에3회이상부당환급으로인해 특소세액을 추징당한 경우 ○최근2년이내에추징된세액의합계액이200만원이상인경우 □부당환급한경우의가산세율및환급신청절차설정 ○가산세율: 일별로10,000분의5 ○환급신청절차 : 가정용부탄 판매명세서 및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관할 세무서장 또는 세관장에게신청

<개정이유>

○서민생활 지원을 위하여 가정용 부탄(전체부탄 가스의 4~5%, 세율 114원)에 대해 가정용 프로판 가스와 동일하게 킬로그램당 40원의 세금만 부과되도록 인상된 세액을 가정용부탄 판매사업자에게 환급하기로 함에 따라

○이를 집행하는 데 필요한 환급대상 부탄의 용도 및 부정 환급시처벌기준등을정함

<적용시기>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하는분부터적용

2. 초절전형및 소형온풍기의 과세제외(특소영§1, 별표1)

현 행	개 정 안
□전기를사용하는난방온풍기에 대해과세(20%) ○다만, 건물부착용, 자동차히터용, 석유류사용온풍기는과세제외 <추가>	○전기사용온풍기 중에서 초절전형 온풍기와소형온풍기는과세제외 - 초절전형 범위 : 정격소비전력이 정격용량의 70% 이하인 온풍기 (30% 이상에너지절감효과가있는품목) - 소형의범위: 정격소비전력4kwh 이하의온풍기

<개정이유>

○초전도체 등 신기술을 응용한 ' 초절전형 온풍기 에 대한지원으로에너지소비절약을유도

※석유사용온풍기에비해연료비기준으로 60~70%절감

○주로영세상인등이사용하는' 휴대형소형온풍기 를과세제외하여중산 · 서민층세부담경감및세제의단순화

※초절전형온풍기는 소비자가격이 30~40만원 수준, 소형온풍기는 10~20만원수준으로과세실효성이낮음

<적용시기>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출고되는 분부터적용

3. 적외선전용사진기및고무보트등의과세제외(특소영§1)

<개정이유>

○사진작가 또는 사진학과 학생등이주로 사용하는 사진기 부품은 특수촬영을 위한 예술창작용 용도로 사용되

현 행	개 정 안
□고급사진기: 과세기준가격200만원초과분에과세(20%) ○고급사진기 부품 : 과세기준가격 100만원초과분에과세 ○과세제외: 공중측량용, 천체관측용, 의료용및고속순간촬영용등 □모터보트 · 요트: 제작재료에관계없이과세(20%)	○고급사진기 부품의 과세기준가격을 200만원으로상향조정 ○적외선촬영 전용사진기를 과세제외대상에추가 ○모터보트 · 요트 중 선체가 고무 · 합성수지천으로 제작된 공기주입 팽창식보트 · 요트를과세제외

는점을감안하여과세기준가격을상향조정

- 적외선촬영전용 사진기의 경우 주로 과학기술용, 연구용등으로사용되고있어과세실효성이낮음.

○모터보트 · 요트 중 고무로 제작된 공기주입식 제품의 경우 래프팅등의용도로 사용되고 있으므로여가레져활동 지원을위해과세제외

<적용시기>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출고 또는 수입신고하는분부터적용

4.「승용자동차」의 범위 확대(특소영§1, 별표1)

현 행	개 정 안
□특소세가 과세되는 승용 자동차는 승차정원8인이하로규정	□자동차관리법상의 승용자동차의 범위변경에 따라 특소세 과세대상 승용자동차의범위를승차정원 10인이하로확대 ○다만, 자동차 내수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과세시기는 1년간유예

<개정이유>

○자동차관리법, 지방세법등과의일관성유지를위해승

용자동차 범위를 10인승 이하로 조정하되, 신규 출고차량에 대한 과세시기를 1년 동안 유예하여 업계 및 소비자의부담완화

* 승용자동차로 전환되는 대상차량 : 트라제, 카니발, 스타렉스등3종

○ 2001년 1월 자동차관리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승용자동차구별기준이 10인승이하로변경

- 이에 따라 지방세법에서도 승용자동차 범위를 승차정원 10인승이하로확대

• 다만, 과거에 구입한 9~10인승 차량에 대한 자동차세 부담증가를 완화하기 위해 2004년 말까지 과세시기를 유예(2000년 12월 29일지방세법개정)

<적용시기>**2003년 1월 1일 이후 최초로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분부터적용**

III. 주세법시행령

1.「소규모맥주제조(Micro Brewery)」면허제도 신설 (주세영 §4, 5, 20)

현 행	개 정 안
□맥주제조면허 ○일반맥주의 연생산량 : 72,000kℓ 수준	□소규모맥주(Micro Brewery) 면허제도 신설(규개위 의결사항, 2001.8) [소규모의범위] - 주질보호및제조장난립방지를위해연생산량 60 300kℓ수준으로 정함. * 일본 · 독일 · 미국의 M.B는 일반적으로120 160kℓ수준
	[소규모맥주제조자의면허요건] - 영업장내에서직접음용하는고객에게만판매허용 * 미국의Brew Pub과유사 - 영업장 및 제조장을 동일장소로 제한 - 식품위생법상식품접객업허가를받은자또는받을자에게면허부여
○일반적시설기준 - 담금조(당화, 여과, 자비등) 275kℓ 이상 - 발효및저장조 7,850kℓ이상 - 시험시설 • 가스크로마토그래피, 간이증류기, 현미경, 항온항습기	[소규모맥주제조시설기준] - 담금조(당화 · 여과 · 자비등) 0.5 2.5kℓ - 발효및저장조5 25kℓ - 시험시설 • 간이증류기, 주정계각1조 - 유량계
○일반주류의과세표준 - 통상의 도매수량과거래방식에 의하여판매하는가격	[과세표준] - 통상의 제조수량에 의하여 계산되어지는 제조원가에 통상이윤상당액(제조원가의100분의 10)을 가산한금액

<개정이유>

○월드컵 및 부산아시안게임에 대비한 관광산업을 지원하고, 지역특성에맞는 다양한맥주 생산이 가능하도록 소규모맥주제조장을허용

※일본의경우 1994년생산시설기준을완화(20,000kℓ→60kℓ)한 결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100여개의 맥주상품이출현

<적용시기>

○ 2002년 2월 1일 이후 최초로 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시행

2. 주류제조「첨가물료」의 범위 확대(주세영 §2①, 별표1)

현 행	개 정 안
□현재주류별로첨가가능한물료를 구체적으로규정	
○소주	
- 아스파탐 · 스테비오사이드 · 아미노산류 · 솔비톨 · 무기염류	- 수크랄로스 · 아세설팜K · 에리쓰리톨 · 자일리톨 · 다(茶)류추가
○탁주 · 약주 · 청주	
- 아스파탐 · 스테비오사이드 · 젖산 · 구연산 · 아미노산류 · 식물약재	- 수크랄로스 · 아세설팜K · 에리쓰리톨 · 자일리톨

<개정이유>

○소주 · 탁주 · 약주 · 청주 등의 제조시 첨가가능물료의 범위를 확대하여 소비자기호에 부응한 다양한 주류의 개발지원

- ' 소주 와 동일한 제조공정을 거침에도 녹차 등 특정첨가물이 소량 첨가되었다는 이유만으로 ' 일반증류주 ' 로구분되는문제점해결

※증류주 중에서 소주 · 위스키 · 브랜디를 제외한 것을 일반증류주로분류(주세율은 72%로동일)

○수크랄로스 · 아세설팜K · 에리쓰리톨 · 자일리톨 등은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주류에 첨가하여도 인체에 유해하지 않은 물질로 인정된 감미료로서 관련업계 발전을 위해첨가물료에추가

※현재 일본 산토리사의 맥주 등 일부 외국주류 및 국내 여러식품(껌 · 과자류)에사용중

<적용시기>2002년1월1일이후최초로출고되는분부터 적용

3. 과실주의 정의 명확화 (주세영 §3①)

현 행	개 정 안
□현재 30%의주세가부과되는과실주에대한정의규정이불명확 (예) 과실주의과실당분중량을 1%, 설탕등과실이외당분을 99%로하는경우에도과실주로분류되어 30%의주세부과	□과실주의 주원료인 과실당분 중량이총당분중량의 20% 이상유지의무화 ※과실당분이 20% 미만인경우리큐르또는기타주류로분류하여 72% 주세부과

<개정이유>

○과실주의 주질 보호를 위해 과실 자체 당분이 전체 당분 중 20%이상이되도록과실주의범위를명확화함.

- 과실주의 대표격인 포도주의 경우 자체 과실당분이 40 60%, 기면허된 과실주(예: 복분자주 32%) 등은 일반적으로과실당분이 30% 이상이나
- 자체당분이비교적낮은과실(예: 레몬, 귤 등)의주류 개발을 고려하여자체당분이 20% 이상이되도록함.

<적용시기>

○ 2002년1월1일이후최초로출고되는분부터적용

4. 주류산업에 대한 불필요한 규제완화

가.「합성주정」제조 · 판매면허요건완화(영 §5, 9, 36)

<개정이유>

○현행 주정(에틸알콜)의 제조 및 판매 면허요건은 쌀 · 감자등곡물을원료로하여식용할 수 있는발효주정을엄격히관리할목적으로설정된것으로

- 석유화학 부산물에서 생성되며, 화장품 및 페인트 등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합성주정(합성에틸알콜)의 제

현 행	개 정 안
□「주정제조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발효조 · 술덧탑등다음시설의의무설치필요	□석유화학 부산물을 원료로 하여 '공업용 합성주정'만을 제조할 경우에는 불필요한「시설기준」을 완화하여최소한의시설만의무설치
○발효조총용량550kℓ이상 ○술덧탑1기이상 ○정제탑1기이상	○정제탑1기이상
○시험시설 -가스크로마토그래피 · 현미경 · 항온항습기 · 간이증류기 · 스펙트로메타	○시험시설 -가스크로마토그래피
□「주정도매업」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저장조 · 탱크로리 등 일정시설의설치의무화	□「합성주정」 판매업자에 대해서는「식용주정도매업」면허시요구되는 의무시설요건을 폐지하여 불필요한규제완화
○저장조용량: 500드럼이상 ○탱크로리용량: 500드럼이상 ○주류품질을분석할수있는기계 · 기구	○식용주정에 대해서만 저장조 등 시설요건의무화

조 · 판매등에대해서는시설요건등을대폭완화

※공업용합성주정은 출고단계에서 식용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변성제 를첨가한후세무서장의실수요자증명을받아출고되므로식용으로불법유통방지

<적용시기>

○ 2002년 1월 1일 이후 최초 면허신청자 · 수입분 · 출고분부터적용

나. 주류수입업면허의「전업규정」 완화(주세영§8①, 별표5의4)

현 행	개 정 안
□주류수입업체에대해 ○제조업 또는 다른 상품 판매업의 겸업을 금지하고 주류수입업만을 전업할것을요구 * 주류수입업면허요건 - 자본금5천만원이상 - 창고면적 66㎡이상	○주류수입업체에 대해「주류 제조」 겸업을 허용하여 주류산업에 대한 규제완화 * 한 · 영경제정책협의회요청사항

<개정이유>

○주류수입업 겸업금지 규정 때문에 주류제조법인과 주류수입법인을 각각 별도로 설립 · 운영하여야만 하는 불필요한기업부담(예: 별도의유통체인, 판매직원, 회계장부) 발생

- 주류수입업 겸업금지규정을 폐지하여 기업의 원가절감 지원

<적용시기>2002년1월1일부터최초시행

다.「주정가격고시제」폐지(주세영§5③)

현 행	개 정 안
□주정가격을국세청장이고시	<폐 지>

<개정이유>

○주류가격에대한규제완화

<적용시기>2002년1월1일부터최초시행

라. 출고주류 수량 산정시 적용되는 주류의 「실감량(實減量) 한도」제도개선(주세영 §26)

현 행	개 정 안
□주류생산과정에서 감소되는 실감량(實減量)을 주류별로 규정하여 출고수량산정시적용 ○주류별실감량인정범위 - 주정1%, 청주5%, 소주·약주·위스키등 2% - 맥주 3.5%(주정혼합시0.01%) <신설>	□납세증지를 사용하는 주류는 실감량제도적용배제 - 소규모맥주제조장의 제조 맥주 : 7%

<개정이유>

○'실감량(實減量)한도제는 과거엄격한주류생산량통제시기에주류의납세보전을위해도입된것으로

- 현재 납세증지(납세병마개)제도가정착되어 출고 주류를정확하게산정할수있어탈세방지가가능하며
- 오히려 소량·다품종생산체제 및 자동화관리체제(ERP)를 도입하려는 기업에게 불필요한 비용 부담을 초래하고 있으므로
- 납세증지를 사용하는 주류는 현 실감량인정한도제를 폐지

※미국·일본·독일 등의 경우 제조과정에서의 실감량제도가없음.

○소규모맥주제조장에서는 대형맥주제조장보다 여과공정에서 생기는잔주 등을 회수하기곤란하므로현행 맥주실감량의2배인 7%로설정

<적용시기>2002년1월1일이후최초로출고하는분부터 적용

IV. 인지세법 시행령

1. 금전소비대차업무를담당하는금융기관의범위(신설)

<법개정내용>

◇인지세가 과세되는 소비대차증서의 범위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융·보험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 증서로 한정함에따라관련금융·보험기관의범위를정함.

현 행	개 정 안
□모든 소비대차계약서에 대해 인지세과세 ○개인간의소비대차문서및 물품소비대차문서포함 ※소비대차·도급문서세율 • 1천만원~ 3천만원: 2만원 • 3천만원~ 5천만원: 4만원 • 5천만원~ 1억원 : 7만원 • 1억원~ 10억원 : 15만원 • 10억원초과 : 35만원	□금융기관과의 금전소비대차 증서로제한함에따라여신업무를담당하는금융기관을명시 - 은행법에의한은행업 -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 증권거래법에의한증권업 - 보험업법에의한보험업등 - 단기금융회사, 신탁회사, 종합금융회사, 증권투자신탁회사, 신용보증회사 - 신용카드사, 여신전문금융회사 - 농협, 수협, 신협상호신용금고, 새마을금고등 - 기타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기관

<개정이유>

○금융·보험기관의 범위를 관련법률에 의하여 여신업무를담당하고있는기관으로정함.

<적용시기>2002년1월1일이후최초로과세문서를작성하는분부터적용

2. 인지세 과세대상 「도급문서의 범위」(신설)

<법개정내용>

◇종전에는 물품 납품계약서, 건설도급문서 등 모든 도급문서에 과세되었으나앞으로는법률에의하여작성되는 도급 · 위임문서 중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문서에 대해서만과세하도록개정함에따라구체적인범위를정함.

현 행	개 정 안
<신설>	□법률의규정에의하여작성되는도급 · 위임문서를구체적으로명시 - 건설산업기본법에의한도급문서 - 전기공사사업법에의한도급문서 - 정보통신공사사업법에 의한 도급문서 -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에의한도급문서 - 변호사법, 공인회계사법, 변리사법, 세무사법, 건축사법에의한위임(수임)계약서 - 기타재정경제부령이정하는문서

<개정이유>

○향후 도급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법률에 의한 건설도급문서, 국가기간과의 납품계약서 및 수임계약서 등으로 과세대상을구체적으로명시함.

- 물품납품계약서, 중개계약서 등 개인간 작성하는 도급문서는과세대상에서제외

<적용시기>2002년1월1일이후최초로과세문서를작성하는분부터적용

3. 인지세 과세대상이 되는 전화가입신청서 범위(신설)

<법개정내용>

◇대통령령이 정하는 전화가입신청서에 대해 1,000원의 인지세를신규과세함에따라그범위를정함.

현 행	개 정 안
<신설>	□인지세 과세대상 전화가입신청서 범위구체화 ○유선전화신청서 ○무선전화신청서 중에서 이동전화 및개인휴대통신 역무를 이용하기 위한 신청서

<개정이유>

○금번 인지세법 개정으로 신규과세 대상이 된 전화가입신청서의범위를구체적으로명시

- 전기통신사업법상의 전기통신 서비스 중 유선 및 무선을이용한일부전화역무를과세대상으로정함.

* 전기통신사업역무(전기통신사업법제4조제2항)

	업 무	
기간통신사업	유선	시내, 시외, 국제전화
	무선	이동전화, 개인휴대통신 발신전용휴대전화 무선데이타통신
부가통신사업	데이타단순전송	데이타회선재판매
	부가통신망	온라인정보제공 전자우편, 신용카드검색 전자문서교환, 원격통신
별정통신사업	설비보유재판매	음성재판업, 인터넷폰, 콜백사업
	구내통신사업	유통, 프라임정보시스템등

<적용시기>2002년 1월1일이후 최초로과세문서를작성하는분부터적용

4. 주식선물거래약정서를 과세대상에 추가(신설)

현 행	개 정 안
□계속적·반복적 거래에관한 문서 중에서대통령이정하는문서는인지세300원과세 ○주식거래약정서 ○신용거래계좌설정약정서 ○특약점또는대리점계약서 <추가>	□ 현행유지 < 폐지> ○주식선물거래약정서 -세액: 300원

<개정이유>

○인지세 과세문서인 ' 주식거래약정서 와 형평을 고려하여주식선물거래약정서도과세문서에추가

* 선물거래는미래의일정한시기에일정한가격으로특정상품또는금융상품을수수할것을약정하는거래로서

• 주식선물거래는 당사자가 특정한 지수에 대하여 미리 약정한수치와 미래의 일정한시기의 당해지수의 수치와의차이로부터산출한금액의수수를약정하는거래

○특약점·대리점계약서는 사인간에 작성되는 점, 기업의거래비용절감을위해과세대상에서 제외

<적용시기>**2002년1월1일이후최초로과세문서를작성하는분부터적용**

5. 인지세 미납부시의 가산세율 및 환급절차(신설)

<법개정내용>

◇인지세 미납부자 또는 과소납부자에 대해 대통령령이정하는 가산세 부과와 과오납의 경우 환급하도록 신설됨에따라가산세율과환급절차를정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미납부·과소납부시의 가산세율 : 1일, 5/10,000(연환산시18.5%)
<신 설>	□환급절차규정신설 ○주소지 또는 영업장 관할세무서에 신청 ○인지첩부방식에의한 과오납의 경우는 당해 문서의원본·복본·사본을제출하여환급 ○환급신청서 등 서식은 국세청장이 정하여운영

<개정이유>

○금번 인지세법 개정으로 새로이 신설된 가산세제도 및 과오납시의환급규정운영에필요한절차적규정

- 가산세율은 부가가치세, 주세 및 특소세 등의 가산세율과동일하게1일당 5/10,000(년환산시 18.5%)로정함.

<적용시기>**2002년1월1일이후최초로과세문서를작성하는분부터적용**

Ⅴ. 농·어업용기자재 및 면세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및 시행규칙

1.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 VAT 사후환급제도 신설

<법개정내용>

◇기존에 부가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농·어업용기자재 이외에 농업용과 산업용으로 범용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실수요자인 농어민에게 부가가치세를 사후에 환급해주는제도를도입

○환급대상 기자재, 환급대상 농 · 어민의 범위, 사후환급 절차, 부정환급시 제재, 환급대행 수수료율 등 시행령에위임.

가. 부가세환급대상농 · 어업용기자재(13개품목)

□농업용기자재: 5개품목
○농업용 폴리에틸렌 필름 : 비닐하우스용, 보온못자리용, 농작물멀칭및피복용에한함.
○농업용파이프: 비닐하우스용에한함.
○농업용포장상자: 종이재질의 농 · 축산물 포장용에 한함.
○농업용폴리프로필렌포대: 곡물포장용에한함.
○과일봉지 : 과일병충해 방지를 위해 열매에 씌우는 봉지에한함.

□어업용기자재: 8개품목
○양어장용폴리에틸렌필름: 비닐하우스용에한함.
○양어장용파이프: 비닐하우스용에한함.
○어상자: 목재로만들어진것으로수산물포장용에한함.
○와이어로프: 어선용에한함.
○어업용발전기: 어선및양식장용에한함.
○양어장용초파기: 혼합사료제조용에한함.
○활어냉각기: 어선용에한함.
○양어장용취 · 배수관(PE, PM, PVC파이프)
※세금지원효과: 약 900억원

나. 환급대상「농 · 어민」의범위

○농 · 어업및축산업에종사하는개인
○영농조합법인 · 농업회사법인및영어조합법인
○축산주업법인및어업주업법인
※주업법인 : 총 발행주식 또는 출자지분의 2/3 이상을 농 · 어민및임직원이출자하고있는법인

다. 부가가치세환급절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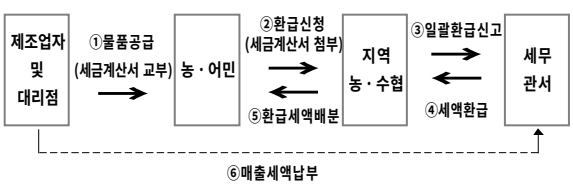
□부가가치세환급업무대행자
○농 · 어민의 주소지 소재지 또는 농업법인 등의 사업장 소재지 관할 농 · 수협 및 엽연초생산조합이 농 · 어민을대신하여세무서에부가가치세환급신청대행

□환급신청기한
○농 · 어민이기자재를구입한 분기말또는 그다음 분기말의 다음달 10일까지 세금계산서 등을 첨부하여 농 · 수협 등에 부가세 환급신청을 하고, 농 · 수협은 관할 세무서에환급신청

□세무서의환급기일: 환급신청기한종료후 20일이내

□농 · 수협및엽연초조합의환급액배분기한
○농 · 수협등환급대행자는환급세액을 받은날로부터5일이내농 · 어민에게지급

※사후환급절차도



2. 농 · 어업용 면세유 관리체계 개선

<법개정내용>

◇면세유공급대상 농 · 어민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실제 유류사용량에 비례하여 면세유류를 공급할 수 있도록 자동계측기부착 · 생산실적제출의무화

○면세유 한도량 결정 · 면세유 배분 및 면세유류공급권 관련규정을 정비하고, 부정사용에대한제제강화

※농 · 어업용면세유감면규모: 약1조원

가. 면세유공급대상농어민의범위

○농민, 영농조합법인및농업회사법인등

○어민, 수산업법에 의한 영어조합법인, 어촌계 및 어업 주업법인

나.「면세유실사용량」확인절차규정

□운행시간을 측정하는「자동계측기」부착대상농 · 어업용기계

○대상기종

- 신규로구입하는트렉터, 콤바인, 10톤이상농선

- 10톤이상어선(6,200척), 선외기어선(25,000척)

○자동계측기요건

- 운행시간을자동으로측정할수있는것

- 어선의 경우 해양부장관이 지정하는 기관의 검증을 거친 것

□생산실적등제출대상농 · 어업용기계

○「농업용난방기, 내수면양식어업시설」 등을 운영하는 농 · 어민으로 직전년 면세유 공급량이8만ℓ(경유기준 약 3천만원) 이상인경우면세유사용과 관련된생산실적등자료제출

- 농 · 수협은다음연도 면세유 구입권발급시전년도이용실적을감안하여교부량가감

다. 면세유공급및관리절차강화

○최초면세유구입권 신청시 농기계 보유현황및 경작 · 영어사실신고서제출

- 신규또는 중고구입 등변동사항이 있는경우매년 1월말까지 신고

○농림부장관과해양수산부장관이기종별, 업종별특성등을감안하여기종별면세유한도량(공급기준량)을산정

- 농 · 어민에 대한 배정은 공급기준량을 기준으로 결정하되, 영농 · 영어 규모등에 따라실제소요량을파악하여배정

3. 기타 사항

가. 어민의 생산비 절감을 위해「새우 · 패류 건조시설」 등에도면세유공급

○어업에 필수적인「새우 건조 · 자숙시설, 패류 자숙시설, 양식어업용 양수기 및 세척기」를 면세유 공급대상에추가

나. 콩나물재배업자를농민의범위에서제외

○노지가 아닌 특정고정시설 내에서만 생산되는「콩나물재배업자」는 농민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면세유 공급대상에서 제외

2002년 1월 1일부터 이렇게 달라집니다

※이자료는재정경제부홍보기획단에서 2001년 12월에발간한「2002년1월1일부터이렇게달라집니다」중 조세 · 재정분야의경제제도및법규개선사항을정리한것입니다. <편집자주>

<재정경제부>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및시행일	관련부서
1	○종합소득세율인하	○1천만원이하: 10% 4천만원이하: 20% 8천만원이하: 30% 8천만원초과: 40%	○1천만원이하: 9% 4천만원이하: 18% 8천만원이하: 27% 8천만원초과: 36%	○소득세법 제55조 (2002.1.1)	소득세제과 ☎ 2110-2095
2	○근로소득공제확대	○500만원이하: 전액 1,500만원이하: 40% 4,500만원이하: 10% 4,500만원초과: 5% ○일용근로자소득공제: 일5만원	○500만원이하: 전액 1,500만원이하: 45% 3,000만원이하: 15% 4,500만원이하: 10% 4,500만원초과: 5% ○일용근로자소득공제: 일6만원	○소득세법 제47조 (2002.1.1)	소득세제과 ☎ 2110-2095
3	○경로우대자 · 장애인 공제확대	○경로우대자 · 장애인추가공제액 :50만원	○공제액인상: 50만원→100만원	○소득세법 제51조 (2002.1.1)	소득세제과 ☎ 2110-2095
4	○장애인특수교육비 공제신설	〈신 설〉	○장애인특수교육비소득공제 (연150만원한도)	○소득세법 제52조 (2002.1.1)	소득세제과 ☎ 2110-2095
5	○원격대학생교육비 공제신설	〈신 설〉	○평생교육법에의한원격대학을 교육비공제대상에추가	○소득세법 제51조 (2002.1.1)	소득세제과 ☎ 2110-2095
6	○사립학교기부금 장학금전액소득공제	○사립학교장학금에대하여종합소득의 10% 범위내에서소득공제	○장학금에대해서도전액소득공제	○소득세법 제34조 (2002.1.1)	소득세제과 ☎ 2110-2095
7	○주택임대보증금에 대한간주임대료폐지	○주택임대보증금 · 전세금에대하여 소득세과세(간주임대료과세제도)	○주택임대에대하여간주임대료 제도폐지	○소득세법 제25조 (2001.1.1)	소득세제과 ☎ 2110-2095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및시행일	관련부서
8	○우리사주제도에대한 세제지원	○우리사주조합원이조합을통하여 주식을구입하는경우구입가액과 시가와의차액에대하여근로소득세 비과세	○출자단계 -종업원: 출연금전액소득공제 (연240만원한도) -기업: 출연금전액손비인정 ○종업원인출단계 -3년이내: 근로소득으로정상과세 -3년이후: 기타소득(9%)분리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88조의4 (2002.1.1)	소득세제과 ☎2110-2095
9	○세금우대종합저축의 이자소득에대한 분리과세	○금융소득이4천만원을초과하는경우 세금우대종합저축이자도종합과세 (10%저율과세적용배제)	○세금우대종합저축의이자소득은 금융소득의규모와관계없이 분리과세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 (2001.1.1)	소득세제과 ☎2110-2095
10	○소득합산대상자의 소득공제허용	○소득합산과세대상자의소득공제액을 주된사업자의소득에서공제불허	○소득합산과세대상자의소득공제액을 주된사업자의소득에서공제허용	○소득세법 제51조의3 (2001.1.1)	소득세제과 ☎2110-2095
11	○이자·배당·연금 소득에대한 과세범위확대	○법률에일일이열거된소득에대해서만 과세	○이자, 배당, 연금소득에대하여 기존과세소득과유사한소득에 대해서도과세할수있는근거마련	○소득세법제16조 제20조 (2002.1.1)	소득세제과 ☎2110-2095
12	○주식매수선택권과세 특례요건조정	○스톡옵션부여대상자: 창업법인·신기술사업자·벤처기업 및상장·협회등록법인의종업원등	○스톡옵션부여대상자에부품·소재통합연구단의연구원을포함	○조세특례제한법 제15조 (2001.1.1)	소득세제과 ☎2110-2095
13	○투자조합출자등 소득공제한도축소	○소득공제율: 30% ○출자금한도: 소득금액의70%한도 ○출자대상: 중소기업창투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기업구조조정 조합, 벤처기업투자신탁, 벤처기업에 대한직접투자	○소득공제율: 15% ○출자금한도: 소득금액의50%한도 ○출자대상에부품소재전문투자조합 을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6조 (2002.1.1)	소득세제과 ☎2110-2095
14	○비과세저축의 전산통합관리	○각종비과세저축별로1인1통장·저축한도등을제한→중복가입·저축한도초과등에따른민원발생 ○적립식저축의경우매월일정액 범위안에서적립	○1인1통장제도폐지 ○저축취급금융기관간통합한도제로 전환 ○분기별납입제로변경	○조세특례제한법 제89조의2 (2002.1.1)	소득세제과 ☎2110-2095
15	○신용카드사용비율에 따른접대비필요경비 (손금)불산입제도폐지	○접대비중신용카드사용비율이 지역별로정한일정비율에미달하는경우 - 그미달비율에상당하는접대비는필요경비(손금)불산입	〈폐 지〉	○소득세법 제35조 (2002.1.1) ○법인세법시행령 제41조(2002.1.1)	소득세제과 ☎2110-2095 법인세제과 ☎2110-2317
16	○지출증빙미수취가산 세율인하	○사업자또는법인이10만원이상 재화·용역거래시세금계산서, 계산서와신용카드영수증외의영수증을수취 한경우당해거래금액의10% 가산세 부과	○가산세율을2%로인하	○소득세법 제81조의④ (2001.1.1) ○법인세법 제76조 (2001.1.1)	소득세제과 ☎2110-2095 법인세제과 ☎2110-2317
17	○중간예납소액부징수 금액인상	○소액부징수액: 10만원	○소액부징수액: 20만원으로인상	○소득세법 제86조 (2002.1.1)	소득세제과 ☎2110-2095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및시행일	관련부서
18	○이자소득에대한 소액부징수폐지	○원천징수세액이1천원미만인때에는 소득세징수면제	○이자소득금액에대하여는 소액부징수폐지	○소득세법 제86조 (2002.1.1)	소득세제과 ☎ 2110-2095
19	○아파트관리사무소 등의금융소득 분리과세	○법인으로보지않는단체를1거주자로 보아금융소득이4천만원을초과시 종합과세	○수익을구성원에게배분하지않는 단체가그단체명의로지급받는 이자·배당소득은분리과세	○소득세법 제14조 (2001.1.1)	소득세제과 ☎ 2110-2095
20	○비거주자(외국법인)의 비과세신청의무부여	〈신 설〉	○비거주자(외국법인)의국내소득중 조세조약에따라비과세되는경우 비과세신청의무부여	○소득세법 제156조의2 (2002.7.1) ○법인세법 제98조의4 (2002.7.1)	국제조세과 ☎ 2110-2338
21	○원천징수납세지조정	○금융기관에대해서만원천징수세액의 본점일괄납부가능	○모든법인으로확대	○소득세법 제7조 (2002.1.1)	소득세제과 ☎ 2110-2095
22	○초과유보소득에대한 법인세폐지	○비상장대법인(자기자본100억원초과 또는대규모기업집단소속)이그이익을 적정수준을초과하여유보하고있는 경우당해유보소득에대하여15%의 세율로법인세추가	〈폐 지〉	○법인세법 (2002.1.1)	법인세제과 ☎ 2110-2317
23	○대차대조표공고의무 및가산세폐지	○외부감사대상법인은과세표준신고 기한내에대차대조표를일간신문에 공고	〈폐 지〉	○법인세법 제76조 (2002.1.1)	법인세제과 ☎ 2110-2317
24	○차입금지급이자가 손금불산입되는 대기업범위규정	○주권상장·협회등록법인 (중소기업제외) ○대규모기업집단소속법인	○현행동일 ○직전사업연도종료일현재자기자본 1,000억초과기업	○법인세법 제28조 (2002.1.1)	법인세제과 ☎ 2110-2317
25	○공익신탁으로 신탁하는기부금	〈추 가〉	○공익신탁으로신탁하는기부금을 소득금액의5% 한도내에서 손비로인정	○법인세법시행령 제36조 (2002.1.1) ○소득세법 시행령 제80조 (2002.1.1)	법인세제과 ☎ 2110-2317 소득세제과 ☎ 2110-2095
26	○특수관계자범위일부 조정	○공정거래법상대규모기업집단 소속법인의계열사	○공정거래법상기업집단소속법인과 그법인의임원	○법인세법 시행령 제87조 (2002.1.1)	법인세제과 ☎ 2110-2317
27	○도서상품권등에대한 접대비손금산입 특례폐지	○법인이도서상품권·문화상품권을 그발행법인으로부터직접구입하여 타인에게무상으로제공시접대비간주	〈폐 지〉	○법인세법시행령 제42조 (2002.1.1)	법인세제과 ☎ 2110-2317
28	○부동산양도신고제도 폐지	○부동산양도사실을세무서에신고 하였다는증빙이있어야양수인이 등기가능	〈폐 지〉 *2002. 7. 1부터폐지	○소득세법 제165조 (2002.7.1)	재산세제과 ☎ 2110-2321
29	○특별부가세제도폐지	○법인의부동산등양도차익에대하여 15 % 세율로과세	〈폐 지〉	○법인세법(2002.1.1)	재산세제과 ☎ 2110-2321
30	○양도소득세과표구간 및 세율조정	○2년이상보유 - 3천만원이하: 20% - 3 6천만원이하: 30% - 6천만원초과: 40% ○2년미만보유: 40%	○1년이상보유 - 1천만원이하: 9% - 1 4천만원이하: 18% - 4 8천만원초과: 27% - 8천만원초과: 36% ○1년미만보유: 36%	○소득세법 제104조 (2002.1.1)	재산세제과 ☎ 2110-2321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및시행일	관련부서
31	○중소기업IT화사업에 대한세제지원	〈신 설〉	○중소기업이중기청등으로부터지급 받는ERP 또는전자상거래시스템 설비비용을지급받는연도에 비용처리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의2 (공포일부터)	조세지출예산과 ☎2110-2311
32	○중소법인의전자상 거래에대한세액공제 신설	〈신 설〉	○중소기업이전자입찰방식으로재화 용역을구매하고전자결재망을 통하여구매대금을지급하는경우 구매대금의0.5%를소득세또는 법인세에서공제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3 (2002.1.1.)	조세지출예산과 ☎2110-2311
33	○창업중소기업세액 감면대상업종확대	○지원대상업종: 제조업 · 광업 · 물류산업등8개업종	○지원대상업종에전문디자인업, 과학및기술서비스업을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6조(2002.1.1)	조세지출예산과 ☎2110-2311
34	○중소기업특별세액 감면제도의적용대상 확대	○제조업, 건설업등16개업종	○종자및묘목생산업과축산업을 대상업종에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2002.1.1)	조세지출예산과 ☎2110-2311
35	○기업의어음제도 개선을위한세액공제 제도보완	○적용대상 기업구매전용카드, 기업구매자금대출	○기업구매전용카드중금융기관이 납품중소기업에게상환청구권을 행사할수있는것은제외 ○대출기한이납품일로부터1월이내 이고금융기관의상환청구권이없는 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을추가	○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의2 (2002.1.1.)	조세지출예산과 ☎2110-2311
36	○중소법인에대한감면 세액사후관리제도 개선	○감면세액상당액을2년내에장기 (1년6월이상) 차입금상환또는5년 내에사업용고정자산투자 ○중소법인의2000년이전감면분은 2001년에감면받은것으로보아2년내 장기차입금상환또는5년내고정자산 투자에사용	○1년6월이상장기차입금→모든 차입금 ○2000년이전감면분은차입금상환 기간을2년에서 5년으로연장	○조세특례제한법 제145조 (2002.1.1.)	조세지출예산과 ☎2110-2311
37	○임시투자세액공제 제도적용대상업종확대	○제조업등 22개업종	○제조업 · 과학및기술서비스업등 30개업종으로확대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23조 (2001.9.3.)	조세지출예산과 ☎2110-2311
38	○정보화투자에대한 세제지원강화	○생산성향상시설투자세액공제 - 공제율: 3%(중소기업5%) - 대상자산: 중소제조업의자동화 · 정보화설비, ERP설비및전자상 거래설비등 - 수도권투자공제배제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 대상자산:사업용자산, POS설비 - 수도권내투자에대해서는공제배제	- 공제율 중소기업의ERP설비는 10%로상향 - 대상자산:자동화정보화설비의경우 모든중소기업으로확대하고, 컴퓨터 를정보화설비에포함 - 수도권투자공제허용 - 정보보호시스템을세액공제대상 자산에추가 - 수도권내투자도세액공제허용	○조세특례제한법 제5조, 제24조, 제130조 (2001.9.3.)	조세지출예산과 ☎2110-2311
39	○연구및인력개발설비 투자에대한지원강화	○세액공제율: 투자금액의5% ○1990. 1. 1 이후수도권내창업기업에 대해서는적용배제	○공제율을10%로상향조정 ○수도권내투자에대해서도 공제허용	○조세특례제한법 제11조 (2001.9.3)	조세지출예산과 ☎2110-2311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및시행일	관련부서
40	○특별부가세관련감면제도	〈폐 지〉	○특별부가세폐지에맞추어기존특별부가세관련감면제도전면폐지	○조세특례제한법 (2002.1.1)	조세지출예산과 ☎2110-2311
41	○수도권법인본사·공장의지방이전에대한지원보완	○대상법인: 모든업종의법인	○부동산매매업·임대업과소비성서비스업을영위하는법인은제외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의2 (2002.1.1.)	조세지출예산과 ☎2110-2311
42	○지방이전중소기업에대한감면요건개선	○감면요건 창업후2년이경과된중소기업	○감면요건 2년이상계속공장시설을갖추고사업을영위한중소기업	○조세특례제한법 제63조 (2002.1.1.)	조세지출예산과 ☎2110-2311
43	○외국인투자감면확대	○감면기준금액 - 관광호텔업: 3천만불이상 - 종합휴양업: 5천만불이상	○기준금액축소 →2천만불이상 →3천만불이상 ○신설: 3천만불이상의물류업중화물터미널·공동집배송단지·항만시설운영사업등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6조의2 (2002.1.1)	국제조세과 ☎2110-2338
44	○외국인도수출등을수출의범위에추가	〈신 설〉	○외국인도수출·중계무역수출·위탁판매수출·위탁가공수출을부가가치세영세율을적용받을수있는수출의범위에추가	○부가세법시행령 제24조 (2002.1.1)	소비세제과 ☎XXXXX
45	○미군주둔지역주변사업자의영세율적용연장	○미군주둔지역주변사업자에대한영세율제도금년말까지적용	○미군주둔지역중관광특구(이태원, 송탄, 동두천)에서소매·양장등의재화공급사업자에한해2003. 12. 31까지영세율연장적용	○부가세법시행령 제26조 (2002.1.1)	소비세제과 ☎XXXXX
46	○상업방송이용수신료에대한부가가치세과세전환	○위성방송·종합유선방성·중계유선방송수신료에대해부가가치세면제	○부가가치세과세전환	○부가세법시행령 제32조(2002. 7. 1) (위성방송2002. 1.1)	소비세제과 ☎XXXXX
47	○의제매입세액공제율축소등	○면세농산물등을구입하여과세되는재화·용역을공급하는사업자의경우농산물취득가액의일정률을공제 - 공제율: 3/103 (음식업5/105) - 공제대상 ·면세농·축·수·임산물	- 공제율축소: 2/102(음식업3/103) - 공제대상확대 ·소금및단순가공식품(김치·두부) 포함	○부가세법시행령 제62조, 규칙제19조 (2002.1.1)	소비세제과 ☎XXXXX
48	○지자체위탁 묘지및화장업 '용역부가가치세면제	○사설묘지업등을의료보건용역의범위에포함하여부가가치세면제	○지방자치단체로부터위탁받은공설묘지·공설화장장및 공설납골시설의관리용역에대해서도면세	○부가세법시행령 제29조 (2002.1.1)	소비세제과 ☎XXXXX
49	○고물상등을간이과세적용대상업종에추가	○부가가치세사업자중에서일부업종은간이과세자의적용을배제하고일반사업자로만사업자등록의무부여 - 도매업 - 과세유흥장소·부동산매매업·광업 - 변호사·회계사·세무사등	○도매업중에서도고물상등폐자원중간수집상은간이과세자등록허용	○부가세법시행령 제74조 (2002.1.1)	소비세제과 ☎XXXXX

정 책 흐 름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및시행일	관련부서
50	○비거주자등에게공급하는용역의영세율적용대상축소	○국내에서국내사업장이없는 비거주자·외국법인에게용역을 공급하고외국환은행에서원화를 받는것은영세율적용하되 - 음식·숙박·부동산임대용역에대해 영세율적용을배제	○다음의열거된업종은영세율적용 - 통신업(소포송달업제외) - 운수업중보세구역내의창고업 - 오락·문화및운동관련서비스업중 뉴스제공업과영화산업(영화관운영업및비디오물감상실운영업제외) - 사업서비스업, 무형재산권임대용역 - 상품종합중개업(오퍼상) - 외국법인등과계약에의하여공급하는재화로서외국법인등이지정하는국내사업자에게인도하는 재화중과세사업에사용하는재화	○부가세법시행령 제26조 (2002.1.1)	소비세제과 ☎XXXXX
51	○간이과세자전환건물등에대한감가상각의제기간연장등	○부가세매입세액공제를받은건물·구축물을5년내에면세목적으로전용하는경우공제받은부가세를추징	○부가세매입세액추징기간을 10년으로연장	○부가세법시행령 제49조,제63조,제63조의3, 제74조의4 (2002.1.1)	소비세제과 ☎XXXXX
52	○「손해사정·보험계리및보험계약심사용역」부가가치세면제	○보험업법에의한보험업(보험중개·대리를포함)은부가가치세면제	○보험회사에제공하는손해사정·보험계리및보험계약심사용역에 대해서도부가가치세면제	○부가세법시행령 제33조 (2002.1.1)	소비세제과 ☎XXXXX
53	○「방문학습지도, 회원권모집」등을부가가치세가면제되는 인적용역의범위에 추가	○개인이독립된자격으로공급하는 인적용역은부가세면제 - 저술·만화·음악등의용역 - 외판원이판매실적에따라수당을받고 제공하는용역등	○방문학습지도, 각종회원모집, 대리운전 등개인이독립적으로일의성과에 따라수당또는이와유사한 성질의 대가를받는용역추가	○부가세법시행령 제35조 (2002.1.1)	소비세제과 ☎XXXXX
54	○유흥업소에대해 ‘ 프린터내장형신용카드 ’설치명령근거신설	○사업장관할세무서장은납세보전등을 위해납세의무자에게필요한사항을 명령할수있음	○신용카드가맹사업자의카드조회기 설치·사용에대한명령사항 부여근거신설 - 유흥업소의신용카드허위매출 전표의작성을방지하기위해‘ 수동조회기 를‘ 프린터내장형조회기로 교체토록유도	○부가세법시행령 제86조 (2002.1.1)	소비세제과 ☎XXXXX
55	○임대용부동산의 전대시임차금을 과세표준에서공제	○부동산임대보증금의부가세과세표준 (간주임대료) 계산	○부동산을임차하여다시임대하는 경우임차금을과표에서차감 - 임대보증금×정기예금이자율× 과세대상일수/365	○부가세법시행령 제49조의2 (2002.1.1)	소비세제과 ☎XXXXX
56	○간이과세자가일반과세자로전환시재고매입세액전액공제	○간이과세자가일반과세자로전환시 보유중인재고물품에대한부가세 매입세액을공제 - 단, 재고매입세액이납부할세액을 초과하는경우는환급하지아니함.	- 납부할세액을초과하는경우도 환급허용	○부가세법시행령 제6조3의3 (2002.1.1)	소비세제과 ☎XXXXX
57	○소규모맥주제조자면허제도신설	〈신 설〉	○소규모로맥주를제조하여영업장 내에서직접음용하는고객에게만 판매할수있는소규모맥주제조 면허제도신설 - 규모: 연생산량60 300kℓ수준	○주세법시행령별표3 (2002.2.1)	소비세제과 ☎XXXXX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및시행일	관련부서
58	○과실주의주질보호 규정신설	〈신 설〉	○과실주의주원료인과실당분중량이 총당분중량의20% 이상이되도록 의무화	○주세법시행령 제3조(2002.1.1)	소비세제과 ☎XXXXX
59	○주류제조시첨가물료 확대	○약주, 소주등의제조시첨가물료를 제한	○탁주·약주·청주·소주의제조시 필요한첨가물료에다(茶)류· 수크랄로스·아세설팜칼륨· 에리쓰리톨·자일리톨등을추가	○주세법시행령 별표1 (2002.1.1)	소비세제과 ☎XXXXX
60	○주류제조업과주류 수입업의겸업허용	○동일법인이주류제조업과주류수입 업을겸할수없음	○동일법인이주류제조업과주류수입 업을겸할수있도록주류수입업 전업규정완화	○주세법시행령 별표5 (2002.1.1)	소비세제과 ☎XXXXX
61	○재활용폐자원매입 세액공제율축소	○폐기물재생처리업자등이개인· 면세업자등세금계산서를교부받을수 없는자로부터폐지·고철등을 수집하는경우 - 폐자원수집가액의10/110을납부세액 에서공제	○매입세액공제율축소	○조세특례제한법시행령 제110조 (2002.1.1)	소비세제과 ☎XXXXX
62	○농·어업용기자재에 대한부가가치세사후 환급제도신설	○농·어업용기자재에대해영세율적용	○범용성이있는품목에대해사후 환급제도신설 - 대상품목: 농업용폴리에틸렌필름, 농업용파이프등농업용기자재5종 및양어장용폴리에틸렌필름, 목재 어상지등어업용기자재8종 - 환급절차: 농·어민이농·수협등을 통해환급	○조세특례제한법 제105조의2 (2002.1.1)	소비세제과 ☎XXXXX
63	○농·어업용면세유에 대한사후관리강화	〈신 설〉	○농·어업용면세유를사용실적에 비례하여공급하기위하여자동 계측기부착, 사용실적제출의무화등 사후관리강화 ○면세유류를부당하게사용하는농· 어민에대해서는2년간면세유를 공급중단할수있는규정신설	○조세특례제한법 제106조의2 (2002.7.1) (2002.1.1)	소비세제과 ☎XXXXX
64	○생활용품, 레저용품등에 대한특소세율인하 - 투전기, 골프용품, 모트 보트, 수상스키용품, 공기조절기, 영사기 - 프로젝션TV - PDP TV - 녹용, 로얄제리, 향수류 - 보석, 귀금속 - 고급사진기·시계· 모피·융단·가구	30% 15% 1.5% 10% 30% 30%	20% 10% 1% 7% 20% 20%	○특별소비세법 제1조(2001.12.15)	소비세제과 ☎XXXXX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및시행일	관련부서
65	○승용자동차특소세율 인하 - 2천cc 초과 - 1,500 2천c - 1,500cc 이하	 14% 10.5% 7%	* 2002. 6. 30.까지한시적으로적용 10% 7.5% 5%	○특별소비세법제1조 (2001.12.15 2002.6.30)	소비세제과 ☎XXXXX
66	○특소세가면세되는 대여사업용승용차의 범위	○대여사업용승용차	○6개월이하의대여사업용차량으로 한정	○특별소비세법 제18조 (2002.1.1)	소비세제과 ☎XXXXX
67	○가정용부탄의특소세 환급	〈신 설〉	○현재가정용부탄에대해서는kg당 114원의세율이적용되고있으나 가정용프로판가스와동일하게kg당 40원의세율이부과되도록인상된 특소세액을가정용부탄판매사업자 에게환급	○특별소비세법 제20조의2 (2002.1.1)	소비세제과 ☎XXXXX
68	○부동산·선박등의 소유권이전계약서, 소비대차문서등에 대한인지세율조정	○1만원 35만원의8단계누진과세	○누진세율체계를2만원 35만원의 5단계로축소 ○과세최저한금액을5백만원에서 1천만원으로상향조정	○인지세법 제3조(2002.1.1)	소비세제과 ☎XXXXX
69	○인지세과세제외 - 영업양도증서 - 개인간에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계약서 - 용선계약서 - 임치에관한증서·통장 - 정관, 조합계약서, 합병계약서 - 부동산임대차계약서 - 주택소유권이전계약서 - 금융기관금전소비 대차계약서	○다음세율로과세 - 8단계누진과세 - 8단계누진과세 - 8단계누진과세 - 100원 - 3만원 - 1만원 - 8단계누진과세 - 8단계누진과세	 과세대상에서제외 (1억원이하과세제외) (2천만원이하과세제외)	○인지세법 제3조, 제6조(2002.1.1)	소비세제과 ☎XXXXX
70	○인지세과세대상에 추가 - 전화가입신청서 - 기업어음	○과세대상에불포함	○다음세율로과세 - 1,000원 - 400원	○인지세법 제3조(2002.1.1)	소비세제과 ☎XXXXX
71	○인지세액상향조정 - 골프장회원권 - 신용카드회원가입 신청서 - 상품권	○다음세율로과세 - 5천원 - 300원 - 200원	○다음과같이상향조정 - 1만원 - 1,000원 - 400원	○인지세법 제3조(2002.1.1)	소비세제과 ☎XXXXX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및시행일	관련부서
72	○인지세후납제도도입	○과세문서에인지를붙이거나예금통장 등의경우문서작성전현금으로선납	○계속적·반복적으로작성하는 과세문서의경우인지세를다음달 10일까지후납가능	○인지세법 제8조(2002.1.1)	소비세제과 ☎XXXXX
73	○인지세환급	〈신 설〉	○착오등으로과오납한경우 인지세환급	○인지세법 제8조의3 (2002.1.1)	소비세제과 ☎XXXXX
74	○할당관세적용대상 품목및세율변경	○적용대상품목: 70개 ○적용기간: 6개월	○적용대상품목: 66개 - 적용제외: 연광등8개 - 세율변경: 대두등6개 - 신규적용: 산화지르코늄등4개 ○적용기간: 1년단위	○관세법 제71조 (2002.1.1)	산업관세과 ☎ XXXXX
75	○조정관세적용대상 품목및세율변경	○적용대상품목: 26개	○적용대상품목: 23개 - 적용제외: 면타올등4개 - 세율인하: 냉동홍어등9개 - 신규적용: 활민어	○관세법 제69조 (2002.1.1)	산업관세과 ☎XXXXX
76	○여행자휴대품등에 적용되는간이세율 개정	○골프용품, 수렵용총포류등70% ○보석, 귀금속제품, 고급시계등 65% ○향수40% 등	○골프용품, 수렵용총포류등55% ○보석, 귀금속제품, 고급시계등50% ○향수35% 등	○관세법 제81조 (2001.12.15)	산업관세과 ☎XXXXX
77	○특별긴급관세개정	○적용대상품목: 45개	○적용대상품목:4 5개 - 기준발동물량및세율변경 ○적용기간: 1년단위	○관세법 제68조 (2002.1.1)	산업관세과 ☎XXXXX
78	○관세통계통합품목 분류표(HSK) 변경	○HS코드번호수 - 4단위: 1,241 - 6단위: 5,113 - 10단위: 11,176	○HS코드번호수 - 4단위: 1,244 - 6단위: 5,225 - 10단위: 11,237	○관세법 제84조 (2002.1.1)	산업관세과 ☎XXXXX
79	○세계무역기구양허 관세규정등개정	○WTO 일반양허적용품목수: 10,257개	○품목수 10,281개(24개증가)	○WTO협정등에의한 양허관세규정(2002.1.1)	관세협력과 ☎XXXXX
80	○최빈개발도상국특혜 관세대상국가	○아프리카지역: 총33개국	○총34개국(세네갈추가)	○최빈개발도상국에대한 특혜관세공여규정 (2002.1.1)	관세협력과 ☎XXXXX
81	○방콕협정양허세율 적용국가	○5개국 - 한국,인도,스리랑카,방글라데시,라오스	○6개국 - 중국은2002. 1. 1부터적용약속	○WTO협정등에의한양허 관세규정(2002.1.1)	관세협력과 ☎XXXXX
82	○관세자유지역운용	〈신 설〉	○부산항및광양항을관세자유 지역으로운용	○관세자유지역법 제4조(2002.1.1)	관세제도과 ☎2110-2331
83	○감면물품의용도외 사용 금지기간단축	○내용연수가5년이상인물품: 3년	○학술연구용품은2년	○관세법시행령 제110조 (2002.1.1)	관세제도과 ☎2110-2331
84	○관세체납시통관 금지제도개선	○체납자의경우통관금지	○소액체납, 단기체납의경우 통관금지대상에서제외	○관세법시행규칙제8조 (2002.3월관세법시행 규칙개정시반영)	관세제도과 ☎2110-2331
85	○공장자동화물품에 대한관세감면	○515개품목	○503개품목 - 신규지정: 83개	○관세법 제95조 (2002.1.1)	관세제도과 ☎2110-2331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및시행일	관련부서
86	○조세특례제한법상 대체에너지생산·이용기자재에대한 관세감면확대	○태양열이용기기제조용기자재	○대체에너지생산용기자재및 이용기자재	○조세특례제한법 제118조 (2002.1.1)	관세제도과 ☎2110-2331
87	○은행소유구조개선	○동일인의은행주식보유한도4%	○10%로확대다만, 산업자본(비금융주력자)은4%초과분에대해 의결권제한	○은행법개정안 * 국회계류중	은행제도과 ☎XXXXX
88	○스톡옵션부여대상 확대	○당해법인의임직원에게만부여	○해외영업에기여한관계회사의 임직원에게도부여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 국회계류중	증권제도과 ☎XXXXX
89	○증권거래 준비금폐지	○증권회사는증권거래준비금을 의무적으로적립	○증권거래준비금적립제도폐지	○증권거래법제40조(삭제) * 국회계류중	증권제도과 ☎XXXXX
90	○코스닥신용거래허용	-	○현재증권거래소상장주식거래에 한하여인정되는신용거래를협회 등록주식에까지확대	○증권거래법시행령 제35조의15 * 입법예고중	증권제도과 ☎XXXXX
91	○우리사주 신탁(ESOP)제도도입	○우리사주조합제도	○현행우리사주조합제도를발전시킨 우리사주신탁제도를도입하여 근로자의자사주취득기회를확대 함으로써근로자의재산형성및 성과향상에기여	○증권거래법시행령(입법예고중) 및근로자복지 기본법시행령 * 국무회의통과	증권제도과 ☎XXXXX
92	○유동화회사의지급 보증한도확대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의 지급보증한도- 자기자본의20배	-자기자본의30배	○주택저당채권유동화회사법 제13조 * 국회계류중	증권제도과 ☎XXXXX
93	○결제대행업체 (PG:Payment Gateway)의신용카드 가맹점가입근거신설	-	○카드결제를위한보안장치를갖출 능력이없고카드가맹점요건을 갖추기어려운영세인터넷쇼핑몰의 카드거래등전자상거래를활성화하기 위하여인터넷쇼핑몰을대신하여카드 결제를대행하는PG업체가신용카드 가맹점이될수있도록법적근거를 마련. ○다만, PG업체가카드거래를대행하는 영세쇼핑몰에서발생하는카드부정 사용을방지하기위하여신용카드 거래의대행내역및영세쇼핑몰의 신용정보를카드업자에게제공하게 하도록함.	○여신전문금융업법 (2002년상반기)	보험제도과 ☎XXXXX
94	○유통업자(백화점등)의 신용카드업진입요건 완화	○백화점등유통업자가카드업을겸영 하고자하는경우허가를받아야함	○등록제로전환	○여신전문금융업법 (2002년상반기)	보험제도과 ☎XXXXX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및시행일	관련부서
95	○온라인상의카드부정사용및카드위·변조에대한처벌강화	○온라인상에서매출전표작성없이 신용카드부정사용에대한처벌불가	○전자상거래등온라인에서발생하는 카드부정사용을방지하기위하여 온라인에서매출전표작성없이신용 카드를부정사용한경우도처벌 가능하도록함. ○위·변조카드의제작, 사용및유통을 방지하기위하여행사할목적으로 위·변조카드를취득한자및카드를 위·변조하기위한장비를취득하는 등카드위·변조를예비음모하는 자도처벌할수있도록함.	○여신전문금융업법 (2002년상반기)	보험제도과 ☎XXXXX
96	○자금세탁방지제도 시행	〈신 설〉	○금융정보분석원설치 ○혐의거래보고제도시행 - 혐의거래중금융거래액이외국환거래의 경우미화1만불이상, 그외5천만원 이상인경우의무보고 - 그미만의경우임의보고 ○금융기관별내부보고시스템구축의무 - 내부보고책임자선정 - 자금세탁방지업무지침작성및운용 - 임직원교육및연수 ○금융정보분석원소속공무원, 수사기관 종사자등의직무상알게된특정금융 거래정보의비밀누설및목적외 이용을금지 ○범죄수익등의취득·처분사실을가장 하거나범죄수익등을은닉한자를처벌 ○범죄수익등을추징·몰수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 이용등에관한법률 (2001.11.28)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 등에관한법률 (2001.11.28.) ○특정금융거래정보의보고및 이용등에관한법률시행령 (2001.11.28) ○특정금융거래정보보고및감독 규정(2001.12.13)	금융정보분석원 기획행정실 ☎3679-6103 4
97	○수출입은행의자금 차입대상기관확대	○은행법제2조제2호의규정에의한 금융기관에서차입할수있도록함.	○국내금융기관으로확대하여차입 할수있도록함.	○수출입은행법제19조 (2002.1월중) * 국회심의중	개발협력과 ☎XXXXX
98	○수출입관련여신지원 결정의제한조건완화	○수출입은행은대출, 보증등업무를 추진함에있어상환·지급또는이행이 확실하게인정되는경우에한하여함.	○수출입은행은대출, 보증등업무를 추진함에있어상환, 지급또는 이행에대하여확실하고충분한 심사를하는것으로규정완화	○수출입은행법제25조 (2002.1월중) * 국회심의중	개발협력과 ☎XXXXX
99	○외국환업무의 본업무화	○외국환업무를부대업무로취급	○대출업무와외국환업무의연계를 통한수출금융지원수단의다양화	○수출입은행법 제8조제1항제10호 * 국회심의중	개발협력과 ☎XXXXX
100	○제조물책임제도도입	○제품의결함에의한손해발생시 제조자는민법상의손해배상책임에 의한보상	○민법상의손해배상책임요건을 완화하여제품의결함에의한손해 발생시제조자는고의·과실여부에 관계없이책임	○제조물책임법 (2002.7.1)	소비자정책과 ☎XXXXX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및시행일	관련부서
101	○소비자피해보상규정 개정			○소비자피해보상규정 (2001.12.4)	소비자정책과 ☎XXXXX
	가. 인터넷쇼핑몰업	〈신 설〉	- 상품·용역미인도, 지연인도 :계약해제, 손해배상 - 계약내용과다르거나하자있는물품, 용역이인도된경우 :제품교환또는구입가환급		
	나. 인터넷콘텐츠업	〈신 설〉	- 소비자의귀책사유로인한중도해지 :해지일이후의잔여금액에서 총계약금액의10%공제후환급 - 4시간이상서비스중지로인한피해 :서비스중지시간의3배를무료로 연장		
	다. 네트워크형전자화폐	〈신 설〉	- 유효기간이내인경우기준금액이 1만원초과(이하)시에는기준금액의 60/100(80/100) 이상을사용한 경우잔액을환급 - 유효기간경과시미사용잔액의 10%공제후재충전또는환급		
	라. 창호공사업	〈신 설〉	- 하자보수책임기간내시공상의 하자에대한무상수리 - 설치예정일(입주예정일)이2개월 이상남은경우에소비자가해제 하고자할경우: 계약금을위약금으로 하되총공사비의 10%한도로배상	○소비자피해보상규정 (2001.12.4)	소비자정책과 ☎XXXXX
	마. 애완견판매업	○애완견구입후7일이내에질병·폐사에대하여보상	○애완견구입후 14일이내의경우에 보상받을수있도록보상기간확대		
	바. 이사화물취급업	○사업자의고의·과실로인해운송계약을해제할경우, 약정된운송일 전일에통보시계약금반환및 약정운임의20% 배상	○약정된운송일전일에통보시 계약금반환및약정운임의 40% 배상토록강화		

<국세청>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및시행일	관련부서
1	○인터넷을이용한종합국세서비스 (Home Tax Service)	○납세자가직접세무서나은행을방문또는우편을통해세금신고및납부	○가정이나사무실에서세금신고·납부, 증명신청·발급, 상담등모든민원업무를인터넷을통하여할수있도록함. - 2002. 4. ·부가가치세, 특별소비세, 원천세신고 - 2002.11. ·전자고지·납부및모든증명발급	○2002.4월부터단계적실시	국세청 ☎XXXXX
2	○기준경비율제도	○표준소득률제도 ※장부를기장하지않는사업자는실제지출경비에관계없이수입금액에표준소득률을곱하여소득금액계산	○장부를기장하지않는사업자도원재료매입비, 인건비, 임차료등의주요경비에대하여는증빙서류를갖추어야비용으로인정받아세금부담이줄어듦. ○주요경비이외의기타경비는정부가정한기준경비율에의하여일정부분경비로인정하여줌. ※소득금액= 수입금액-주요경비-(수입금액×기준경비율)	○2002.1.1 이후발생하는소득분부터적용	국세청 ☎XXXXX

<기획예산처>

번호	제 목	종 전	달라지는내용	관련법규및시행일	관련부서
1	○부담금관리기본법 시행	-	· 농지전용부담금, 개발부담금 (비수도권지역) 등9개부담금폐지 (국제교류기여금, 문예진흥기금 모금은2004년부터폐지) ○부담금신설시기획예산처장관과 사전협의및매년부담금운용 종합보고서를국회에제출	○부담금관리기본법시행 (2002. 1. 1)	재정1팀 ☎3480-7741
2	○전자조달실시	○공공기관의조달에참가하기위하여 각기관에업체등록필요 ○공공기관의입찰관련정보를관보, 신문, 인터넷등을통해기관별로 입수하여입찰에참가	○인터넷조달단일창구에한번업체 등록함으로써모든공공기관의 조달에참여가능 ○입찰관련정보를인터넷조달단일 창구를통해일괄적으로입수하여 입찰에참가	○2002. 9월서비스실시	행정2팀 ☎3480-7751
3	○기금에대한재정규율 강화	○국무회의심의를거친후대통령 승인을얻어기금운용계획확정 ○주요항목지출금액의50% 내에서는 기금관리주체가자율적으로 운용계획변경 ○기금61개 - 공공기금43개 - 기타기금18개	○국무회의심의 · 대통령승인을 거친후국회의심의 · 의결을얻어 기금운용계획확정 ○자율적변경범위축소: 50→30% ○기금51개 - 공공 · 기타기금구분폐지	○기금관리기본법 (2002. 3. 1)	관리총괄과 ☎3496-51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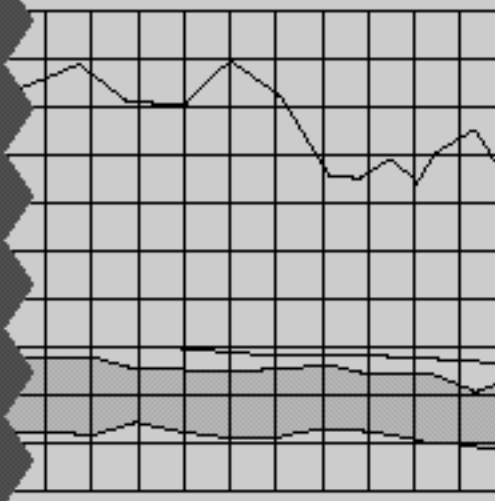


재정통계

- 기타소비세 및 목적세 편

- 지방세 편(I)
  1. 지방세 세목별 부과 및 징수
  2. 지방세 시도별 분포

- 지방세 편(II)



1. 지방세 세목별 부과 및 징수

(단위: 천원)

	합계		취득세		재산세	
	부과액	징수액	부과액	징수액	부과액	징수액
1966	16,816,176	16,152,012	2,732,717	2,550,839	1,078,491	1,043,636
1967	14,654,778	14,099,212	3,889,500	3,705,598	1,198,420	1,166,812
1968	20,239,885	19,356,762	5,522,237	5,183,913	2,420,880	2,356,171
1969	28,013,180	26,583,966	7,822,230	7,210,908	3,117,076	2,986,298
1970	35,219,246	33,232,340	12,044,977	11,056,747	4,172,610	3,980,115
1971	41,990,608	39,811,485	13,718,108	12,723,719	5,217,059	4,951,170
1972	49,572,589	46,607,778	12,953,686	11,782,615	8,318,934	7,879,503
1973	79,267,758	74,134,228	21,285,919	19,866,903	10,071,202	9,624,928
1974	114,775,555	107,986,372	32,583,665	30,451,349	16,748,718	15,856,961
1975	169,041,969	158,789,733	44,688,358	41,820,047	30,485,936	28,436,022
1976	233,731,211	220,566,252	61,989,265	58,399,121	39,537,387	37,798,207
1977	349,447,660	336,574,614	79,075,701	75,462,833	46,666,700	45,316,023
1978	460,341,378	443,251,369	120,336,211	114,554,884	48,501,328	47,073,244
1979	653,641,059	599,198,728	140,207,708	135,036,868	83,729,116	81,592,822
1980	851,837,946	767,690,562	179,491,339	162,951,659	123,119,917	119,412,203
1981	1,002,016,056	914,372,123	189,019,047	179,768,902	157,685,620	152,678,723
1982	1,224,124,124	1,119,205,919	224,591,792	215,508,078	177,611,412	172,786,893
1983	1,537,032,866	1,397,166,537	321,600,461	307,767,471	201,304,649	194,753,432
1984	1,682,698,526	1,508,354,179	352,605,605	337,526,079	216,711,906	210,419,077
1985	1,862,282,122	1,654,635,329	371,903,418	356,321,794	243,616,879	237,289,644
*1986	2,027,983,886	1,809,753,251	392,563,939	371,184,705	273,926,413	265,793,348
1987	2,437,864,605	2,192,322,692	471,615,410	452,652,110	293,669,683	285,304,054
1988	3,375,778,024	3,099,969,048	682,609,529	661,494,476	308,347,725	301,046,192
1989	5,278,469,144	4,960,844,053	814,230,252	787,215,449	380,021,546	372,425,966
1990	6,745,350,344	6,367,365,752	1,203,145,983	1,164,926,685	230,972,295	227,165,292
1991	8,534,351,559	8,035,143,125	1,598,721,293	1,525,728,689	280,314,276	275,510,680
1992	10,111,336,581	9,462,217,560	1,835,920,941	1,732,592,469	362,323,308	355,290,512
1993	11,830,546,086	11,026,067,251	2,155,084,597	2,042,961,731	416,350,672	406,612,821
1994	14,297,258,392	13,230,911,237	2,489,661,606	2,344,644,232	494,055,073	480,674,871
1995	16,786,970,432	15,315,965,229	2,887,708,640	2,691,021,647	482,405,711	465,921,989
1996	19,169,656,514	17,394,685,245	3,235,987,061	3,041,240,598	549,718,334	532,305,747
1997	20,652,436,355	18,405,680,827	3,589,916,521	3,319,483,688	597,950,401	577,067,935
1998	20,290,289,985	17,149,712,026	2,769,184,363	2,479,829,135	684,637,670	640,660,548
1999	22,191,231,754	18,586,100,844	3,249,652,617	3,065,410,709	710,964,779	669,908,313

주: *1986년징수액의경우세목별합계를구하면 1,809,741,312천원이지만 『지방세정연감』의세목별합계항목과시도별합계항목에는위와같이기록됨.
자료: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연도.

1. 지방세 세목별 부과 및 징수(계속)

(단위: 천원)

	면허세		등록세		자동차세	
	부과액	징수액	부과액	징수액	부과액	징수액
1966	595,876	555,101	-	-	1,101,362	1,080,551
1967	717,744	668,364	-	-	1,577,670	1,555,018
1968	908,297	848,048	-	-	2,541,015	2,487,508
1969	1,122,307	1,045,057	-	-	3,977,054	3,869,259
1970	1,334,538	1,228,057	-	-	5,836,702	5,604,762
1971	1,558,200	1,428,551	-	-	6,683,622	6,392,586
1972	1,519,464	1,351,270	-	-	7,191,846	6,879,604
1973	2,790,976	2,520,622	-	-	8,246,012	7,866,027
1974	4,655,385	4,150,403	-	-	12,926,678	12,015,901
1975	5,449,382	4,865,507	-	-	13,111,075	12,353,485
1976	6,276,905	5,555,199	-	-	14,868,551	14,136,608
1977	10,974,807	10,033,123	66,789,310	66,732,739	19,681,586	18,794,823
1978	18,117,570	15,172,215	91,945,064	91,764,320	26,847,009	25,505,007
1979	18,281,254	17,322,041	92,992,553	92,449,918	51,695,657	48,438,716
1980	19,599,671	18,244,129	125,614,781	122,373,011	61,705,068	56,941,875
1981	21,669,636	19,919,513	157,880,888	156,447,962	64,126,941	61,012,593
1982	26,680,745	24,240,654	246,878,299	245,578,782	71,927,392	67,980,513
1983	31,575,564	28,741,193	341,116,027	338,803,793	88,846,791	83,804,530
1984	33,567,803	30,560,630	335,039,118	331,986,683	110,390,853	103,668,706
1985	23,877,385	21,799,677	363,151,893	361,117,598	126,393,299	118,304,698
*1986	25,653,456	23,333,668	397,717,043	395,854,995	150,150,125	139,123,478
1987	28,916,556	26,508,700	552,433,749	550,266,864	182,940,922	167,719,282
1988	34,251,405	31,177,172	797,479,548	794,472,598	236,512,750	218,055,046
1989	41,851,374	37,922,577	1,094,459,747	1,091,125,768	329,207,548	304,680,677
1990	52,953,090	47,999,242	1,381,475,130	1,377,632,152	463,224,723	425,934,259
1991	98,304,927	88,735,645	1,903,169,050	1,894,968,347	688,540,985	634,953,186
1992	120,112,670	108,586,207	2,093,224,140	2,080,451,521	884,564,081	826,234,509
1993	147,574,789	133,997,124	2,560,393,043	2,548,326,715	1,092,673,409	1,027,124,984
1994	182,549,997	168,606,328	3,110,446,356	3,085,663,908	1,385,488,301	1,293,785,738
1995	228,229,290	208,551,158	3,655,019,178	3,632,509,840	1,690,295,073	1,545,231,914
1996	293,322,307	272,303,577	4,077,001,506	4,053,708,647	1,988,110,192	1,818,439,902
1997	239,759,402	224,944,320	4,296,314,259	4,257,327,918	2,280,515,542	2,054,012,317
1998	258,973,874	240,689,915	3,413,783,969	3,388,475,193	2,459,105,586	2,174,871,379
1999	256,835,772	237,393,200	4,346,535,040	4,326,677,196	2,183,304,425	1,936,391,986

1. 지방세 세목별 부과 및 징수(계속)

(단위: 천원)

	주민세		농지세		도축세	
	부과액	징수액	부과액	징수액	부과액	징수액
1966	-	-	5,007,426	4,962,986	190,920	190,691
1967	-	-	3,383,781	3,350,208	178,462	178,431
1968	-	-	3,492,754	3,449,848	166,061	166,039
1969	-	-	4,837,367	4,780,465	199,060	199,048
1970	-	-	3,172,920	3,122,580	235,885	235,842
1971	-	-	4,569,744	4,522,039	214,897	214,876
1972	-	-	5,398,010	5,336,310	227,271	227,266
1973	10,776,318	9,337,415	8,155,912	8,086,684	225,361	225,198
1974	9,422,116	8,560,064	13,979,682	13,866,309	305,284	305,282
1975	16,787,830	15,637,559	21,024,859	20,840,899	548,050	546,142
1976	26,826,803	24,548,063	31,785,422	31,636,878	1,093,811	1,093,432
1977	51,910,161	46,921,283	36,095,946	35,945,398	1,375,444	1,375,434
1978	64,180,031	59,766,391	44,529,331	44,317,512	1,453,752	1,453,704
1979	96,462,833	91,001,792	53,911,509	53,644,024	3,847,158	3,844,384
1980	125,864,685	116,913,289	63,140,610	62,573,402	4,684,425	4,680,463
1981	137,285,716	127,627,599	78,548,324	78,039,313	6,328,806	6,199,929
1982	154,666,425	139,478,116	83,360,409	83,027,893	7,817,660	7,813,953
1983	179,116,564	157,678,687	91,014,469	90,591,843	10,629,013	10,628,925
1984	196,508,095	176,793,111	93,133,265	92,547,119	12,712,686	12,712,567
1985	224,282,672	202,003,379	14,385,164	14,215,088	16,405,524	15,538,107
*1986	251,803,205	227,787,435	14,991,276	14,757,477	18,600,542	18,590,189
1987	303,429,327	276,037,236	16,857,545	16,661,233	19,359,972	19,303,668
1988	406,476,239	375,836,476	18,971,649	18,713,540	17,825,053	17,821,988
1989	509,277,358	469,872,355	7,481,528	7,268,021	17,388,530	17,348,290
1990	590,334,958	548,744,749	6,175,025	5,988,519	17,778,571	17,778,181
1991	749,959,090	701,502,146	6,002,641	5,832,252	21,812,673	21,764,203
1992	1,036,094,890	971,007,511	3,222,644	2,986,892	22,537,472	22,528,846
1993	1,182,593,767	1,099,895,970	2,317,098	2,248,633	26,266,420	26,266,384
1994	1,461,179,800	1,360,008,363	2,455,929	2,303,323	30,004,349	29,878,406
1995	1,844,465,161	1,701,441,650	2,151,905	2,066,209	33,956,112	33,911,426
1996	2,317,745,677	2,147,928,792	3,946,006	2,639,753	38,643,397	37,885,553
1997	2,487,193,014	2,259,330,181	2,856,137	2,797,314	48,177,851	47,203,683
1998	3,016,829,659	2,639,177,345	2,945,446	2,679,326	48,968,894	48,193,947
1999	2,887,059,528	2,548,180,824	4,538,788	4,343,434	45,685,735	45,591,654

1. 지방세 세목별 부과 및 징수(계속)

(단위: 천원)

	사업소세		유흥음식세		도시계획세	
	부과액	징수액	부과액	징수액	부과액	징수액
1966	-	-	1,371,406	1,269,631	69,545	64,974
1967	-	-	1,878,197	1,769,905	219,868	213,952
1968	-	-	3,417,294	3,200,154	1,162,739	1,132,376
1969	-	-	4,734,439	4,400,921	1,553,138	1,467,476
1970	-	-	5,299,146	5,028,927	2,329,454	2,206,295
1971	-	-	6,061,868	5,803,749	2,941,236	2,781,217
1972	-	-	6,871,248	6,452,741	5,841,072	5,490,877
1973	-	-	9,232,268	8,534,560	6,835,017	6,476,075
1974	-	-	13,103,348	12,170,623	8,716,489	8,321,759
1975	-	-	19,470,645	17,511,559	14,010,555	13,404,078
1976	-	-	28,477,198	25,302,131	18,185,517	17,522,398
1977	9,708,347	9,635,535	2,432,233	2,308,629	18,958,413	18,370,067
1978	16,799,908	16,705,619	11,862	10	20,649,353	20,064,960
1979	25,970,413	25,745,754	-	-	35,088,553	34,220,600
1980	31,150,952	30,748,817	-	-	52,464,470	50,965,292
1981	36,496,182	36,084,180	-	-	68,277,314	66,609,343
1982	43,726,371	43,283,872	-	-	82,615,820	80,628,450
1983	50,120,226	49,533,545	-	-	94,699,993	92,187,819
1984	56,122,303	55,534,342	-	-	102,863,086	100,443,491
1985	61,941,135	61,365,437	-	-	117,112,828	114,462,582
*1986	68,717,153	68,047,472	-	-	126,631,503	123,863,460
1987	83,119,468	82,390,430	-	-	138,208,661	134,423,511
1988	103,015,597	102,343,807	-	-	152,408,654	149,081,710
1989	127,402,906	126,593,925	-	-	185,065,846	181,382,102
1990	146,681,568	145,589,816	-	-	250,003,716	243,623,924
1991	175,067,818	170,785,967	-	-	314,412,635	307,319,308
1992	213,117,147	211,647,609	-	-	403,265,211	394,490,513
1993	228,433,371	226,705,055	-	-	484,286,708	473,296,721
1994	255,398,143	253,059,211	-	-	582,727,399	563,953,182
1995	299,264,819	296,095,526	-	-	676,870,095	652,729,391
1996	357,622,418	354,308,579	-	-	717,931,035	697,151,775
1997	381,673,771	377,306,643	-	-	756,653,950	731,470,960
1998	342,661,938	336,704,244	-	-	798,266,412	752,324,686
1999	351,076,925	346,725,252	-	-	828,196,992	785,013,238

1. 지방세 세목별 부과 및 징수(계속)

(단위: 천원)

	소방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		(경주)마권세	
	부과액	징수액	부과액	징수액	부과액	징수액
1966	143,525	138,722	-	-	17,321	13,780
1967	162,256	157,839	-	-	23,833	16,742
1968	321,108	313,200	-	-	116,636	97,262
1969	418,625	405,176	-	-	183,443	183,443
1970	542,674	519,212	-	-	248,141	248,141
1971	703,047	670,751	-	-	322,827	322,827
1972	888,369	844,903	-	-	362,689	362,689
1973	1,195,275	1,142,318	-	-	453,498	453,498
1974	1,587,912	1,541,443	-	-	746,278	746,278
1975	2,931,562	2,840,718	-	-	533,717	533,717
1976	4,023,283	3,907,146	-	-	667,069	667,069
1977	4,879,433	4,779,148	-	-	899,579	899,579
1978	5,457,370	5,360,914	-	-	1,512,589	1,512,589
1979	8,701,955	8,569,906	-	-	1,902,321	1,902,321
1980	13,294,196	13,032,316	-	-	2,703,095	2,703,095
1981	17,183,313	16,790,356	-	-	2,856,731	2,856,731
1982	23,507,342	23,022,500	-	-	4,052,113	4,052,113
1983	27,166,993	26,624,815	-	-	7,735,307	4,513,574
1984	35,353,215	34,533,677	-	-	12,331,373	5,427,741
1985	40,188,277	39,275,886	-	-	15,957,136	7,068,361
*1986	45,653,154	44,551,256	-	-	9,411,644	9,411,644
1987	51,946,554	50,304,451	-	-	11,821,806	11,821,806
1988	60,616,372	59,119,693	-	-	14,755,251	14,755,251
1989	75,000,012	73,242,197	-	-	19,532,904	19,532,904
1990	87,488,408	86,118,046	-	-	56,472,229	56,472,229
1991	107,136,337	105,457,826	-	-	80,106,314	80,106,314
1992	134,452,575	131,757,389	41,134,858	41,134,773	96,645,744	96,645,744
1993	157,694,465	154,345,268	49,935,240	49,858,541	98,422,988	98,422,988
1994	188,532,631	182,901,292	54,751,047	54,468,772	176,804,507	176,804,507
1995	212,222,193	204,272,332	61,196,842	61,095,409	216,960,422	216,960,422
1996	247,604,652	239,666,292	68,105,103	67,897,311	294,651,318	294,651,318
1997	277,764,493	267,703,826	70,931,859	70,771,041	360,647,554	360,647,554
1998	325,188,857	301,355,667	70,535,366	70,329,281	329,368,544	329,368,544
1999	338,213,939	316,112,084	76,292,071	76,040,606	393,596,681	393,596,681

1. 지방세 세목별 부과 및 징수(계속)

(단위: 천원)

	토지과다보유세		종합토지세		담배소비(판매)세	
	부과액	징수액	부과액	징수액	부과액	징수액
1966	-	-	-	-	-	-
1967	-	-	-	-	-	-
1968	-	-	-	-	-	-
1969	-	-	-	-	-	-
1970	-	-	-	-	-	-
1971	-	-	-	-	-	-
1972	-	-	-	-	-	-
1973	-	-	-	-	-	-
1974	-	-	-	-	-	-
1975	-	-	-	-	-	-
1976	-	-	-	-	-	-
1977	-	-	-	-	-	-
1978	-	-	-	-	-	-
1979	-	-	-	-	-	-
1980	-	-	-	-	-	-
1981	-	-	-	-	-	-
1982	-	-	-	-	-	-
1983	-	-	-	-	-	-
1984	-	-	-	-	-	-
1985	-	-	-	-	85,348,127	86,208,377
*1986	-	-	-	-	89,292,413	89,292,413
1987	-	-	-	-	93,861,182	93,861,182
1988	16,654,314	14,733,837	-	-	309,600,206	309,600,206
1989	27,327,058	24,433,884	-	-	1,412,994,438	1,412,994,438
1990	1,612,040	1,140,141	415,514,193	399,871,471	1,571,811,741	1,571,811,741
1991	-	-	533,290,316	518,178,872	1,646,865,340	1,646,865,340
1992	-	-	696,354,151	675,123,429	1,727,289,035	1,727,289,035
1993	-	-	870,991,580	842,396,380	1,745,427,007	1,745,426,655
1994	-	-	1,072,280,392	1,026,186,714	2,044,974,386	2,044,974,386
1995	-	-	1,318,894,324	1,254,267,442	2,151,851,491	2,151,851,437
1996	-	-	1,302,548,900	1,252,549,529	2,254,841,272	2,254,841,096
1997	-	-	1,346,450,242	1,279,424,774	2,236,489,334	2,236,489,334
1998	-	-	1,299,867,963	1,199,291,470	2,267,576,344	2,267,576,344
1999	-	-	1,330,224,685	1,242,088,227	2,088,244,397	2,088,244,397

1. 지방세 세목별 부과 및 징수(계속)

(단위: 천원)

	국세부가세및기타		과년도수입	
	부과액	징수액	부과액	징수액
1966	4,507,587	4,281,101	-	-
1967	1,425,047	1,316,343	-	-
1968	170,864	122,243	-	-
1969	48,441	35,915	-	-
1970	2,199	1,662	-	-
1971	-	-	-	-
1972	-	-	-	-
1973	-	-	-	-
1974	-	-	-	-
1975	-	-	-	-
1976	-	-	-	-
1977	-	-	-	-
1978	-	-	-	-
1979	-	-	40,850,029	5,429,582
1980	-	-	49,004,737	6,151,011
1981	-	-	64,657,538	10,336,979
1982	-	-	76,688,344	11,804,102
1983	-	-	92,106,809	11,536,910
1984	-	-	125,359,218	16,200,956
1985	-	-	157,718,385	19,664,701
*1986	-	-	162,872,020	18,149,772
1987	-	-	189,683,770	25,068,165
1988	-	-	216,253,732	31,717,056
1989	-	-	237,228,097	34,805,500
1990	-	-	269,706,674	46,569,305
1991	-	-	330,647,864	57,434,350
1992	-	-	441,077,714	84,450,601
1993	-	-	612,100,932	148,181,281
1994	-	-	765,948,476	162,998,004
1995	-	-	1,025,479,176	198,037,437
1996	-	-	1,421,870,966	327,166,876
1997	-	-	1,679,142,025	339,699,339
1998	-	-	2,202,395,100	278,185,002
1999			3,100,886,673	504,383,043

2. 지방세 시도별 분포

(단위: 천원, %)

	합계		서울		부산		대구	
	세액	비중	세액	비중	세액	비중	세액	비중
1966	16,152,012	100.0	5,535,394	34.3	1,302,215	8.1	-	-
1967	14,099,212	100.0	5,674,517	40.2	1,199,488	8.5	-	-
1968	19,356,762	100.0	8,784,242	45.4	1,732,604	9.0	-	-
1969	26,583,966	100.0	12,345,331	46.4	2,216,972	8.3	-	-
1970	33,232,340	100.0	17,101,220	51.5	3,201,917	9.6	-	-
1971	39,811,485	100.0	19,481,296	48.9	4,126,475	10.4	-	-
1972	46,607,778	100.0	21,064,136	45.2	5,043,192	10.8	-	-
1973	74,134,228	100.0	32,245,269	43.5	8,112,354	10.9	-	-
1974	107,986,372	100.0	46,001,775	42.6	12,345,613	11.4	-	-
1975	158,789,733	100.0	70,282,066	44.3	15,993,895	10.1	-	-
1976	220,566,252	100.0	97,149,687	44.0	22,106,271	10.0	-	-
1977	336,574,614	100.0	151,528,834	45.0	35,371,329	10.5	-	-
1978	443,251,369	100.0	203,982,180	46.0	45,355,183	10.2	-	-
1979	599,198,728	100.0	251,113,642	41.9	66,770,259	11.1	-	-
1980	767,690,562	100.0	300,431,128	39.1	85,502,968	11.1	-	-
1981	914,372,123	100.0	354,294,657	38.7	96,014,555	10.5	47,090,207	5.2
1982	1,119,205,919	100.0	458,390,834	41.0	113,204,297	10.1	57,790,451	5.2
1983	1,397,166,537	100.0	592,412,094	42.4	129,517,274	9.3	69,102,223	4.9
1984	1,508,354,179	100.0	607,364,418	40.3	144,218,371	9.6	74,988,966	5.0
1985	1,654,635,329	100.0	656,687,709	39.7	153,830,907	9.3	79,415,035	4.8
1986	1,809,753,251	100.0	706,010,083	39.0	168,962,878	9.3	92,140,974	5.1
1987	2,192,322,692	100.0	840,449,138	38.3	215,730,747	9.8	122,026,055	5.6
1988	3,099,969,048	100.0	1,156,135,624	37.3	251,462,054	8.1	146,747,681	4.7
1989	4,960,844,053	100.0	1,757,739,884	35.4	447,405,567	9.0	262,836,223	5.3
1990	6,367,365,752	100.0	2,091,676,362	32.8	547,629,997	8.6	327,267,768	5.1
1991	8,035,143,125	100.0	2,540,753,272	31.6	688,096,296	8.6	408,667,066	5.1
1992	9,462,217,560	100.0	2,907,141,165	30.7	819,874,959	8.7	484,872,966	5.1
1993	11,026,067,251	100.0	3,259,784,113	29.6	953,137,845	8.6	578,199,100	5.2
1994	13,230,911,237	100.0	3,849,973,057	29.1	1,071,900,970	8.1	723,620,653	5.5
1995	15,315,965,229	100.0	4,339,477,169	28.3	1,214,758,820	7.9	814,937,093	5.3
1996	17,394,685,245	100.0	4,890,598,519	28.1	1,423,582,388	8.2	925,754,795	5.3
1997	18,405,680,827	100.0	5,332,573,589	29.0	1,407,263,744	7.6	895,669,995	4.9
1998	17,149,712,026	100.0	4,944,433,756	28.8	1,311,076,776	7.6	825,575,938	4.8
1999	18,586,100,844	100.0	5,566,123,740	29.9	1,383,308,643	7.5	869,060,153	4.7

자료: 내무부, 『지방세정연감』, 각연도.

2. 지방세 시도별 분포(계속)

(단위: 천원, %)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액	비중	세액	비중	세액	비중	세액	비중
1966	-	-	-	-	-	-	-	-
1967	-	-	-	-	-	-	-	-
1968	-	-	-	-	-	-	-	-
1969	-	-	-	-	-	-	-	-
1970	-	-	-	-	-	-	-	-
1971	-	-	-	-	-	-	-	-
1972	-	-	-	-	-	-	-	-
1973	-	-	-	-	-	-	-	-
1974	-	-	-	-	-	-	-	-
1975	-	-	-	-	-	-	-	-
1976	-	-	-	-	-	-	-	-
1977	-	-	-	-	-	-	-	-
1978	-	-	-	-	-	-	-	-
1979	-	-	-	-	-	-	-	-
1980	-	-	-	-	-	-	-	-
1981	37,618,247	4.1	-	-	-	-	-	-
1982	43,870,093	3.9	-	-	-	-	-	-
1983	56,518,921	4.0	-	-	-	-	-	-
1984	67,908,326	4.5	-	-	-	-	-	-
1985	76,409,907	4.6	-	-	-	-	-	-
1986	80,329,653	4.4	5,977,222	0.3	-	-	-	-
1987	96,157,245	4.4	36,531,552	1.7	-	-	-	-
1988	122,247,082	3.9	59,659,760	1.9	-	-	-	-
1989	230,637,366	4.6	108,907,121	2.2	123,910,270	2.5	-	-
1990	315,093,538	4.9	146,883,699	2.3	166,351,937	2.6	-	-
1991	408,685,852	5.1	191,700,182	2.4	231,245,883	2.9	-	-
1992	475,757,535	5.0	237,356,999	2.5	273,533,821	2.9	-	-
1993	547,764,202	5.0	259,406,635	2.4	351,499,056	3.2	-	-
1994	617,049,010	4.7	322,050,276	2.4	410,747,869	3.1	-	-
1995	766,353,627	5.0	368,391,828	2.4	443,898,847	2.9	-	-
1996	852,741,777	4.9	413,811,941	2.4	469,598,283	2.7	-	-
1997	953,300,130	5.2	476,169,175	2.6	488,283,774	2.7	437,244,477	2.4
1998	867,295,237	5.1	445,580,256	2.6	443,742,671	2.6	398,221,632	2.3
1999	888,639,604	4.8	435,397,281	2.3	507,336,778	2.7	435,565,396	2.4

2. 지방세 시도별 분포(계속)

(단위: 천원, %)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세액	비중	세액	비중	세액	비중	세액	비중
1966	1,506,886	9.3	502,849	3.1	584,372	3.6	1,193,797	7.4
1967	1,271,869	9.0	405,311	2.9	457,194	3.2	993,853	7.0
1968	1,663,646	8.6	453,627	2.3	561,532	2.9	1,176,933	6.1
1969	2,269,801	8.5	600,565	2.3	672,378	2.5	1,555,575	5.9
1970	2,595,584	7.8	649,476	2.0	647,817	1.9	1,564,062	4.7
1971	3,152,316	7.9	806,757	2.0	851,662	2.1	1,968,780	4.9
1972	4,129,908	8.9	1,051,273	2.3	1,052,808	2.3	2,346,260	5.0
1973	6,612,778	8.9	1,699,661	2.3	1,733,927	2.3	3,670,668	5.0
1974	10,001,923	9.3	2,334,854	2.2	2,458,909	2.3	5,329,235	4.9
1975	15,253,584	9.6	3,456,880	2.2	3,877,135	2.4	8,403,945	5.3
1976	22,050,363	10.0	4,728,828	2.1	5,506,760	2.5	11,821,229	5.4
1977	34,071,061	10.1	6,359,217	1.9	7,991,691	2.4	17,255,531	5.1
1978	50,762,601	11.5	7,853,004	1.8	9,002,530	2.0	19,952,969	4.5
1979	73,180,258	12.2	11,949,736	2.0	13,090,366	2.2	29,049,965	4.8
1980	107,699,735	14.0	15,923,239	2.1	16,314,011	2.1	39,417,137	5.1
1981	89,800,135	9.8	20,762,662	2.3	20,131,639	2.2	45,448,635	5.0
1982	109,920,618	9.8	25,002,297	2.2	23,280,249	2.1	55,394,558	4.9
1983	150,058,246	10.7	28,851,709	2.1	25,698,054	1.8	65,215,140	4.7
1984	171,498,408	11.4	32,453,457	2.2	30,728,440	2.0	74,302,621	4.9
1985	204,947,158	12.4	37,806,373	2.3	35,454,484	2.1	79,333,580	4.8
1986	235,014,068	13.0	40,410,440	2.2	37,780,418	2.1	87,021,103	4.8
1987	287,853,398	13.1	48,413,872	2.2	42,455,604	1.9	98,676,777	4.5
1988	442,598,097	14.3	76,067,224	2.5	67,244,976	2.2	159,704,583	5.2
1989	681,906,414	13.7	131,377,744	2.6	114,994,224	2.3	132,354,679	2.7
1990	997,723,225	15.7	181,518,660	2.9	150,550,481	2.4	169,576,786	2.7
1991	1,283,472,805	16.0	215,157,396	2.7	197,811,551	2.5	232,738,524	2.9
1992	1,572,187,612	16.6	257,017,880	2.7	231,561,434	2.4	267,178,220	2.8
1993	2,060,795,584	18.7	276,472,242	2.5	275,170,634	2.5	312,417,418	2.8
1994	2,607,956,546	19.7	341,100,142	2.6	316,782,388	2.4	378,104,972	2.9
1995	3,152,939,505	20.6	401,600,314	2.6	392,653,065	2.6	466,647,037	3.0
1996	3,561,397,092	20.5	455,980,309	2.6	452,701,382	2.6	553,099,136	3.2
1997	3,801,650,197	20.7	500,237,010	2.7	451,421,832	2.5	586,679,772	3.2
1998	3,520,307,421	20.5	469,465,113	2.7	415,485,317	2.4	550,902,144	3.2
1999	3,927,529,647	21.1	470,653,421	2.6	452,872,771	2.4	576,733,737	3.1

2. 지방세 시도별 분포(계속)

(단위: 천원, %)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세액	비중	세액	비중	세액	비중	세액	비중	세액	비중
1966	982,901	6.1	1,311,401	8.1	1,979,043	12.3	1,183,190	7.3	69,964	0.4
1967	772,033	5.5	781,535	5.5	1,617,565	11.5	858,640	6.1	67,207	0.5
1968	865,314	4.5	936,191	4.8	2,011,572	10.4	1,058,404	5.5	112,697	0.6
1969	1,207,058	4.5	1,517,296	5.7	2,594,964	9.8	1,431,818	5.4	172,208	0.6
1970	1,269,369	3.8	1,742,556	5.2	2,776,919	8.4	1,425,896	4.3	257,524	0.8
1971	1,630,825	4.1	2,074,239	5.2	3,509,096	8.8	1,887,549	4.7	322,490	0.8
1972	2,001,665	4.3	2,585,707	5.5	4,394,673	9.4	2,487,191	5.3	450,965	1.0
1973	3,201,533	4.3	3,975,353	5.4	8,126,359	11.0	4,038,010	5.4	718,316	1.0
1974	4,753,647	4.4	5,697,594	5.3	11,080,215	10.3	6,978,813	6.5	1,003,794	0.9
1975	7,282,207	4.6	8,560,904	5.4	15,020,492	9.5	9,208,628	5.8	1,449,997	0.9
1976	10,011,614	4.5	12,937,804	5.9	19,574,561	8.9	12,725,016	5.8	1,954,119	0.9
1977	13,884,334	4.1	18,658,855	5.5	28,460,315	8.5	20,272,946	6.0	2,720,501	0.8
1978	16,200,409	3.7	21,226,875	4.8	38,233,037	8.6	26,787,838	6.0	3,894,743	0.9
1979	22,604,339	3.8	32,233,078	5.4	54,747,346	9.1	38,527,125	6.4	5,932,614	1.0
1980	31,566,560	4.1	43,416,101	5.7	68,777,341	9.0	50,930,365	6.6	7,711,977	1.0
1981	36,622,476	4.0	48,285,795	5.3	45,417,550	5.0	63,715,534	7.0	9,170,031	1.0
1982	42,271,991	3.8	56,722,689	5.1	50,608,115	4.5	74,660,034	6.7	8,089,693	0.7
1983	47,492,960	3.4	67,599,509	4.8	60,748,881	4.3	91,409,425	6.5	12,542,101	0.9
1984	50,547,467	3.4	74,133,599	4.9	67,274,682	4.5	100,334,526	6.7	12,600,898	0.8
1985	47,336,864	2.9	77,878,906	4.7	76,618,509	4.6	114,655,556	6.9	14,260,341	0.9
1986	48,517,870	2.7	81,491,719	4.5	83,971,268	4.6	127,086,612	7.0	15,038,943	0.8
1987	56,250,967	2.6	64,443,924	2.9	101,644,181	4.6	164,121,208	7.5	17,568,024	0.8
1988	89,934,145	2.9	99,890,518	3.2	155,096,487	5.0	246,269,966	7.9	26,910,851	0.9
1989	139,609,773	2.8	148,683,437	3.0	242,142,352	4.9	392,530,869	7.9	45,808,130	0.9
1990	185,710,087	2.9	197,511,398	3.1	316,979,455	5.0	505,621,983	7.9	67,270,376	1.1
1991	238,518,217	3.0	240,163,292	3.0	407,807,019	5.1	660,687,284	8.2	89,638,487	1.1
1992	275,801,718	2.9	286,568,335	3.0	475,796,537	5.0	787,918,538	8.3	109,649,841	1.2
1993	317,942,702	2.9	306,830,656	2.8	538,627,516	4.9	867,134,709	7.9	120,884,839	1.1
1994	378,019,851	2.9	346,028,343	2.6	656,206,439	5.0	1,069,002,422	8.1	142,368,299	1.1
1995	454,512,647	3.0	411,099,106	2.7	723,593,526	4.7	1,195,510,017	7.8	169,592,628	1.1
1996	480,274,704	2.8	502,835,978	2.9	845,789,304	4.9	1,387,077,232	8.0	179,442,184	1.0
1997	517,615,385	2.8	506,553,841	2.8	864,496,478	4.7	990,847,365	5.4	195,674,063	1.1
1998	509,453,430	3.0	479,466,218	2.8	804,325,746	4.7	963,431,766	5.6	200,948,605	1.2
1999	509,733,797	2.8	521,585,172	2.8	859,059,769	4.6	971,729,986	5.2	211,124,939	1.1

본란에서는조세정책에 대한여론을 파악하고 정책제언을 수렴하기 위하여주요 일간지의사설 및 칼럼등에 실린 조세·재정관련 내용을발췌, 소개하고 있으며『재정포럼』독자께서보내주시는 의견도게재하고 있습니다. 선정된내용은 한국조세연구원의견해와는 무관합니다.

- 편집자주-

법인세인하 '失보다 得 많다

국회 재경위는 법인세율을 2% 포인트 인하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인세법 개정안을 19일 통과시켰다.

현 단계에서 법인세율을 인하하는 것은 잘하는 것인가 잘못하는 것인가.

찬성하는 쪽은 법인세율 인하는 기업의 투자 의욕을 고취시켜 경기의 활성화와 고용의 증대 등을 가져올 것이므로 인하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주장한다.

반대하는 쪽은 지금 정부가 재정적자에 허덕이고 있는데 법인세율까지 인하하면 재정수입이 줄어들어 적자폭이 커질 수 있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여기에다 법인세는 기업, 그 중에서도 대기업이 주로 부담하는 세금인데 그것을 경감해주면 결국 힘없는 근로자들이 세금을 더내야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어느 쪽 주장이 맞는 것인가.

먼저 법인세율 인하가 부자들의 세금을 경감하고 가난한 사람들의 세금을 무겁게 하는 불공평한 처사인가라는 점을 생각해본다.

법인세는 대기업이 많이 내는 것으로돼 있지만 실제로 세금을 내는 것은 기업이 아니고 기업과 관련된 자연인들이라는 점을 염두에 둘 필요가 있다.

주주가 주로 부담한다고 말할 수 있지만 법인세는 근로자들과 다른 자본공급자들 그리고 소비자들에게도 전가될 수 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법인세와 소득세의 이중부담을 줄이기 위한 이른바 그로스 업 제도(배당소득 세액공제제도)가 도입되어 있기 때문에 법인세율을 올리고 내리는 것이 주주들의 배당에 대한 세부담에 전혀 영향을 주지 않는다.

법인세율의 인하로 가장 혜택을 본다고 할 수 있는 부분은 법인이익 중 배당되지 않고 사내에 유보되어 재투자되는 부분이다.

이 부분에 대한 세부담 경감은 기업활동의 활성화와 함께 경제성장과 고용확대를 통해 근로자나 일반국민들의 후생증진에 기여하는 효과를 갖는다.

세수손실 문제도 그렇게 심각하다고 보지 않는다. 우선 세율이 인하되면 배당소득세액공제도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에 소득세에서 세금이 더 걷히게 된다. 이것은 단순히 회계상의 문제일 뿐이다.

물론 모든 법인소득에 전부 배당되는 것은 아니므로 세수감소가 생긴다. 그러나 차제에 임시투자세액공제제도 같은 감면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세수손실을 극소화할 수 있다.

그리고 중기적으로 보면 세율 인하에 의한 경기활성화는 전반적인 세수증대를 가져올 것이다.

나아가서 세금이 좀 덜 걷히면

그 동안 방만하게 운영돼 오던 재정지출도 상당히 알차게 되지 않을까 하는 기대도 한다.

문제는 이 정도의 세율인하로 경기활성화의 효과가 있을 것인가에 있다. 기업은 불확실성이 줄어들고 수익성이 개선되면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생리를 가지고 있다.

금리인하는 부채비율이 높고 부실한 기업에 더 많은 혜택을 주지만 법인세율 인하는 자기자본비율이 높고 이익을 많이 내는 효율적인 기업을 지원해주기 때문에 경제전체의 생산성을 높이는 효과도 가지고 있다.

법인세율 인하를 통해 외국자본 유입의 증대도 기대할 수 있다. 법인세 부담의 경감은 수출경쟁력을 높여주는 효과도 갖는다. 법인세 부담은 이른바 국경조정이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이다.

경제학 교과서에서는 법인세를 자원배분을 왜곡시키는 비효율적인 세금의 대표로 지적한다.

선진국에서 법인세폐지론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 것은 결코 근거 없는 말장난이 아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최근 일단의 학자들이 법인세 폐지를 강력하게 주장한 바 있었다. 이들이 대기업이나 재벌을 위해서 이런 주장을 하겠는가.

글로벌화한 세계에서 우리 경제가 생존하려면 기업활동이 왕성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그것이 모두에게 득이 된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라고 본다.

곽태원 (서강대 교수 · 경제학과)

<『한국일보』2001월 12월 21일자한국시론>

전문성없는예산심의

예산 편성과 심의는 정부와 국회가 하는 일 중 가장 중요한 것이다. 그런데 우리 국회는 현 정부 출범 이후 한해도 거르지 않고 예산안 처리 법정시한을 넘겼으며, 거의 매년 추경예산을 편성했다.

이번 정기국회도 회기 내에 내년 예산을 처리하지 못하고 임시국회로 넘길 모양이다. 이처럼 예산심의가 법정시한을 넘기고 추경편성을 밥먹 듯 하는 국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이라니 부끄럽기 그지없는 일이다.

거의매년 2회 추경편성

법정시한을 넘기고 추경편성을 하면서도 예산 편성과 심의가 제대로 이뤄진다면 이 정도 부끄러움은 문제도 아닐 수 있다. 그러나 국회 예결특위에서 예산안을 심의하는 모습을 보면 예산안에 대한 질의내용이 양적 · 질적으로 부족해 예산 편성과 심의가 제대로 이뤄질 것이라는 기대감을 무너뜨린다. 이대로는 안된다.

나라살림이 이런 절차와 이런 사람들에게 맡겨져서는 안된다. 국민이 내는 세금을 모아 나라살림을 어떻게 잘 꾸려나갈까 고민하는 것 이외에 국회의원이 신경을 써야 할 게 그렇게 많다면 어떻게 국회에 나라살림을 맡길 수가 있겠는가?

그래도 마지막 기회라고 생각하고 몇 가지 해결책을 제시해 본다. 첫째, 국회의 예결산 부실심의를 방지하고 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미국은 각종 예산사업에 대한 평가를 전문으로 하는 국회예산처(CBO)와 회계감사 · 결산감사를 하는 우리의 감사원에 해당하는 GAO(General Accounting Office)를 국회 내에 설치하고 있다.

이들 기구의 도움으로 상하원 모두 일년 내내 예산과 결산에 대한 평가작업에 몰두할 수 있다. 우리도 미국의 CBO에 상응하는 예산 관련 연구개발기구를 국회에 신설해 부처별 예산의 타당성 조사와 성과평가를 연중 내내 실시해야 한다.

둘째, 투명하고 정확한 재정정보를 만들고 공개해야 한다. 국제통화기금(IMF)이 요구하는 재정투명

성 규약과 OECD의 지침대로 정부의 과거, 현재 및 향후 재정활동과 관련한 완전한 정보가 일반에 투명하게 제공돼야 한다.

국회에서 심의하는 재정규모인 일반회계와 재정융자특별회계 이외에도 특별회계와 기금을 포함하는 통합재정의 구체적 내용이 공개돼 보다 철저하게 국민의 심판을 받을 수 있도록 관리되고 평가돼야 한다.

예를 들어 정부는 내년 통합재정수지가 국내총생산(GDP)의 1.1% 수준의 흑자를 기록할 것이라는 전망만 공개할 것이 아니라, 13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기금의 대규모 흑자 부분을 제외하면 1.3% 적자가 될 것이라는 점도 공개해야 한다.

아울러 IMF 기준 국가채무 규모와 함께 보증채무의 총 규모 및 회수가능 규모를 파악하고 공개해야 한다. 4대 공적연금을 중심으로 하는 4대 사회보험의 재정수지 현황 및 기금운용 역시 수시로 발표함으로써 중장기적인 재정운용상 문제점을 사전에 국민에게 알려야 한다.

셋째, 재정건전화를 위해 중장기적 재정운영계획과 법적 장치가 마련돼야 한다. 공적자금 회수전망이 지극히 불투명해 재정위기 발생 가능성이 한층 커지고 있는 현 시점에서는 이와 같은 체계적인 재정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내년에 두차례 중요한 선거를 앞두고 예상되는 선심성 예산과 세금 깎아주기 경쟁을 사전에 막기 위해서도 대책은 필요하다. 보다 구체적으로 1999년 발표된 중기재정계획을 현 상황에 맞게 수정하고 이를 기초로 매년 예산편성과 심의가 이뤄져야 한다.

중장기 재정계획 마련을

중기재정계획을 3년 전에 발표한 후 한번도 수정한 적도, 그리고 이를 기초로 예산을 짜본 적도 없다는 것은 그만큼 우리 나라살림이 계획적 · 체계적으로 꾸려지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나아가 지난 봄 국회에 상정된 국가채무축소를 위한 특별법 · 예산회계법 · 기금관리기본법 등 재정3법의 제정 · 개정이 이번에는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

2002년은 우리가 일본처럼 장기침체의 나락으로 떨어질 것인가 아니면 새롭게 도약하는 기회를 잡을 것인가가 결정되는 중요한 한해가 될 것이다. 2002년 예산을 지금같이 짠다면 중남미 국가가 경험한 재정위기에 이은 외환위기의 악순환이 시작되는 한해가 될지도 모를 일이다.

안종범 (성균관대 교수 · 경제학)

〈『중앙일보』2001년 12월8일자시론〉